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3호 2021.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이성재 ■ 고조선·연 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요 원인 7
- 김도영 ■ 삼연·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43
- 정선화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변천 87
- 박한민 ■ 동남제도개혁사 김옥균의 울릉도 목재 반출과
채무 상환을 둘러싼 조일 교섭 131

서평

- 손성욱 ■ ‘우리’의 동아시아사 깊이 읽기
-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2020) 183
- 박정애 ■ ‘위안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일본 편, 히라이 미쓰코,
생각비행, 2020; 한국 편, 방지원, 생각비행, 2021) 20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Articles

Lee Seongjae ■ A Study on the Timing and Main Cause of the Outbreak of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7

Kim Doyoung ■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amyeon(三燕) and Goguryeo Belt Ornament 43

Jeong Sunhwa ■ A Transformation of the Description of King Gwanggaeto Stele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87

Park Hanmin ■ The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over the Repayment of Debt and the Export of the Ulleung Island Wood by Kim Ok-kyun, Development Commissioner for the Southeastern Islands 131

Book Review

Son Sungwook ■ A Closer Look History of East Asia from Korean Perspective: a Review for “Dongasiasa Immun(Introduction to History of East Asia)”(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20) 183

Park JungAe ■ What Can We Learn from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201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조선·연 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요 원인

이성재 |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전공 박사 수료

- I. 머리말
- II. 제·연 전쟁 이후 개전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II. 개전 시점과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 IV. 맺음말

I. 머리말

전쟁은 본질적으로 본래의 목적과 모순되는 결과를 산출하기 쉬운 변수가 많은 행위이므로¹ 개전 시점은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개전 시점의 전략적 결정은 전쟁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개전 시점 변화는 국내의 정세 변동에 따른 개전 원인의 변화를 반영한다. 요컨대 개전 원인은 개전 시점과 긴밀히 연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전 원인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전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조선·연 전쟁(이하 조연 전쟁)의 개전 시점에 대한 선행 연구의 시각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서기전 300년 이후의 연소왕 재위 기간 내, 둘째는 연혜왕 이후, 셋째는 서기전 4세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범주의 견해는 연혜왕이나 무성왕 시대로 보고 있으며² 연장성 축조 시기를 연혜왕 이후로 보는 연구 또한³ 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 투고: 2021년 7월 6일, 심사 완료: 2021년 8월 4일, 재심사 완료: 2021년 8월 17일, 게재 확정: 2021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성재, 2016, 「고조선과 연의 전쟁 연구-전쟁 개시 배경 및 원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대폭 수정·보완한 것임.

1 케네스 헤이건·이안 비거튼 저, 김성칠 역, 2013, 『의도하지 않은 결과: 미국과 전쟁 1775~2007』, SHBOOKS, 15~16쪽.

2 정인보, 1946, 『조선사연구 상권』, 서울신문사, 97쪽; 孫進己, 1994, 『東北亞民族史論研究』, 中州古籍出版社, 196쪽.

3 이와 같은 연구는 연장성 축조 시기를 연효왕(燕孝王) 말년(王國良 編, 1978, 『中國長城沿革考』, 臺灣商務印書館, 22~23쪽), 연효왕이나 연왕 희(喜) 시대(甌燕, 1987, 「我國早期的長成」, 『北方文物』, 1987-2, 北方文物雜誌社, 16쪽), 무성왕 7년(서기전 265년)~연왕 희 3년(서기전 252년)(李樹林·李妍, 2013, 「秦開東拓與修築燕北長城時間新考」, 『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 2013-1, 通化師範學院, 64쪽) 등으로 보고 있다.

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주요 근거로 시호를 제시하거나⁴ 진개가 연왕 희 시대에 활동한 진무양의 조부라는 기록에 주목하여 진무양의 연령으로부터 진개의 활동 시기를 추정하는⁵ 등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전래 문헌에 기록된 개전 시점의 하한(서기전 281년)과도⁶ 모순되어 문제가 있다.

연왕쾌 시대에 연이 이미 동호를 축출하였다는 주장은⁷ 셋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서기전 300년 이후의 연소왕 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기록을 무리하게 소급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위 연구는 『전국책』 「소진세제민왕왈(蘇秦說齊閔王曰)」장의 제·연 두 나라가 환지곡(桓之曲)에서 싸운 시점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왕쾌 시대로 단정하고 당시 호인(胡人)이 연의 누번에 있는 현을 탈취하였으므로 연왕쾌 이전에 연이 누번의 땅을 일부 소유할 만큼 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세제민왕왈」장에서 제·연이 충돌한 시점은 서기전 296년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⁸ 연왕쾌 시대라고 보기 어렵다.⁹ 이 밖에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의 요령 지역 진출 시기를 서기전

4 손진기는 무성(武威)이라는 시호(諡號)가 무공과 관계 있음을 들어 무성왕 시대에 연이 고조선에 침공했다고 주장하였다(孫進己, 1994, 앞의 책, 196쪽). 그러나 시호가 그 인물의 행위와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무성왕 시대의 기록에서 연의 세력 확장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

5 진무양의 연령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무양의 연령을 통해 조부 진개의 활동 시기를 추론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6 『사기』 「초세가」 초경양왕 18년(서기전 281년)조에는 ‘연의 요동’이 등장하므로 이는 서기전 281년 이전에 이미 연이 요동 지역에 세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세한 논의는 본문에서 후술할 것이다.

7 이광명, 2019,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30쪽.

8 繆文遠, 1987, 『戰國策新校註(上)』, 巴蜀書社, 426쪽.

9 이 밖에 앞의 연구는 서기전 4세기 연이 제군을 패배시킨 몇 군데 기록과 연역왕 재위 기간 이전 축조된 제·조 등의 방어를 위한 연남장성 등을 연이 연역왕 이전에 매우 강성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이광명, 2019, 앞의 글, 26, 28, 30~31쪽). 그러나 전쟁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약소국이 강대국을 몇 차례 무력 충돌에서 격파했다고 해서 국력의 강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연남장성의 축조도 연의 강성함의 근거보다는 연의 열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세기 이전으로 소급하려는 견해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 연구는 서기전 4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연계(燕系) 유적이나 유물의 존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해당 유적의 편년과 유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객좌 미안구 유적, 적봉 홍산구 유적, 심양 남시구 유적 등을 서기전 4세기까지 소급하고 이를 연의 정치적 지배의 흔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있다.¹⁰ 그러나 위 유적은 전국 후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¹¹ 서기전 4세기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또한 서기전 4세기 이전 요령 지역의 철기 문화 유입을 연의 영역 지배 확대와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¹² 그러나 요령 지역 철기 문화의 등장 시기는 서기전 3세기 이후로 볼 수 있고¹³ 반월형철도와 같은 독자적 철기의 존재는 연의 영역 지배보다는 재지 세력의 철기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¹⁴ 타당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연의 서기전 4세기 요령 진출을 주장하는 앞의 연구와는 달리 이 시기 요서 지역은 토착적인 성격을 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⁵ 따라서 연이 서기전 4세기 이전에 요령 지역을

-
- 10 홍승현, 2014,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5, 69쪽; 石川岳彦, 2017, 『春秋戰國時代 燕國の考古學』, 雄山閣, 181~182쪽.
- 11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199, 215쪽; 周海峰, 2011, 「燕文化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61~62쪽; 이종수, 2014,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의 특성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연 유이민 집단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 동북아역사재단, 78~79쪽.
- 12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戰國時期的燕國における初期鐵器と東方への擴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67,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2, 34쪽.
- 13 김상민, 2019, 「연 문화의 확산과 요서지역 철기문화의 정착과정」, 『호서고고학』 44, 호서고고학회, 135~137쪽.
- 14 김세봄, 2012, 「중국동북지역 반월형 철도의 출현과 그 기원에 관한 문제제기」,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인류학 고고학 논총』, 학연문화사, 338, 348쪽.
- 15 배현준, 2015, 「동주시기 연나라와 동대장자 유적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113쪽; 이후석,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13~16, 29~31쪽; 배현준, 2017,

영역 지배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설사 요령 지역에 서기전 4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연계 유적이거나 유물이 다소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연의 정치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전국 시대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생각할 때, 보다 안전한 주변 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일부 연계 이주민의 흔적이 요령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과 부합하는 것이다.¹⁶ 게다가 셋째 범주의 견해는 개진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록에 보이는 개진 시점의 상한(서기전 300년)과 모순되므로¹⁷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첫째 범주의 견해 중에는 비교적 상세한 근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시점을 제시한 연구가 보이는데 배진영,¹⁸ 박준형,¹⁹ 왕건신(王建新),²⁰ 오강원²¹ 등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개진 시점을 서기전 300년 이후의 연소왕 재위 기간 내로 보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연 전쟁 발발 시점(서기전 284년)을 기준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조연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
- 「춘추전국시기 연문화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146쪽; 趙鵬, 2016, 「遼寧建昌東大杖子陶禮器墓葬研究」, 『知識文庫』 23, 哈爾濱日報報業集團, 221, 223쪽.
- 16 鄒寶庫·盧治萍·馬卉, 2017, 「遼寧遼陽市徐往子戰國墓」, 『考古』 2017-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20쪽.
- 17 『사기』 「홍노열전」과 「조세가」에 따르면 연이 동호를 축출한 것은 조무령왕이 운중·안문·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재위 26년(서기전 300년) 이후의 일로 보이므로 조연 전쟁 발발 또한 서기전 300년보다 이를 수 없다. 상세한 논의는 본문에서 후술할 것이다.
- 18 배진영, 2003, 「연소왕의 정책과 ‘거연’의 성립」, 『중국사연구』 25, 중국사학회, 20쪽.
- 19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176쪽.
- 20 王建新, 1999,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 同成社, 214쪽.
- 21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요령 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 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7~8쪽.

나 연의 세력 확장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위와 같은 단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면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박대재,²² 박준형²³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개선 시점에 대한 언급은 적지 않지만, 대개 관련 근거가 부족하거나 단편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개선 원인에 대한 연구 역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남한 학계 일부에서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나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시점과 주요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연 전쟁 이후 개선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제·연 전쟁 이전 연의 대외적 군사 활동

개선 시점에 대하여 『사기』는 연의 전성기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며²⁴ 『위략』은 연역왕 말년의 고조선 침공 시도와 고조선의 교학(驕虐)으로 인한 고조선과 연의 정치·군사적 갈등 이후 연장 진개가 고조선을 침공하였다고²⁵ 기록하

22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79쪽.

23 박준형, 2014, 앞의 책, 172~173쪽.

24 『史記』 115, 朝鮮列傳 55. “朝鮮王滿者, 故燕人也,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25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裴松之注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고 있다. 『사기』·『위략』 등의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대체로 연의 세력이 가장 강대했던 연소왕 재위 기간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에는 조연 전쟁과 관련하여 개진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①-가: 조무령왕도 또한 풍속을 바꾸어 오랑캐 옷을 입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혀서, 북쪽으로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을 깨뜨렸다. 장성을 쌓아 대(代)로부터 음산(陰山)을 따라 내려와서 고궐(高闕)에 이르기까지 새(塞)로 만들었다. 그리고 운중(雲中)·안문(鴈門)·대군(代郡)을 두었다. ①-나: 그 뒤 연에 진개라는 현명한 장수가 있어 동호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동호가 그를 매우 믿게 되었다. 그는 연으로 돌아와서 동호를 습격하여 깨뜨렸다. 동호는 천여 리나 달아났다. 형가와 같이 진왕을 찢어 죽이려 했던 진무양은 진개의 손자이다. 연도 또한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에 이르는 장성을 쌓고, 상곡(上谷)·어양(漁陽)·우북평(右北平)·요서(遼西)·요동군(遼東郡)을 두어 오랑캐(胡)를 막았다.(『사기』)²⁶

②: 각지의 적을 소탕하고 북진하여 연(燕)·대(代)에 이르고 서진하여 운중(雲中)·구원(九原)에 이르렀다.(『사기』)²⁷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무령왕이 운중·안문·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은 재위 26년(서기전 300년) 무렵의 일로 보이므로(②),²⁸ 연의 동호 침공은 대체로 서기전 300년 무렵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호·연 전쟁 시점을

26 『史記』 110, 匈奴列傳 50, “而趙武靈王亦變俗胡服, 習騎射, 北破林胡樓煩, 築長城, 自代并陰山下, 至高闕爲塞, 而置雲中鴈門代郡, 其後燕有賢將秦開, 爲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 開之孫也,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27 『史記』 43, 趙世家 13, 趙武靈王 26년, “攘地北至燕代, 西至雲中九原.”

28 周清澍 主編, 1994, 『內蒙古歷史地理』, 內蒙古大學出版社, 22쪽; 楊寬, 2001, 『戰國史料編年輯證』, 上海人民出版社, 658쪽.

서기전 300년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²⁹ 그런데 조연 전쟁은 동호·연 전쟁 이후 발발하였으므로 조연 전쟁의 발발 시점 또한 서기전 300년 무렵으로 보기도 한다.³⁰ 그러나 ①-가를 ②와 같은 해가 아닌 다음 해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³¹ ①-나의 동호·연 전쟁 또한 ①-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①-가와 ①-나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연 전쟁과 동호·연 전쟁이 서기전 300년보다 이를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③: 북쪽으로는 연의 요동(遼東)을 바라보고, 남쪽으로는 월(越)의 회계산(會稽山)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는 일은 두 번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사기』)³²

주목할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경양왕 18년(서기전 281년)에 등장하는 ‘연의 요동’의 존재이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기전 281년 이전에 이미 연이 고조선을 침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³ 요컨대 개전 시점은 대개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전 281년 사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일부 남한 학계의 연구는 조연 전쟁이 연소왕 재위 기간 내에서도 제·연 전쟁 발발(서기전 284년) 이후에 개시되었다고 보는 경향

29 『大事記』 4, 周赧王 15년; 『周季編略』 8上, 周赧王 15년; 周清澍 主編, 1994, 위의 책, 20쪽; 劉國文, 2006, 『阜新通史』, 吉林大學出版社, 58쪽.

30 이재 등, 1988, 『한민족전쟁사총론』, 교학연구사, 48~49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9쪽.

31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上)」, 『社會科學輯刊』 1979-1, 遼寧省社會科學院, 148쪽.

32 『史記』 40, 楚世家 10, 頃襄王 18년. “北遊目於燕之遼東而南登望於越之會稽, 此再發之樂也.”

33 정세호, 1956, 「사기를 중심으로 고조선의 위치에 관하여」, 『역사과학』 1956-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8쪽; 김남중, 2002, 「연·진의 요동통치의 한계와 고조선의 요동 회복」, 『백산학보』 62, 백산학회, 47쪽; 박준형, 2014, 앞의 책, 176쪽.

이 있다.³⁴ 위 연구는 개전 시기를 서기전 282~280년,³⁵ 서기전 282년³⁶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조연 전쟁은 서기전 281년 이전에 일어났으므로 서기전 280년을 개전 시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라 하겠다. 후자는 개전 시점을 제·연 전쟁이 발발한 서기전 283년과 초경양왕 18년인 서기전 281년 사이로 본 것이다. 그러나 제·연 전쟁이 발발한 연소왕 28년은 서기전 284년이므로 서기전 283년은 오류이다. 따라서 실제 후자의 견해는 서기전 283~282년설이 될 것이다.

위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이 제에 의해 대패하여 영토를 점령당하고 망국의 상태에 처한(서기전 315~312년) 이후 제·연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제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극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노출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연은 제·연 전쟁 전까지는 고조선도 공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연 전쟁 전에 연이 공공연히 인접 세력과 전쟁을 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산을 멸망시키고 그 왕을 부시(膚施)로 옮겼다.(『사기』)³⁷

⑤: 제·연과 함께 중산을 멸망시켰다.(『사기』)³⁸

「조세가」는 조의 중산 멸망을 혜문왕 3년(서기전 296년)으로, 「육국연표」는

34 배진영, 2003, 앞의 글, 20쪽; 박대재, 2006, 앞의 책, 66쪽; 박준형, 2014, 앞의 책, 176쪽; 배현준, 2020, 「요서지역 전국 연문화의 전개와 그 배경-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9, 동북아역사재단, 103쪽; 조원진, 2020,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한국고대학회, 44~45쪽.

35 배진영, 2003, 위의 글, 20쪽; 박대재, 2006, 위의 책, 66쪽; 배현준, 2020, 위의 글, 103쪽; 조원진, 2020, 위의 글, 44~45쪽.

36 박준형, 2014, 앞의 책, 176쪽.

37 『史記』 43, 趙世家 13, 惠文王 3년. “滅中山, 遷其王於膚施.”

38 『史記』 15, 六國年表 3, 趙惠文王 4년. “與齊燕共滅中山.”

혜문왕 4년(서기전 295년)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조세가」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것으로 보아 중산 멸망은 혜문왕 3년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조의 원정이 3년에 시작되어 4년에 종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연이 조의 중산 원정에 참여한 것은 이를 기회로 중산이 연왕패 시대에 연을 침공하여 영토를 탈취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³⁹

⑥: 하물며 천하가 모두 싸움에 열중하여 제나라와 연나라가 싸울 때 조나라는 그 기회에 중산국(中山國)을 병탄하였고, 진(秦)·초(楚) 두 나라가 끊임없이 한(韓)·위(魏)와 싸우고 있을 때 송(宋)·월(越) 두 나라는 덩달아 용병에 전념하였으니, 이렇게 열 개의 나라는 서로 적대시하는 것으로 의욕을 삼으면서, 특히 그 중 홀로 제나라에게 관심을 두었으니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전국책』)⁴⁰

또한 『전국책』은 ⑥과 같이 조가 중산을 멸망시킬 무렵에 연과 제가 전쟁을 벌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서기전 296~295년 무렵에 연이 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⑦: 신(臣)은 명을 받아 제와의 외교에 종사한 지 5년인데 (그동안) 제의 군사가 여러 번 출병한 적은 있었으나 일찍이 연을 공격하려고 도모한 적은 없습니다. 제·조와의 외교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며 이합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은 제와 공모하여 조를 공격하려 하지 않으면 조와 공모하여 제를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제는 연을 신뢰하여 북지(北地)를 비우고 군사를 운용하였습니다.

39 陣平, 1995,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大學出版社, 97쪽; 楊寬, 2001, 『戰國史料編年輯證』, 上海人民出版社, 700쪽.

40 유향 편, 임동석 역주, 2009, 『전국책 2/4』, 동서문화사, 572쪽; 『戰國策』 12, 齊 5, 蘇秦說齊閔王曰. “且天下通用兵矣, 齊燕戰, 而趙氏兼中山, 秦楚戰韓魏不休, 而宋越專用其兵, 此十國者, 皆以相敵爲意, 而獨舉心於齊者, 何也.” 본문 의 밑줄은 필자 삽입.

그러나 임금께서 전벌(田伐), 조거질(緜去疾)의 말을 믿고 제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제로 하여금 크게 경계하게 하여 연을 믿지 않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신 소진(蘇秦)은 사임하기를 원하였으나 임금께서는 노하였으므로 감히 강행하지 못했습니다. 조는 연을 의심하여 제를 공격하지 못하고, 임금께서는 양안군(襄安君)을 동쪽으로 (인질로) 가게 하여 일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임금께 억지로 (사임을)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와 조가 아(阿)에서 회합하니 임금께서는 이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그 회합에 참여하여 (제와 조는) 진을 공격하고 (제는) 제(帝)의 칭호를 버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전국중횡가서』⁴¹

위 ㉗은 서한 문제 시대의 무덤 출토 『전국중횡가서(戰國縱橫家書)』의 일부이다.⁴² 이는 연의 반간(反間) 소진(蘇秦)이 제로부터 연소왕(燕昭王)에게 보낸 편지로 보이는데, 이 기록에는 연소왕이 일부의 말을 듣고 제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제가 연을 경계하고 믿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⁴³ ㉗에는 제가 진과 함께 동·서제를 칭하였다가 제가 제호를 취소하고 왕호로 복귀한 사건이 보

41 『戰國縱橫家書』 4, 蘇秦自齊獻書燕王章. “臣受教任齊交五年, 齊兵數出, 未嘗謀燕. 齊勺(趙)之交, 壹美壹惡, 壹合壹離. 燕非與齊謀勺(趙), 則與趙謀齊. 齊之信燕也, 虛北地□[行]其甲. 王信田代〈伐〉緜去[疾]之言功(攻)齊, 使齊大戒而不信燕. 臣秦拜辭事, 王怒而不敢強. 勺(趙)疑燕而不功(攻)齊, 王使襄安君東, 以便事也, 臣豈敢強王戈(哉). 齊勺(趙)遇於阿, 王憂之. 臣與於遇, 約功(攻)秦去帝.”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編, 1976, 『戰國縱橫家書』, 文物出版社, 9쪽). ()는 통가자, □는 결실자, 【 】는 보완자 < >는 수정자를 뜻함. 이하 같음.

42 『전국중횡가서(戰國縱橫家書)』는 서한(西漢) 시대 나무덧널무덤(木槨墓)인 마왕퇴(馬王堆) 3호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마왕퇴 3호는 문제(文帝) 12년(서기전 168년)에 매장된 장사상상(長沙丞相) 대후(軼侯) 이창(利蒼)의 아들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河南省博物館·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長沙馬王堆二, 三號漢墓 第一卷: 田野考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 87, 237~238쪽.

43 馬雍, 1990, 「帛書《戰國縱橫家書》各章的年代和歷史背景」, 『西域史地文物叢考』, 文物出版社, 220쪽; 張清常·王延棟, 1993, 『戰國策箋注』, 南開大學出版社, 212~213쪽; 白壽彝 總主編, 1994, 『中國通史 4』, 上海人民出版社, 925쪽; 리산 저, 이기흥 역, 2016, 『전국칠웅』, 인간사랑, 355쪽.

이기 때문에 대략 문서의 작성 시점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는 ⑦의 구체적 작성 시점에 대해 서기전 288년,⁴⁴ 서기전 288~287년,⁴⁵ 서기전 287년,⁴⁶ 서기전 286년⁴⁷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소진은 제와의 외교 업무에 종사한 지 5년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연의 제 공격은 ⑦의 작성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의 제 공격 시점은 대략 ⑦의 작성 시점의 상한인 서기전 288년의 5년 전인 서기전 293년에서 작성 시점의 하한인 서기전 286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연이 제를 공격한 구체적 공격 시점에 대해서는 서기전 290년,⁴⁸ 서기전 288년⁴⁹ 등의 견해가 있다. 한편, 소진이 외교 업무에 종사했다고 하는 5년은 ⑦의 작성 시점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소진이 제에 파견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소진이 제에 파견된 시점은 서기전 300년으로, 연의 제 공격 시기는 서기전 300년으로부터 헛수로 5년 후인 서기전 296년으로 볼 수 있다.⁵⁰

⑧: 과인이 그대와 더불어 송을 공격할 것을 모의한 것은 연과 조를 믿었기 때문이오. 지금 연왕이 여러 신하와 더불어 송에서 제를 격파하기로 모의하고 제를 공격함이 매우 급합니다.(『전국중횡가서』)⁵¹

-
- 44 曾鳴, 1975, 「關於帛書《戰國策》中蘇秦書信若干年代問題的商榷」, 『文物』 1975-8, 文物出版社, 28쪽; 佐藤武敏 監修, 工藤元男·早苗良雄·藤田勝九 譯注, 1993, 『戰國縱橫家書』, 朋友書店, 83쪽.
- 45 구본희, 2019, 「소진의 서신과 편년 문제-『전국중횡가서』 제4장 자제헌서어연왕장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53, 중국고중세사학회, 107쪽.
- 46 青城, 1995, 「帛書《戰國縱橫家書》前十四章結構時序考辨」, 『管子學刊』 1995-2, 山東理工大學齊文化研究院, 80~81쪽.
- 47 馬雍, 1990, 앞의 글, 220쪽; 張清常·王延棟, 1993, 앞의 책, 806쪽.
- 48 曾鳴, 1975, 앞의 글, 30쪽.
- 49 青城, 1995, 앞의 글, 81쪽.
- 50 馬雍, 1990, 앞의 글, 212~213쪽; 白壽彝 總主編, 1994, 앞의 책, 925쪽.

⑨: 과인이 (진과) 강화하고자 하는 까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인이 진을 공격한 것은 대부분 위를 위한 것이지만 위는 제의 군사를 관(觀)에 머무르게 하고는 수개월이나 맞으려 나오지 않았으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의 군사를 영양(成皋)과 성고(成皋)에 버려두고 수개월 동안 연합하지 않은 채로 송을 공격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과인이 거듭 송을 공격했을 때 위에 송으로 가는 관소를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는 과인이 이미 송과 강화하고 나니 와서는 획득한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연과 조의 군사가 (제의 영역에) 모두 이르러 매우 빠르게 치(菑)를 공격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전국縱橫가서』)⁵²

⑧은 제민왕이 송규(宋竊), 후취(侯瀟) 등을 통해 소진에게 언급한 내용으로 제가 연·조 등과 더불어 송을 공략하는 와중에 연이 제를 공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연이 제를 공격한 시점은 대체로 제의 송에 대한 2차 공격이 있었던 서기전 287년⁵³으로 볼 수 있다. ⑨는 소진이 제민왕(齊湣王)의 뜻을 조의 봉양군(奉陽君)에게 전한 내용이다. 이 또한 ⑧과 같이 제의 송 원정을 배경으로 서기전 287~286년 무렵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는데,⁵⁴ 이 시기에 연과 조가 제를 공격하였음을 보여준다. 조는 혜문왕 12년(서기전 287년)·13년(서기전

51 『戰國縱橫家書』 6, 蘇秦自梁獻書燕王章(一). “寡人與子謀功(攻)宋, 寡人恃燕勺(趙)也. 今燕王與群臣謀破齊於宋而功(攻)齊, 甚急.”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1976, 앞의 책, 23쪽.

52 『戰國縱橫家書』 12, 蘇秦自趙獻書於齊王章(二). “寡人之所以有講慮者有, 寡人所爲功(攻)秦, 爲梁(梁)爲多, 梁(梁)氏者留齊兵于觀, 數月不逆, 寡人失望. 一. 擇(釋)齊兵于滎陽成皋, 數月不從, 而功(攻)宋, 再. 寡人之叨(仍)功(攻)宋也, 請于梁(梁)閉關於宋而不許, 寡人已舉(與)宋講矣, 乃來爭(爭)得, 三. 今燕勺(趙)之兵皆至矣, 俞(愈)疾功(攻)菑, 四.”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編, 1976, 앞의 책, 38쪽.

53 馬雍, 1990, 앞의 글, 220쪽; 佐藤武敏 監修, 工藤元男·早苗良雄·藤田勝九 譯注, 1993, 앞의 책, 107쪽.

54 佐藤武敏 監修, 工藤元男·早苗良雄·藤田勝九 譯注, 1993, 앞의 책, 149쪽.

286년)에 제를 공격하였는데,⁵⁵ ㉑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의 군사적 활동으로 보아 제·연 전쟁 전에는 연이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제하였다는 선행 연구의 전제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는 소진의 활동으로 연을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인정한 후, 일찍이 오도지병(五都之兵)과 더불어 연 침공의 주요 병력이었을 뿐 아니라 연과의 접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지의 군사(北地之衆)를 철수시켰다.⁵⁶(㉗)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여유 병력은 대체로 당시 제의 주요 관심사였던 경제적 요충인 송 침공과 같이 패권 유지를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 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제는 연의 최소한의 자위와 자신들의 대외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묵인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연 전쟁이 제·연 전쟁 이후에 발발하였다는 연구는 그 토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의 군사적 취약성

제·연 전쟁 이후 개전을 주장하는 연구는 조연 전쟁이 제·연 전쟁 발발 후 빠르면 1년 내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정세나 연의 군사적 역량으로 볼 때 제·연 전쟁 이후 연이 고조선이나 동호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연 전쟁 이후 제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이 고조선과의 전쟁에 투입할 여유 병력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⁵⁷ 그러나 당시 제와 연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군사력의 격차는 제·연 전쟁이 연에게 가한 국가적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막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55 『史記』 43, 趙世家 13, 惠文王 12년·13년.

56 佐藤武敏 監修, 工藤元男·早苗良雄·藤田勝九 譯注, 1993, 앞의 책, 83쪽.

57 조원진, 2020, 앞의 글, 55쪽.

연이 이미 연역왕(燕易王) 시대에 수십만의 군대⁵⁸ 혹은 60만을 초과하는 병력을 운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⁵⁹ 동의하기 어렵다. 전자는 『전국책』·『사기』 등에 보이는 소진의 주장에, 후자는 연왕 희(喜) 시대에 60만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기록에⁶⁰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유세가의 과장된 발언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후자 또한 수십 년 뒤의 상황이므로 연의 고조선 침공 당시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연왕 희 시대에 60만이라는 막대한 병력은 연의 사회·경제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기 588년, 수(隋)가 남조(南朝) 진(陳)을 멸망시키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51만 8천⁶¹ 정도였음을 생각할 때 연왕 희 시대에 이른바 60만이라는 병력은 매우 과장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제와 연의 영토 크기의 현격한 차이는 당시 제와 연의 국가적 역량의 뚜렷한 비대칭성을 보여준다.⁶² 제의 영토는 연의 수배에 이를 뿐 아니라 비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의 실질적 국력의 척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규모에서도 연을 크게 능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전체 인구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성(城)의 총수 비교를 통해 두 나라 인구의 상대적 비율은 대

-
- 58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1 고대 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77쪽.
 - 5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앞의 책, 39쪽. 고조선·연 전쟁 무렵 연이 50만의 병력을 운용하였다는 서술도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60만 설의 오류로 보인다. 김기섭, 2020, 『21세기 한국 고대사: 구석기시대~남북국시대』, 주류성, 93쪽.
 - 60 『戰國策』 卷31, 燕 3, 燕王喜使栗腹以百金爲趙孝成王壽, “遽起六十萬以攻趙. 令栗腹以四十萬攻鄆, 使慶秦以二十萬攻代, 趙使廉頗以八萬遇栗腹於鄆, 使樂乘以五萬遇慶秦於代, 燕人大敗.”; 李樹林·李妍, 2013, 앞의 글, 64쪽.
 - 61 『隋書』 卷2, 高祖下 開皇 8년 冬10월, “將伐陳, 有事於太廟, 命晉王廣, 秦王俊, 清河公楊素竝爲行軍元帥, 以伐陳… 合總管九十兵五十一萬八千…”.
 - 62 전국 중기 연이 북경·천진·당산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제는 하북 창주(滄州)로부터 강소성 북부 지역에 이르렀으며(郭沫若 主編, 1996, 『中國史稿地圖集 上冊』, 中國地圖出版社, 22쪽), 전쟁 직전(서기전 286년) 송을 멸망시킴으로써 판도를 더욱 넓혔다.

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제·연 전쟁 무렵인 전국 중기 제 성의 총수는 『전국책』의 기록을 통해 약 120여 개 정도로 볼 수 있다.⁶³ 당시 연 성의 총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문헌 기록이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총수는 25개이다.⁶⁴ 물론 일부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성의 총수는 이보다 다소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는 연 지역이 제 지역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므로⁶⁵ 전국 중기 당시 연의 인구나 병력 규모는 제의 20%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책』이나 『사기』에는 소진·장의 등의 언급을 통해 전국 중기 제의 병력 규모는 수십만으로,⁶⁶ 진, 초 등 기타 열강의 병력은 1백만으로 기록하고 있다.⁶⁷ 당시 진의 성 수는 제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⁶⁸ 제의 병력도 진·초 등과 비슷한 규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진·장의 등의 언급은 유

-
- 63 『戰國策』 8, 齊 1, 鄒忌脩八尺有餘. “於是入朝見威王曰, 臣誠知不如徐公美, 臣之妻私臣, 臣之妾畏臣, 臣之客欲有求於臣, 皆以美於徐公. 今齊地方千里, 百二十城, 宮婦左右, 莫不私王, 朝廷之臣, 莫不畏王, 四境之內, 莫不有求於王. 由此觀之, 王之蔽甚矣. 王曰善.”; 曹迎春, 2012, 『中山國經濟研究』, 中華書局, 18쪽.
- 64 목문원(繆文遠, 1998, 『戰國制度通考』, 巴蜀書社, 230~236쪽)과 후효영·진효비(后曉榮·陳曉飛, 2007, 「考古出土文物所見燕國地名考」,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6, 首都師範大學, 34~36쪽)의 연구에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45개인데, 이 가운데 5군의 성을 제외하면 총 25개이다.
- 65 江村治樹, 2005, 『戰國秦漢時代の都市と國家』, 白帝社, 68쪽.
- 66 『史記』 69, 蘇秦列傳 9. “齊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粟如丘山.”; 『戰國策』 8, 齊 1, 蘇秦爲趙合從說齊宣王장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 67 『史記』 69, 蘇秦列傳 9. “楚, 天下之疆國也, 王, 天下之賢王也. 西有黔中巫郡, 東有夏州海陽, 南有洞庭蒼梧, 北有陘塞郇陽, 地方五千餘里, 帶甲百萬, 車千乘, 騎萬匹, 粟支十年.”; 『史記』 70, 張儀列傳 10. “秦地半天下, 兵敵四國, 被險帶河, 四塞以爲固, 虎賁之士百餘萬, 車千乘, 騎萬匹, 積粟如丘山.”; 『戰國策』 3, 秦 1, 蘇秦始將連橫. “蘇秦始將連橫, 說秦惠王曰, 大王之國, 西有巴蜀漢中之利, 北有胡貉代馬之用, 南有巫山黔中之限, 東有饒函之固, 田肥美, 民殷富, 戰車萬乘, 奮擊百萬, 沃野千里, 蓄積饒多, 地勢形便, 此所以天府之, 天下之雄國也.”
- 68 曹迎春, 2012, 앞의 책, 18~19쪽.

세가로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1백만이라는 병력은 적어도 이상적인 최대 수치의 3배 이상으로 과장된 것으로 보이므로⁶⁹ 전국 중기 강국의 병력은 대략 최대 30만 정도로 생각된다. 전국시대에 병력의 약 1/3 정도는 자국의 방어를 위해 국내에 주둔하므로⁷⁰ 대외 원정 동원 가능 최대 병력은 약 20만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진소 양왕 재위 시기 진의 원정군 규모를 최대 약 10~20만 정도로 추정하는 선행 연구나⁷¹ 초의 총병력 규모가 20~30만 정도라는 연구 결과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⁷² 따라서 제의 총병력 규모도 약 30만으로 볼 수 있다. 물론 30만이라는 병력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최대 수치이므로 일반적인 원정 규모는 수만 정도일 것이며 최대로 잡아도 10만을 초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연 전쟁 무렵 활약한 전단(田單)은 전쟁 수행 병력으로 3만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하였는데,⁷³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원정군 규모가 수만 정도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⁷⁴ 따라서 연이 동원 가능한 병력은 국내 주둔 병력을 포함해서 6만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도 비현실적인 최대 가능치일 뿐이고 자국 방

-
- 69 전국 시대 각국의 병력의 수는 소진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당 3인의 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3배 이상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戰國策』 8, 齊 1, 蘇秦爲趙合從說齊宣王, “臨淄之中七萬戶, 臣竊度之, 下戶三男子, 三七二十一萬, 不待發於遠縣, 而臨淄之卒固以二十一萬矣.”
- 70 장인성, 1998, 「중국 고대 장세의 출현과 형태」, 『백제연구』 2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405쪽.
- 71 宮宅潔, 2013, 「秦の戰役史と遠征軍の構成-昭襄王期から秦王政まで」, 『中國古代軍事制度の綜合的研究(研究課題番號:20320109)平成20~24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研究成果報告書』,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45쪽.
- 72 柿沼陽平, 2015, 「戰國時代における楚の都市と經濟」, 『東洋文化研究』 17,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13쪽.
- 73 戰國策 20, 趙 3, 趙惠文王三十年, “相都平君田單問趙奢曰, 吾非不說將軍之兵法也, 所以不服者獨將軍之用衆, 用衆者, 使民不得耕作, 糧食輓賃不可給也, 此坐而自破之道也, 非單之所爲也, 單聞之, 帝王之兵所用者不過三萬而天下服矣.”
- 74 江村治樹, 2005, 앞의 책, 86쪽.

위를 위한 잔류 병력도 필요하므로 제 원정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최대로 잡아도 4만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공격하는 측이 방어하는 측보다 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므로⁷⁵ 실질적인 제의 병력 규모는 연의 15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에 대한 제의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는 연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연도 위와 같은 제와의 현격한 군사력 격차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하나로서 다른 열강과의 연합 공격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연의 제 침공은 진·조·위·한 등과 함께 제군의 주력을 제서(濟西)에서 격파함으로써 승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제 침공에 참여한 각국은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철수하였으므로⁷⁶ 연이 제 주력을 격파했다고 해서 제와의 군사력 격차가 단번에 해소될 수는 없었다. 연의 처지에서 볼 때, 제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한 서기전 284년 이후 오히려 더 큰 병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광대한 점령지에 군사를 주둔하면서 제 저항 세력과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⁷⁷

연이 거(莒)·즉묵(卽墨)을 제외한 제의 모든 성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악의(樂毅)가 제에 5년 동안 머물며 제의 저항을 분쇄하고 올린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⁸ 제 저항 세력의 근거지라

75 『三國志』 3, 魏書 3, 明帝 黃初 7년 8월, “孫權攻江夏郡, 太守文聘堅守, 朝議欲發兵救之, 帝曰, 權習水戰, 所以敢下船陸攻者, 幾掩不備也, 今已與聘相持, 夫攻守勢倍, 終不敢久也.”

76 白壽彝 總主編, 1994, 앞의 책, 926쪽.

77 王建新, 1999, 앞의 책, 211쪽; 鍾少異, 2008, 『中國古代軍事工程技術史(上古至五代)』, 山西出版集團·山西教育出版社, 317쪽.

78 『史記』 80, 樂毅列傳 20, “樂毅於是并護趙楚韓魏燕之兵以伐齊, 破之濟西, 諸侯兵罷歸, 而燕軍樂毅獨追, 至于臨菑, 齊湣王之敗濟西, 亡走, 保於莒, 樂毅獨留徇齊, 齊皆城守, 樂毅攻入臨菑, 盡取齊寶財物祭器輸之燕, 燕昭王大說, 親至濟上勞軍, 行賞饗士, 封樂毅於昌國, 號爲昌國君, 於是燕昭王收齊鹵獲以歸, 而使樂毅復以兵平齊城之不下者, 樂毅留徇齊五歲, 下齊七十餘城, 皆

고 할 수 있는 거·즉묵 등은 모두 일반적인 중소 규모의 성이 아니었다. 임치 고성, 즉묵 고성, 거국 고성의 면적은 각각 18.7km², 12.5km², 24.75km²로서⁷⁹ 단순 면적 비교만으로는 즉묵 고성은 임치 고성의 약 67%에 이르고 거국 고성은 임치 고성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즉묵 등은 최정예 군사가 주둔하는⁸⁰ 5도(五都)인 것으로 보인다.⁸¹ 따라서 연이 임치를 점령한 이후에도 제정의 약 40% 정도가 연의 공세에 저항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연이 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문자 그대로 ‘단 두 성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의 성이 연에게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연이 함락한 성이 70여 곳이라고 하는데, 이 무렵 제의 성이 총 120개였다는 기록을 생각할 때 과연 연이 제의 거의 전토를 점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호전자와 후자의 ‘성’의 성격이 상이했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이는 사마천의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 서한 초 제 성의 총수가 70여 성⁸² 또는 72성이라는⁸³ 기록

爲郡縣以屬燕，唯獨莒卽墨未服。”；楊寬，1998，《戰國史(增訂本)》，上海人民出版社，395쪽.

- 79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2003，「山東卽墨故城調查」，《華夏考古》2003-1，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學會，27쪽；劉興林，2009，「莒城·莒墓·莒鼎-莒文化三事」，《管子學刊》2009-4，山東理工大學齊文化研究院，123쪽.
- 80 趙慶森，2009，「齊國置“五都”說芻議」，《中國歷史地理論叢》2009-4，陝西師範大學，129쪽.
- 81 太田幸男，2006，「秦に並び君臨した齊」，《中國古代史と歴史認識》，名著出版行會，196쪽. 거는 5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王佳怡，2013，「田齊軍制初探」，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6~27쪽) 연의 공격을 5년 동안 견디며 제 저항 세력의 중심 근거지로 기능한 사실을 볼 때 5도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 82 『史記』106，吳王濞列傳 46，“昔高帝初定天下，昆弟少，諸子弱，大封同姓，故王孽子悼惠王齊七十餘城，庶弟元王王楚四十餘城，兄子濞王吳五十餘城，封三庶孽，分天下半.”
- 83 『漢書』35，荊燕吳傳 5，“昔高帝初定天下，昆弟少，諸子弱，大封同姓，故孽子悼惠王齊七十二城，庶弟元王王楚四十城，兄子王吳五十餘城，封三庶孽，分天下半.”

이 보이는데, 이는 연이 점령했다는 제 성의 수와 일치한다. 그런데 서한 초 도혜왕(悼惠王)이 고조(高祖)로부터 봉국으로 받은 제는 본래 임치국(臨菑國)·제북국(濟北國)·교동국(膠東國) 등 3국이 병합된 것이다. 이 3국의 범위는 진대 동명의 3군과 부합한다면 대체로 북으로는 창주(滄州), 동남으로는 교동만(膠東灣), 남으로는 태안(泰安) 지역에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⁸⁴ 다시 말해서 서한 초 제의 범위는 하북 창주로부터 남으로 강소성 북부를 포함했던 전국 중기 제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마천은 연이 점령한 제 성의 수와 서한 초 제 성의 수가 일치한 것을 보고 연이 제 영토 대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의 점령 지역이 대체로 북의 창주로부터 남의 제장성(齊長城) 선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제의 북쪽 중심 지역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쟁 당시 연이 낭야(琅邪) 지역에 이르렀다는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⁸⁵ 사마천의 착각이 사실이라면 연이 점령한 70여 성이 120성의 약 3/5 정도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5도 가운데 3도가 연의 점령하에 들어갔으나 아직 거·즉묵 등 2도가 저항하고 있었던 사실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이 임치를 점령한 이듬해인 서기전 283년 조가 제로부터 거·즉묵 외의 다른 성을 탈취했다는 기록이 있다.⁸⁶ 이는 연이 거·즉묵 등을 제외한 제의 모든 성을 점령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전쟁 당시 비록 연이 제의 중심 지역을 차지하였으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중소 성이 거와 즉묵 세력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 성의 거대한 규모, 공성의 어려움⁸⁷ 등을 고려하면 제 점령이 장기화될수록 연의 수

84 譚其驥 主編, 1996,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秦·西漢·東漢時代』, 中國地圖出版社, 7~8쪽.

85 『說苑』 12, 奉使. “昔燕攻齊, 遵雒路, 渡濟橋, 焚雍門, 擊齊左而虛其右, 王歇絕頸而死於杜山, 公孫差格死於龍門, 飲馬乎淄澗, 定獲乎琅邪, 王與太后奔于莒, 逃於城陽之山, 當此之時, 則梧之大何如乎.”

86 『史記』 43, 趙世家 13, 趙惠文王 16년. “廉頗將, 攻齊昔陽, 取之.”

87 전단이 연이 점령한 요성(聊城)을 1년이 넘도록 함락할 수 없었던 사실은 당시 공성전의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戰國策』 13, 齊 6, 燕攻齊取七十餘城. “齊田單以

적 열세에 의한 병력 부족에 대한 압박과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은 연소왕이 사망한 직후 제에서 축출될 때까지 수년 동안 다른 전쟁을 수행할 만한 여유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연이 고조선을 공격하기 전에 동호화도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사실상 제·연 전쟁 중 연이 북방으로 원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제·연 전쟁 중 연이 동호나 고조선을 침공하는 행위는 후방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치명적인 양면 전쟁을 스스로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위이므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⁸⁸

연이 부강해지자 연의 군사들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안일해졌기 때문에 제·연 전쟁 전 연의 북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나⁸⁹ 이는 잘못이다. 위 연구가 근거로 제시한 『사기』 연소왕 28년조는⁹⁰ 연이 부강해지자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하여 전쟁을 기꺼이 무릅쓰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연이 부강해지면서 연의 군사력이 상승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제·연 전쟁 전 연의 북벌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의 군사적 한계를 생각할 때 남방의 제를 격파하지 못한 연을 사마천이 묘사한 전성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연소왕 28년조는 연의 제 격파가 연의 강성의 결과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사마천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마천이 인식한 연의 전성기의 기점은 제·연 전쟁 발발 전까지 소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墨破燕，殺騎劫。初，燕將攻下聊城，人或讒之。燕將懼誅，遂保守聊城，不敢歸。田單攻之歲餘，士卒多死，而聊城不下。”

88 양면 전쟁은 전투력이 양분되고 포위당할 위험이 있다. 이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패망을 자초한 사실에 비유할 수 있다.

89 조원진, 2020, 앞의 글, 55쪽.

90 『史記』 34, 燕召公世家 4, 昭王 28년, “燕國殷富，士卒樂軼輕戰，於是遂以樂毅爲上將軍，與秦楚三晉合謀以伐齊。”

Ⅲ. 개전 시점과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기전 284년 이후 제와의 전쟁에 가용 병력의 최대치와 국가적 역량을 경주한 연이 동호나 고조선과의 전쟁을 위해 후방으로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제·연 전쟁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⁹¹ 늦어도 서기전 288년이나 서기전 287년 무렵에는 연의 제에 대한 적대적 군사 행동이 보이므로 이 시기에는 이미 제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계획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연 전쟁은 이보다 앞선 시점에 일어났을 것이다.

제의 북지 군사 철수는 연의 북방 원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과 제의 국경 지대에서 북방의 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북지의 군사가 철수함으로써 연은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의 상한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무령왕 26년(서기전 300년)⁽²⁾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이다. 소진이 빠르면 서기전 300년경에 제에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에 유세하여 북지의 군사를 철수시키는 성과를 올리기까지는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년 중 기후 문제로 인해 연의 원정 가능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조연 전쟁에 앞서 동호와 연의 전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무령왕 26년 당해에 연의 고조선 침공이 개시되었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따라서 전쟁 발발 시점의 상한은 서기전 299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은 조연 전쟁 무렵의 정세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홍노열전」은 연이 동호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만일 진개의 활동 시기가 서기전 284년 이후라면 연이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심각한 경제적 부담 속에서 제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동호를 먼저 침공함으로써 후방의 안정을 스스로 붕괴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전 시점은 서기전 290년대에서 크게 벗

91 王建新, 1999, 앞의 책, 211쪽; 鍾少異, 2008, 앞의 책, 317쪽.

어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북지의 군사가 철수하고 제에 대한 연의 군사적 공세가 시작되기 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서기전 296년에 연의 제 공격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⑥) 이르면 서기전 299~297년 무렵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 당시 연군의 총 행군 거리는 2천여 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⁹² 하루 평균 행군 거리를 약 30리로 상정할 때,⁹³ 연의 서울인 연하도에서 요동까지 군사가 이동하는 데만도 두 달이 넘게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쟁 기간은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필요했을 것이고 종전 후의 휴식 기간과 추후의 전쟁 준비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서기전 296년 한 해 전인 서기전 297년은 개전 시점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전쟁 발발 시점은 서기전 299~298년 무렵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북지의 군사 철수와 관련된 소진의 제 파견은 ⑦의 작성 시점 상한(서기전 288)보다 5년 전인 서기전 293년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서기전 300년 소진 파견설과 마찬가지로 서기전 293년 당해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연의 제 공격은 서기전 288년 무렵에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연 전쟁의 발발은 늦어도 서기전 289년 이전일 것이다. 이 경우 또한 휴식과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서기전 288년 한 해 전인 서기전 289년은 개전 시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전쟁의 발발은 서기전 292~290년 무렵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르면 서기전 290년대 초엽(서기전 299~298년), 늦어도 290년대 말엽(서기전 292~290년)에는 조연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조연 전쟁의 원인을 대체로 연의 국력 상승에 따른 세력 확장의 결과나⁹⁴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한 연의 보복,⁹⁵ 고조선의 강성

92 이성재, 2020, 「고조선과 연(燕)의 전쟁 전후 고조선의 강역 변화-고조선이 상실한 '2,000여 리'의 실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동양학』 8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9~30쪽.

93 李晞, 2006, 『兵以詐立-我讀《孫子》』, 中華書局, 236쪽.

94 국방군사연구소 편, 1994, 『한민족전쟁통사 I 고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8~19쪽;

에 대한 연의 우려로 인한 선제공격⁹⁶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연소왕의 개혁으로 인한 연의 국력 상승이나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압박 등에 대한 보복 의지, 연의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압박에 대한 위기의식 등이 고조선과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는 위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연 전쟁을 두 세력의 정치·군사적 갈등 관계 속에서만 찾으려는 시도는 전쟁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쟁은 전쟁 당사자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조연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와 같은 단순한 시각은 고조선과 연의 본격적인 갈등 관계가 수십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음에도 연의 고조선 침공이 왜 연소왕의 재위 기간 내에서도 특정 시점에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고조선은 전쟁 직전 연과 대립적이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와 친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을 멸망 위기에 몰아넣었던 숙적 제와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던 연소왕의 처지에서 후방의 적대적인 세력인 고조선이 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었다고 하겠다. 배진영은 연이 제 원정을 위해 군사력을 남쪽으로 집중시켰을 때 연 후방에 대한 고조선의 군사적 적대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전쟁 이전의 고조선과 연의 관계가 우호적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상호 간의 원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하였다.⁹⁷ 그러나 제·연 전쟁 시기 연의 후방에 대한 고조선의 군사적 공격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미 조연 전쟁에서 고조선이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조연 전쟁 직전 고조선은 연에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91쪽;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46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앞의 책, 30, 34~35쪽.

95 박대재, 2006, 앞의 책, 79쪽; 박준형, 2014, 앞의 책, 172~173쪽.

96 전준현, 1988,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2쪽.

97 배진영, 2009,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주), 331~332쪽.

대해 정치·군사적으로 위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은 『위략』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비파형동검의 집중 분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요동반도 남단은 산동반도와 묘도 군도를 통해 해상 왕래가 비교적 편리하였기 때문에⁹⁸ 두 지역은 일찍이 원시시대부터 교류가 있었다.⁹⁹ 산동반도에서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에 속하는 고조선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령 지역의 비교적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고 있고¹⁰⁰ 요동반도에서도 산동반도로부터 이입된 유물이 확인된다.¹⁰¹ 『관자』 「규탁(揆度)」¹⁰²·「경중갑(輕重甲)」¹⁰³ 등에는 제환공 시대에 고조선과 제가 교역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비록 전국 시대의 기록일 가능성이 있으나 춘추 시대 이래 고조선과 제의 긴밀한 교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⁴ 고조선의 관제에서 제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¹⁰⁵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단적으로

98 孫湘平, 1995, 『中國의海洋』, 商務印書館, 35, 40쪽.

99 岡村秀典, 1993, 「中國先史時代玉器の生産と流通-前三千年紀の遼東半島を中心に-」, 『東アジアにおける生産と流通の歴史社會學的研究』, 中國書店, 12~13쪽; 呂軍, 2003, 「從考古學上談岫岩玉在中國玉文化起源中的地位與作用」, 『鞍山師範學院學報』 2003-5, 鞍山師範學院, 57쪽; 박준형, 2006, 「고조선의 해상교역과 래이」, 『북방사논총』 10, 동북아역사재단, 183~187쪽.

100 王青, 2007, 「山東發現的幾把東北系青銅短劍及相關問題」, 『考古』 2007-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58~60쪽; 박준형, 2013, 「산동지역과 요동지역의 문화교류」, 『한국상고사학보』 79, 한국상고사학회, 47, 53~55쪽; 박순발, 2016, 「중국 산동의 역사문물과 한국고대사」, 『2016 한성백제박물관 국제교류전 I “공자의 그의 고향 산동” 연계 국제학술대회 중국 산동의 역사와 문화」, 한성백제박물관, 14~18쪽.

101 이후석, 2020,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체계와 사회-쌍방문화·신성자문화·강상문화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45, 승실사학회, 59쪽.

102 『管子』 23, 揆度 78.

103 『管子』 23, 輕重甲 80.

104 박준형, 2007, 「고조선의 대외 교역과 의미-춘추 제(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183~192쪽.

105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74~78쪽.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당시 고조선과 제 사이에는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연을 남북으로 포위하는 정치·군사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¹⁰⁶ 제가 연을 침공했을 때 고조선이 연의 동부 변경에 대해 취한 군사적 공세도 이러한 긴밀한 공조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⁰⁷

만일 연이 제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남방으로 경주하고 있을 때 고조선이 후방에 대한 전면적 군사 공격을 단행한다면 제·연 전쟁의 패배뿐 아니라 연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이 위와 같은 잠재적인 고조선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연의 처지에서 당시 대립적인 조연 관계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 공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고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은 제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이전에 고조선 선제공격을 감행하였고 이것이 조연 전쟁이 발발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연 전쟁 이후 연이 고조선과 제 저항 세력의 공조를 우려하여 후방의 안정을 위해 고조선을 침공했다는 견해도¹⁰⁸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연 전쟁은 제·연 전쟁 전에 일어났으므로 제 저항 세력과 고조선의 공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이 고조선을 선제공격하였다는 설명은 성립하기 어렵다.

동북아시아 북부의 세력이 남방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후방의 군사적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는 사례는 한국 역사에서 비교적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전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연의 고구려 침공과¹⁰⁹ 후금의 조선 침공¹¹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106 박준형, 2014, 앞의 책, 171~173쪽.

107 박대재, 2006, 앞의 책, 65~67쪽.

108 박대재, 2006, 위의 책, 79쪽.

109 『資治通鑑』 97, 晉紀 19, 顯宗成皇帝下 咸康 8년 10월. “建威將軍翰言於銚曰, 宇文强盛日久, 屢爲國患, 今逸豆歸篡竊得國, 羣情不附, 加之性識庸闇, 將帥

와 같은 전쟁 유형이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전연의 모용한(慕容翰)은 고구려를 중원을 도모하기 위해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서 후방의 심각한 위협인 ‘심복지환’으로 지목하며 고구려 침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것은 조연 전쟁을 일으킨 연의 기본적인 대고조선 인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V. 맺음말

조연 전쟁은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전 281년 사이의 연소왕 재위 기간 내에 발발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일부 남한 학계의 연구는 조연 전쟁이 제·연 전쟁이 발발한 서기전 284년 이후에 일어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이 제에 의해 대패하여 망국의 상태에 처한 이후 제·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제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연 전쟁 전에 연이 공공연히 중산·제 등 인접 세력과 전쟁을 벌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연 전쟁이 제·연 전쟁 이후에 발발하였다는 연구는 그 논리적 토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중기 당시 연의 병력 규모는 제의 20%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격하는 측이 방어하는 측보다 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므로 연에 대한 제의 압도적인 병력 우위는 연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

非才，國無防衛，軍無部伍，臣久在其國，悉其地形，雖遠附強，聲勢不接，無益救援，今若擊之，百舉百克。然高句麗去國密邇 … 必乘虛深入，掩吾不備。若少留兵則不足以守，多留兵則不足以行。此心腹之患也，宜先除之，觀其勢力，一舉可克。宇文自守之虜，必不能遠來爭利。既取高句麗，還取宇文，如返手耳。二國既平，利盡東海，國富兵強，無返顧之憂，然後中原可圖也。眇曰，善。”

110 조영록, 1977, 「입관전 명·선시대의 만주여역사」, 『백산학보』 22, 백산학회, 70쪽.

의 처지에서 볼 때, 임치를 점령한 서기전 284년 이후 더 큰 병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연은 단독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광대한 점령지에 군사를 주둔하면서 제의 저항 세력과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조선과 연의 전쟁이 서기전 284년 이후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연 전쟁은 제가 연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를 철수시킨 무렵인 서기전 290년대 초엽(서기전 299~298년)이나 말엽(서기전 292~290년)에 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은 전쟁 직전 연과 대립적이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와 친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만일 연이 제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남방으로 경주하고 있을 때 고조선이 후방에 대한 전면적 군사 공격을 단행한다면 제·연 전쟁의 패배뿐 아니라 연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은 국력 회복 이후 제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이전에 고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고 이것이 개전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管子』.
『大事記』.
『史記』.
『三國志』.
『說苑』.
『隋書』.
『呂氏春秋』.
『資治通鑑』.
『戰國策』.
『周季編略』.
『漢書』.

유향 편, 임동석 역주, 2009, 『전국책 2/4』, 동서문화사.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編, 1976, 『戰國縱橫家書』, 文物出版社.

呂不韋, 陳奇猷 校釋, 2002, 『呂氏春秋新校釋 下冊』, 上海古籍出版社.

佐藤武敏 監修, 工藤元男·早苗良雄·藤田勝九 譯注, 1993, 『戰國縱橫家書』, 朋友書店.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편, 1994, 『한민족전쟁통사 I 고대편』, 국방군사연구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한국고대 군사전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김기섭, 2020, 『21세기 한국 고대사: 구석기시대~남북국시대』, 주류성.

리산 저, 이기홍 역, 2016, 『전국칠웅』, 인간사랑.

- 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 배진영, 2009,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주).
-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한국군사사 1 고대 I』,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 이재 등, 1988, 『한민족전쟁사총론』, 교학연구소.
- 전준현, 1988,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고조선-발해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정인보, 1946, 『조선사연구 상권』, 서울신문사.
- 케네스 헤이건·이안 비거튼 저, 김성칠 역, 2013, 『의도하지 않은 결과: 미국과 전쟁 1775~2007』, SHBOOKS.
- 郭沫若 主編, 1996, 『中國史稿地圖集 上冊』, 中國地圖出版社.
- 譚其驤 主編, 1996,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秦·西漢·東漢時代』, 中國地圖出版社.
- 繆文遠, 1987, 『戰國策新校註(上)』, 巴蜀書社.
- _____, 1998, 『戰國制度通考』, 巴蜀書社.
- 白壽彝 總主編, 1994, 『中國通史 4』, 上海人民出版社.
- 孫湘平, 1995, 『中國的海洋』, 商務印書館.
- 孫進己, 1994, 『東北亞民族史論研究』, 中州古籍出版社.
- 楊寬, 1998, 『戰國史(增訂本)』, 上海人民出版社.
- _____, 2001, 『戰國史料編年輯證』, 上海人民出版社.
- 王國良 編, 1978, 『中國長城沿革考』, 臺灣商務印書館.
- 劉國文, 2006, 『阜新通史』, 吉林大學出版社.
- 李零, 2006, 『兵以詐立-我讀《孫子》』, 中華書局.
- 李治亭 主編,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 張清常·王延棟, 1993, 『戰國策箋注』, 南開大學出版社.
- 曹迎春, 2012, 『中山國經濟研究』, 中華書局.
- 鍾少異, 2008, 『中國古代軍事工程技術史(上古至五代)』, 山西出版集團·山西教育出版社.
- 周清澍 主編, 1994, 『內蒙古歷史地理』, 內蒙古大學出版社.
- 陣平, 1995,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大學出版社.

河南省博物館·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長沙馬王堆二, 三號漢墓 第一卷: 田野考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江村治樹, 2005, 『戰國秦漢時代の都市と國家』, 白帝社.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石川岳彦, 2017, 『春秋戰國時代 燕國の考古學』, 雄山閣.

王建新, 1999,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 同成社.

논문

구분희, 2019, 「소진의 서진과 편년 문제-『전국총항가서』 제4장 자제헌서어연왕장 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53, 중국고중세사학회.

김남중, 2002, 「연·진의 요동통치의 한계와 고조선의 요동 회복」, 『백산학보』 62, 백산학회.

김상민, 2019, 「연 문화의 확산과 요서지역 철기문화의 정착과정」, 『호서고고학』 44, 호서고고학회.

김새봄, 2012, 「중국동북지역 반월형 철도의 출현과 그 기원에 관한 문제제기」,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개설 40주년 기념논총 인류학 고고학 논총』, 학연문화사.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 47, 동북아역사재단.

박순발, 2016, 「중국 산동의 역사문물과 한국고대사」, 『2016 한성백제박물관 국제교류전 I “공자의 그의 고향 산동” 연계 국제학술대회 중국 산동의 역사와 문화』, 한성백제박물관.

박준형, 2006, 「고조선의 해상교역과 래이」, 『북방사논총』 10,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07, 「고조선의 대외 교역과 의미-춘추 제(齊)와의 교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_____, 2013, 「산동지역과 요동지역의 문화교류」, 『한국상고사학보』 79, 한국상고사학회.

배진영, 2003, 「연소왕의 정책과 ‘거연’의 성립」, 『중국사연구』 25, 중국사학회.

배현준, 2015, 「동주시기 연나라와 동대장자 유적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_____, 2017, 「춘추전국시기 연문화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고고

- 학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20, 「요서지역 전국 연문화의 전개와 그 배경-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9, 동북아역사재단.
-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요령 지역의 연나라 유물 공반 유적의 제 유형과 연문화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71, 한국상고사학회.
- 이광명, 2019, 「전국 시기 연의 요동 진출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재, 2020, 「고조선과 연(燕)의 전쟁 전후 고조선의 강역 변화-고조선이 상실한 2,000여 리의 실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동양학』 8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이종수, 2014, 「요하 평원지역 '연 유적'의 특성과 사용집단에 대한 재검토-연 유이민 집단 물질문화와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 44,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0,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체계와 사회-쌍방문화·신성자문화·강상문화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45, 송실사학회.
- 장인성, 1998, 「중국 고대 장새의 출현과 형태」, 『백제연구』 2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정세호, 1956, 「사기를 중심한 고조선의 위치에 관하여」, 『력사과학』 1956-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영록, 1977, 「입관전 명·선시대의 만주여직사」, 『백산학보』 22, 백산학회.
- 조원진, 2020,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한국고대학회.
- 홍승현, 2014,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甌燕, 1987, 「我國早期的長成」, 『北方文物』, 1987-2, 北方文物雜誌社.
- 馬雍, 1990, 「帛書《戰國縱橫家書》各章的年代和歷史背景」, 『西域史地文物叢考』, 文物出版社.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山東即墨故城調查」, 『華夏考古』 2003-1,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河南省文物考古學會.
- 呂軍, 2003, 「從考古學上談岫岩玉在中國玉文化起源中的地位與作用」, 『鞍山師範學院學報』 2003-5, 鞍山師範學院.
- 王佳怡, 2013, 「田齊軍制初探」,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王青, 2007, 「山東發現的幾把東北系青銅短劍及相關問題」, 『考古』 2007-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劉興林, 2009, 「莒城·莒墓·莒鼎-莒文化三事」, 『管子學刊』 2009-4, 山東理工大學齊文化研究院.
- 李文信, 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上)」, 『社會科學輯刊』 1979-1, 遼寧省社會科學院.
- 李樹林·李妍, 2013, 「秦開東拓與修築燕北長城時間新考」, 『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 2013-1, 通化師範學院.
- 趙鵬, 2016, 「遼寧建昌東大杖子陶禮器墓葬研究」, 『知識文庫』 23, 哈爾濱日報報業集團.
- 周海峰, 2011, 「燕文化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曾鳴, 1975, 「關於帛書《戰國策》中蘇秦書信若干年代問題的商榷」, 『文物』 1975-8, 文物出版社.
- 青城, 1995, 「帛書《戰國縱橫家書》前十四章結構時序考辨」, 『管子學刊』 1995-2, 山東理工大學齊文化研究院.
- 鄒寶庫·盧治萍·馬卉, 2017, 「遼寧遼陽市徐往子戰國墓」, 『考古』 2017-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后曉榮·陳曉飛, 2007, 「考古出土文物所見燕國地名考」,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6, 首都師範大學.
- 岡村秀典, 1993, 「中國先史時代玉器的生産と流通-前三千年紀の遼東半島を中心-」, 『東アジアにおける生産と流通の歴史社會學的研究』, 中國書店.
- 宮宅潔, 2013, 「秦の戰役史と遠征軍の構成-昭襄王期から秦王政まで」, 『中國古代軍事制度の綜合的研究(研究課題番號:20320109)平成20~24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研究成果報告書』,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石川岳彦·小林青樹, 2012, 「春秋戰國時期の燕國における初期鐵器と東方への擴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67, 國立歷史民俗博物館.
- 柿沼陽平, 2015, 「戰國時代における楚の都市と經濟」, 『東洋文化研究』 17,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 太田幸男, 2006, 「秦に並び君臨した齊」, 『中國古代史と歴史認識』, 名著出刊行會.

고조선·연 전쟁의 개전 시점과 주요 원인

이성재

조연 전쟁은 서기전 300년에서 서기전 281년 사이의 연소왕 재위 기간 내에 발발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일부 남한 학계에서는 고조선·연 전쟁이 제·연 전쟁이 발발한 서기전 284년 이후에 개시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연이 제·연 전쟁 발발 전까지 제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우려하여 군사적 역량의 노출을 자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 전쟁 전에 연이 공공연히 인접 세력과 전쟁을 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중기 당시 연의 병력 규모는 제의 20%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은 임치 점령 이후 제에서 축출될 때까지 다른 전쟁을 수행할 만한 여유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서기전 284년 이후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조선·연 전쟁은 제가 연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를 철수시킨 무렵인 서기전 290년대 초엽(서기전 299~298년)이나 말엽(서기전 292~290년)에 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선은 전쟁 직전 연과 대립적이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제와 친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의 처지에서 제 공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방에 위치한 고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은 고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였고 이것이 개전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고조선, 연, 연소왕, 진개, 전쟁, 제

ABSTRACT

A Study on the Timing and Main Cause of the Outbreak of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Lee Seongjae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broke out between 300 BC and 281 BC. Since the 2000s, some South Korean studies tend to see that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began within the reign of Yanzhaowang after 284 BC, when the War between Qi and Yan broke out. Yan's troops would not have exceeded 20% of Qi's. After starting the war with Qi(284 BC), Yan had little surplus troops to carry out other wars until it was expelled from Qi(279 BC). It is presumed that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broke out in the early or late 290s BC, when Qi withdrew the military from the border with Yan. Gojoseon had traditionally maintained a clo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Qi. Therefore, in order to defeat Qi, Yan absolutely needed to remove the military threat from Gojoseon located in the rear in advance. It can be said that this was the main cause of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Keywords: Gojoseon, Yan, Yanzhaowang, Qinkai, war, Qi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연·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김도영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 III. 삼연(三燕)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 IV. 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금, 은, 동과 같은 귀금속으로 제작한 금공품을 착용하고 이를 무덤에까지 매장하였다. 금공품은 재료인 귀금속을 쉽게 입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술도 함께 수반되어야 비로소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소유와 매장에는 정치적 의미가 깊게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삼국시대의 금공품은 중앙에서 제작된 후 지방으로 사여되고 이를 통해 지방을 간접 지배한 것으로 보여 위세품의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진다.¹

금공품 가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물론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에서도 제작된 것이 유기질제의 허리띠를 장식한 대장식구이다.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체마다 독창적인 양식을 창출한 대장식구는 여러 정치체의 교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물질자료로 평가된다.²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동아시아에 공통된 양식의 대장식구가 확산된 시기는 이른바 중원식대장식구가 제작된 서기 3~4세기대이다.³ 서진(西晉)과 동진(東晉)에서 제작된 중원식대장식구는 동점(東漸)하여 한반도와 일본열

* 투고: 2021년 7월 6일, 심사 완료: 2021년 8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5801).

1 李漢祥, 1995,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裝身具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3, 서울大學校國史學科; 李漢祥, 1997, 「裝飾大刀의 下賜에 반영된 5~6世紀 新羅의 地方支配」, 『軍事』 35, 國防部軍史編纂委員會;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2 이한상, 2011, 「허리띠 분배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 『동북아역사논총』 33, 동북아역사재단, 349~382쪽.

3 金跳咏, 2020, 「동아시아 중원식대장식구의 전개와 의의」, 『韓國考古學報』 第117輯, 韓國考古學會, 35~70쪽.



그림 1 이 글의 연구 대상 지역

도에도 전해지고 이를 계기로 신라, 백제, 왜(倭)에서 독자적인 대장식구 문화가 전개된다. 다만 중원에서 반도와 열도로 동진(東進)하는 전파 과정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도 많다. 중원의 대장식구 문화가 동아시아의 동단(東端)까지 확산되는 데 관문 역할을 담당한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 즉 삼연(三燕)과 고구려 대장식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삼연과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를 분석하여 그 전개 과정과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삼연과 고구려 고분에서 출된 대장식구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III장에서는 삼연 대장식구의 제작 연대와 특질을, 이어서 IV장에서는 고구려 대장식구의 제작 연대와 특질을 차례로 고찰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대상 지역은 <그림 1>과 같다.

II.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1. 연구사 검토

삼연과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연구사를 시대순으로 개관한다.

왕런시양(王仁湘)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송대에 걸쳐 제작된 중원의 대구(帶扣)를 I~V형식으로 나누고 형식별 변천과 존속 시기, 북래설(北來說), 대구(帶扣)의 실용 범위와 대구(帶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⁴ 그 가운데 일부 선비족과 고구려의 대장식구가 일부 언급된다.

이후 덴리쿤(田立坤)에 의해 모용선비와 삼연의 유적 보고가 잇따르면서 ‘삼연문화’⁵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삼연 물질문화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도된다. 덴리쿤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양진(兩晉), 삼연에서 출토된 대구(帶扣)를 A~C형으로 분류하고 상호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⁶ 이후 삼연과 고구려의 물질문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대장식구에 주목한다. 특히 가동식의 일자형 자금이 부착된 교구가 주로 삼연에 분포하는 것과 달리 가동식의 T자형 자금이 부착된 교구가 주로 고구려 지역에서 유행하므로 후자를 ‘고구려식대구’⁷라 명명하였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왕런시양과 덴리쿤에 의해 육조시대(六朝時代) 요녕성(遼寧省)과 길림성(吉林省)에 공통성이 강한 대장식구가 존재한 것이 밝혀진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⁸ 다만 교구 외에 과판과 수하식 등 나머지 구성품의 분

4 王仁湘, 1986, 「帶扣略論」, 『考古』 1986年第1期.

5 오진석, 2019, 「삼연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高句麗渤海研究』 第65輯, 高句麗渤海學會, 39~67쪽.

6 田立坤, 1996, 「論帶扣的形式及演變」, 『遼寧文物學刊』 1996年第1期.

7 田立坤, 1998, 「三燕文化與高句麗考古遺存之比較」, 『靑果集 吉林大學考古系建系10周年紀念論集』, 知識出版社, 337쪽.

8 藤井康隆, 2003, 「三燕における帶金具の新例をめぐって」, 『立命館大學考古學

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도 존재한다.

아즈마 우시오(東潮)는 고구려 문물의 변천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장식구를 I~V형식으로 나누고 연대를 비정하여 고구려 대장식구의 기본적인 변천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 삼연의 고고자료에도 주목하여 대장식구의 출토 사례와 계통, 변천 과정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⁹

이후 『삼연문물정수(三燕文物精粹)』¹⁰와 『집안고구려왕릉(集安高句麗王陵)』¹¹이 발간되면서 삼연과 고구려의 물질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 특히 『삼연문물정수(三燕文物精粹)』에는 당시까지 공개되지 않은 토기, 무기, 농기구, 장신구, 마구 등 중요 자료가 실려 삼연의 물질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새롭게 공개된 삼연의 대장식구에 대해서는 후지이 야스타케(藤井康隆)에 의해 재빨리 정리되었다. 후지이 야스타케는 특히 조금기술(彫金技術)에 주목하여 삼연의 대장식구를 1기에서 4기로 나누고 금동제마구와 함께 대장식구의 제작이 개시되는 4세기 중엽을 삼연의 일대 획기로 평가하였다.¹² 후지이 야스타케에 의해 삼연 대장식구의 연대와 변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마치다 아키라(町田章), 고이케 노부히코(小池坤彦), 지가 하사시(千賀久)에 의해 삼연 대장식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치다 아키라는 선비족이 사용한 대장식구를 시대별로 고찰하고 그 가운데 일부 대장식구에 대해 모용선비가 중국왕조에서 제작된 중원식대장식구¹³를 개량한 것이며 마구와

論集』Ⅲ-2,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刊行會, 952쪽.

9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1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12 藤井康隆, 2003, 앞의 글, 962쪽.

13 원문에서는 '西晋式A型帶金具'라고 부른다. 町田章, 2006, 「鮮卑の帶金具」,

함께 관제에 따른 복식구가 제도화한 결과로 평가하였다.¹⁴ 당시까지 출토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비 대장식구의 기원과 계통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삼연 대장식구의 의의를 지적한 것은 경칭할 만하다. 고이케 노부히코는 요녕성에서 출토된 삼연의 대장식구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그 특질을 정리하였다.¹⁵ 한편 지가 하사시는 요녕 지역에서 출토된 안교의 문양이 공반된 대장식구에서도 확인되므로 마구 제작 공인이 대장식구의 용문양을 참고하는 제작 체계를 상정함으로써 마구와 대장식구의 제작 문제에 주목하였다.¹⁶

한편 고구려 대장식구에 대한 연구도 아즈마 우시오의 선구적인 업적 이래 지속된다.

장슈에옌(張雪巖)은 고구려의 대장식구를 분류하고 연대, 도금, 문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¹⁷

이한상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기원을 고찰하면서 삼연과 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된 대장식구를 정리하였다. 고구려 대장식구에 관해서는 중원 식대장식구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Ⅰ류, Ⅰ류와 유사하나 심엽형수하식이 달린 Ⅱ류, 이 외의 Ⅲ류로 분류하였다.¹⁸

강현숙은 고구려 대장식구의 형식과 시공적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형식 분류와 연대, 전세(傳世), 소유자의 성격, 양진(兩晉)과의 교섭을 검토하여 고구려 대장식구를 둘러싼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¹⁹ 삼

『東アジア考古學論叢-日中共同研究論文集-』, 奈良文化財研究所, 54쪽.

14 町田章, 2006, 위의 글, 54쪽.

15 小池伸彦, 2006, 「遼寧省出土の三燕の帶金具について」, 『アジア考古學論叢-日中共同研究論文集-』, 奈良文化財研究所.

16 千賀久, 2007, 「中國遼寧地方の帶金具と馬具」, 『日中交流の考古學』, 同成社.

17 張雪巖, 2001, 「集眼市 發掘 高句麗 허리띠꾸미개(帶飾)研究」, 『高句麗研究』 第12集, 高句麗研究財團.

18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19 姜賢淑, 2010, 「帶金具 副葬 高句麗 古墳의 考古學的 含意」, 『韓國古代史研究』 59, 韓國古代史研究會.

연과 고구려의 문화 교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가운데 양 지역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기초적 분석도 시도된다.²⁰

2. 문제 제기

이상 연구사 검토를 통해 삼연과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출토 사례와 전반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선행 연구 덕분에 대장식구의 제작 연대와 그 전개 양상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양자(兩者)의 대장식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삼연과 고구려의 물질문화를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대장식구가 일부 언급되는 정도에 그쳐 대장식구 고유의 특질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장식구의 특질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공반된 금공품, 나아가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와 상호 비교하는 관점에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서 대장식구가 활발히 제작되고 유통된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성행한 대장식구 문화를 비교할 때 비로소 삼연, 고구려 대장식구의 특질도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견 조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현재, 삼연·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질을 밝히기 위한 선결 과제는 우선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충실히 집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또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집성한 자료를 형식학, 또는 제작기술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효하겠으나 후술하듯이 변천 과정을 뚜렷하게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장식구를 몇 가지 ‘유형’이나 ‘형식’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존속 시기를 추정하는 것으로 논지를 진행한다.

20 조운재,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三燕과 高句麗의 문화적 교류」, 『先史와 古代』 第43號, 한국고대학회, 95~136쪽.

Ⅲ. 삼연(三燕)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징

삼연은 337년 선비족인 모용황(慕容皝)이 전연(前燕) 정권을 수립한 이래 436년 북위에 의해 북연(北燕)이 멸망할 때까지 중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전연(前燕), 후연(後燕), 북연을 가리킨다.²¹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중원 일부와 요동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삼연의 유적은 대부분이 무덤이다. 대장식구는 주로 조양과 북표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10예²²가 보고되었다(표 1).

삼연의 고분 가운데는 금주 이외묘(錦州李廙墓),²³ 조양 원대자벽화묘,²⁴ 조양 봉차도위묘,²⁵ 조양 최효묘,²⁶ 북표 풍소불묘²⁷와 같이 기년명 자료가 출토된 무덤이 있다.²⁸ 다만 이 가운데 대장식구가 출토된 고분은 조양 원대자벽화묘와 봉차도위묘에 불과하여 대장식구의 제작 연대는 타종(他種)의 대장식구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
- 21 飛鳥資料館, 2009, 『北方騎馬民族のかがやき 三燕文化の考古新發見』, 29쪽.
 - 22 출토 맥락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銅帶扣와 鎏金卷云紋鏤孔銅牌로 內蒙古六家子の 금속제품 역시 형태로 보아 대장식구일 가능성이 크다(張柏忠, 1989, 「內蒙古科左中旗六家子鮮卑墓群」, 『考古』 1989年第5期). 다만 과A와 과B의 요소(金跳咏, 2020, 앞의 글)가 합쳐진 형태의 과는 아직 중원에서 확인된 바 없어 중원에서 제작된 후 이입되었는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공반된 마구가 삼연계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지에서도 금동제품의 자체적인 생산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23 辛發·魯寶·吳鵬, 1995, 「錦州前燕李廙墓清理簡報」, 『文物』 1995年第6期, 文物出版社.
 - 24 田立坤, 2002, 「袁台子壁畫墓的再認識」, 『文物』 2002年第9期, 文物出版社.
 - 25 田立坤, 1994, 「朝陽前燕奉車都尉墓」, 『文物』 1994年第11期, 文物出版社.
 - 26 陳大爲·李宇峰, 1982, 「遼寧朝陽後燕崔遙墓的發現」, 『考古』 1982年第3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27 遼寧省博物館, 2015, 『北燕馮素弗墓』, 文物出版社.
 - 28 강현숙, 2006,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중국 三燕 요소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韓國上古史學會, 123쪽.

〈표 1〉 삼연(三燕)의 대장식구

지역	고분	재질	문양	착장	마구	단계	유형
북표	라마동 II M275호묘	금동	용봉	-	×	삼연1단계	중원식
북표	라마동 II M101호묘	금동	용봉	○	○	삼연2단계	모방1
북표	라마동 II M266호묘	철지	-	×	○	삼연2단계	모방1
북표	라마동 II M196호묘	금동	초엽문	○	○	삼연2단계	모방2
북표	라마동촌묘	금동	초엽문	-	×	삼연2단계	모방1
북표	라마동서구촌묘	금동	초엽문	-	○	삼연2단계	모방2
조양	십이대향전창고88M1호묘	금동	용봉	○	○	삼연2단계	모방1
조양	봉차도위묘	금동	용봉	○	×	삼연2단계	모방1
조양	원대자벽화묘	금동	용	×	○	삼연2단계	모방1
조양	요이영자M9001호묘	금동	초엽문	○	○	삼연2단계	모방2

【범례】○: 있음 ×: 없음 -: 확인 불가 철지: 철지금장 모방1: 모방 제1유형 모방2: 모방 제2유형

1. 제작 연대

삼연 대장식구 가운데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 북표 라마동 II M275호묘 출토품(그림 2-1)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중원식대장식구라 불리는 이 종(種)의 대장식구는 교구, 대선금구, 과로 구성되었다. 전연부가 U자형, 후연부가 방형인 교구에는 1마리의 용과 봉황을, 대선금구에는 서로 마주 보는 2마리의 용을 표현하였다. 유사한 문양의 교구와 대선금구는 김해 대성동88호분 출토품 외에 출광미술관(出光美術館), 경도대학총합박물관(京都大學總合博物館), 국립역사민속박물관²⁹, 회진팔일(會津八一)기념박물관 소장품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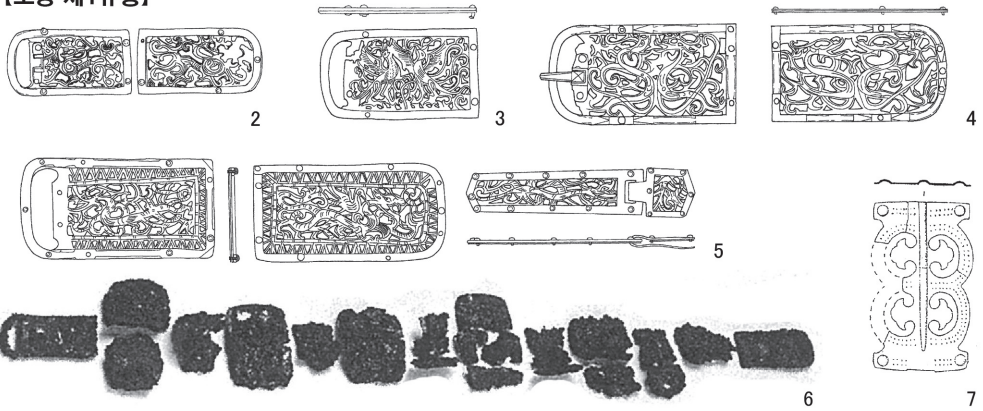
29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는 총 4식의 중원식대장식구가 소장되어 있다. 중원식 대장식구의 유물 번호는 『古墳關連資料』(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2, 國立歷史民俗博物館資料圖錄8)에 A-166, A-440, A-196, A-371로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립역사민속박물관²⁹은 A-196이다.

[중원식대장식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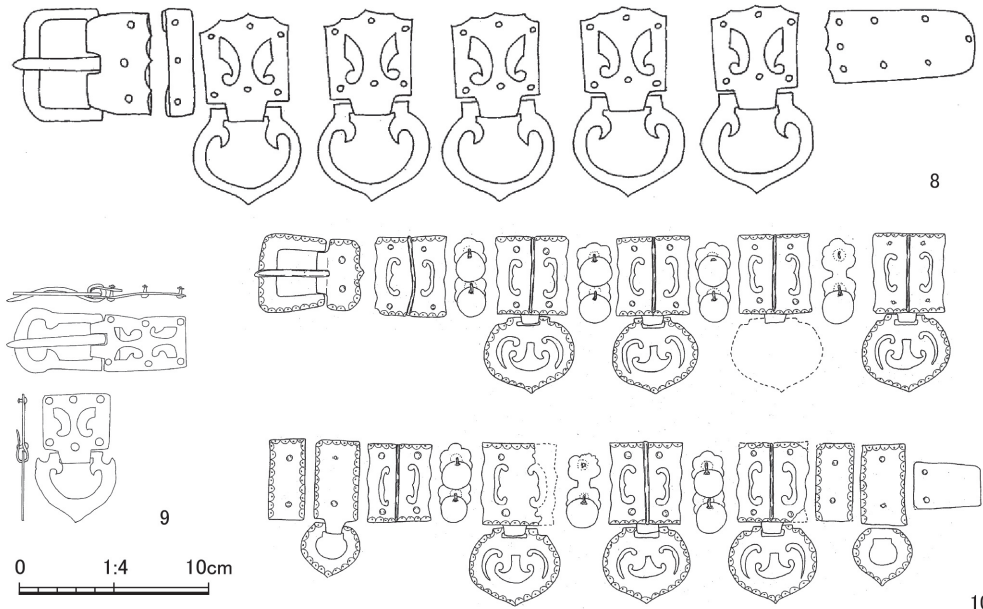
[모방 제1유형]



6

7

[모방 제2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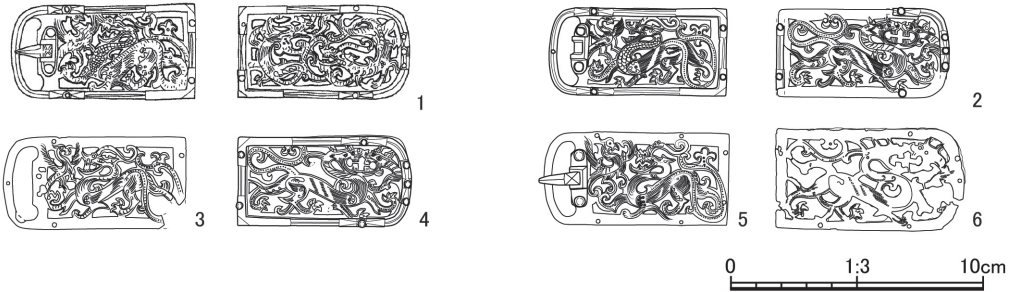
8

9

10

1. 북표 라마동 II M275호요 2. 북표 라마동 II M101호요 3. 조양 십이대향전창고 88M1호요 4. 조양 원대자벽화요 5. 조양 봉차도위요 6. 북표 라마동 II M266호요 7. 북표 라마동촌묘 8. 조양 요이영자 M9001호요 9. 북표 서구촌묘 10. 북표 라마동 II M196호요 (6, 7은 축적부동)

그림 2 삼연(모용선비)의 대장식구



1. 북표 라마동M275호묘 2. 출광미술관(出光美術館) 3. 경도대학총합박물관(京都大學總合博物館)
4. 김해 대성동88호분 5. 역박③ 6. 회진팔일기념박물관(會津八一記念博物館)

그림 3 북표 라마동 II M275호묘 출토품과 유사한 중원식대장식구 사례

(그림 3). 문양과 제작기술로 보아 후행할 것으로 보이는 광주대도산진묘(廣州大刀山晉墓)에서 동진(東晉) 대녕 2년[大(太)寧2年, 324]이 쓰인 기년전(紀年磚)이 출토되어 라마동 II M275 출토품은 4세기 전엽에 제작된 것으로 비정된다.³⁰

그렇다면 서진(西晉) 왕실(王室)에서 제작된 중원식대장식구가 모용선비의 고분에 매장된 셈이다. 모용부의 수장 모용외(慕容廆)가 이 지역에서 307년부터 선비대단우(鮮卑大單于)를 차칭하면서 서진의 유민들을 받아들여 세력을 강화하였으며 319년 서진의 동이교위(東夷校尉) 최비(崔毖)를 물리치면서 요동의 패권을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³¹ 모용황이 전연을 건국한 337년 이전에 서진 왕실과 모용선비가 직접 교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막호발(莫護跋)의 시대부터 모용외가 289년 본거지를 극성(棘城)으로 옮길 때까지의 기간을 선연기(先燕期)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³² 선비 문화는 이미 전연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확인되므로³³ 삼연에서 가장 이른 라마동 II M275호묘 출토품은 전연

30 金跳咏, 2020, 앞의 글, 50쪽.

31 桃崎祐輔, 2005, 「七支刀の金象嵌技術にみる中國尙方の影響」, 『文化財と技術』第4號, 工藝文化財研究所, 179쪽.

32 町田章, 2011, 「前燕高橋鞍の検討」, 『勝部明夫先生喜壽記念論文集』, 勝部明夫先生喜壽記念論文集刊行會, 480쪽.

이 건국되기 이전인 4세기 전엽에 서진에서 제작된 후 이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삼연1단계로 해둔다.

한편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대장식구도 확인된다. 형태로 보아 중원식대장식구를 모델로 모방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작 시기는 후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 대장식구를 삼연2단계로 비정해둔다. 삼연2단계의 대장식구는 형태와 문양을 기준으로 크게 2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을 ‘모방 제1유형’과 ‘모방 제2유형’으로 부르기로 하고 양자의 제작 연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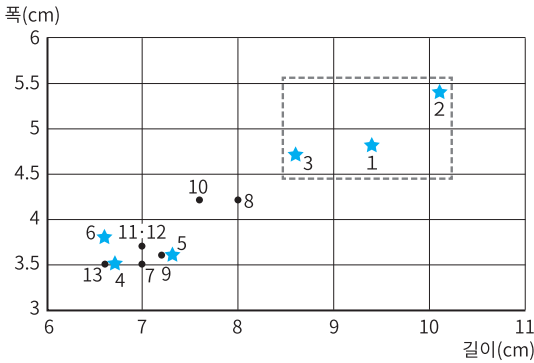
‘모방 제1유형’은 중원식대장식구와 유사하나 일부 문양과 크기, 재질이 바뀐 대장식구이다. 북포 라마동Ⅱ M101호묘, 라마동Ⅱ M266호묘, 라마동촌묘 출토품 이외에 조양 봉차도위묘, 원대자벽화묘, 십이대향전창고88M1호묘 출토품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철지금동장의 라마동Ⅱ M266호묘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금동제이다.

라마동Ⅱ M101호묘 출토품은 모방 제1호³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 크기와 형태가 중원식대장식구와 흡사하다(그림 2-2). 중원식대장식구가 삼연 지역으로 이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마동Ⅱ M266에서는 삼연에서 유일하게 철지금장제의 대장식구가 출토되었다(그림 2-6). 녹으로 덮여 있어 세부 문양은 알 수 없으나 교구, 대선금구의 크기가 중원식대장식구와 유사하며 여러 형식의 과를 갖춘 점도 중원식대장식구와 같다. 다만 철지금장제이라는 재질을 일찍부터 흉노, 동호가 사용한 점, 철지금장제의 중원식대장식구가 1식(式)도 출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장식구는 공반된 철지금장제의 안교와 함께 현지에서 세트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

33 田立坤, 2001, 「三燕文化墓葬의類型與分期」, 『漢唐之間文化藝術의互動與交融』, 文物出版社, 205~231쪽; 강현숙, 2006, 앞의 글, 109~146쪽; 조운재, 2015, 앞의 글, 95~136쪽.

34 町田章, 2006, 앞의 글, 58쪽.



지역	古墳名	長	幅
1 朝陽	袁台子壁畫墓	9.4	4.8
2 朝陽	奉車都尉墓	10.1	5.4
3 朝陽	十二臺磚廠88M1號墓	8.6	4.7
4 北票	喇嘛洞M101號墓	6.6	3.5
5 北票	喇嘛洞M275號墓	7.3	3.6
6 北票	喇嘛洞Ⅱ M266號墓	6.6	3.8
7 宜興	周處墓	7	3.5
8 廣州	大刀山墓	8	4.2
9 洛陽	西郊24號墓	7.2	3.6
10 湖北	熊家嶺晉墓	7.6	4.2
11 金海	大成洞88號墓	7	3.7
12 兵庫	行者塚古墳	7	3.7
13 奈良	新山古墳	6.7	3.5

그림 4 교구·대선금구의 크기 비교 (★: 조양·북표 출토 대장식구)

다.³⁵ 현지로 수입된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라면 삼연2단계 중에서도 이른 편에 속할 것이다. 이 외에 4개의 삼엽문을 대칭적으로 배열한 라마동촌묘 출토품도 중원식대장식구 과(鈔)³⁶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모방 제1유형’ 가운데 조양 봉차도위묘, 원대자벽화묘, 십이대향 전창고88M1호묘 출토품(그림 2-3~5)은 교구와 대선금구의 크기가 중원식대장식구보다 한층 크다(그림 4-1~3). 특히 폭의 변화는 대장식구를 부착한 허리띠 폭의 변화와 연동된 것으로 허리띠를 더욱 크고 굽게 내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2마리의 용 또는 봉황이 서로를 마주하는 문양 역시 양진에서 제작된 교구와 대선금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살펴본 ‘모방 제1유형’은 양진에서 수입된 중원식대장식구를 모티브로 모방 제작한 것이 공통점이다.

한편 ‘모방 제2유형’은 과판과 수하식에 초엽문을 표현한 대장식구로 라마동Ⅱ M196호묘, 라마동 서구촌묘, 요이영자 M9001호묘 출토품이 이 유형에 해

35 町田章, 2006, 위의 글, 59쪽.

36 김지현, 2012, 「古代 東亞細亞 出土 晉式帶金具의 成立과 展開」, 『韓國上古史學報』第75號, 韓國上古史學會, 231쪽.

당한다(그림 2-8~10). 금동제라는 점은 ‘모방 제1유형’과 동일하다. 교구의 자금은 모두 일자형의 가동식으로 ‘모방 제1유형’에 비해 자금의 길이가 길다.

그렇다면 ‘모방 제1유형’과 ‘모방 제2유형’의 제작 연대는 어떠할까? 후지이 야스타케는 ‘모방 제1유형’과 ‘모방 제2유형’을 제작 시기의 차로 이해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³⁷ 과판의 형태와 문양을 중시한다면 일견 타당해 보이나 스스로 지적하듯이 ‘모방 제2유형’에 속하는 라마동Ⅱ M196호모 대장식구의 각 구성품이 중원식대장식구의 구성품과 하나씩 대응하는 것³⁸을 고려하면 ‘모방 제2유형’의 제작 시기 역시 중원식대장식구에 근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뿐만 아니라 공반 유물과 묘제로 보면 ‘모방 제2유형’이 출토된 고분이 ‘모방 제1유형’이 출토된 고분보다 선행하는 사례도 있어 제작 연대를 비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지이 야스타케가 삼연2기로 비정한 십이대향 전창고88M1호묘, 원대자벽화묘는 덴리쿤의 삼연 중기묘제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강현숙의 삼연Ⅲ단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에 반해 후지이 야스타케가 삼연3기로 비정한 요이영자M9001호묘는 덴리쿤의 삼연 초기묘제이며 여기서는 강현숙의 삼연Ⅱ단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물론 강현숙의 토기 편년과 덴리쿤의 묘제 편년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증이 필요하나 적어도 후지이 야스타케가 상정한 대장식구의 선후관계가 공반된 토기와 묘제의 선후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방 제1유형’과 ‘모방 제2유형’의 제작 시기는 기년명자료, 공반유물을 통해 비정할 수밖에 없다.

우선 ‘모방 제1유형’의 상한연대와 관련하여 공반된 기년명 자료가 참고된다. 봉차도위묘에서는 ‘봉차도위(奉車都尉)’가 새겨진 은인(銀印)이 출토되어 337년에서 370년 사이의 연대폭을 가지며³⁹ 동진(東晉) 승평 3년(升平3年,

37 藤井康隆, 2003, 앞의 글, 951~966쪽.

38 藤井康隆, 2006, 「晋式帶金具補考」, 『古代』第119號, 早稻田大學考古學會, 167쪽.

359) 기록을 근거로 359년 전후로 특정하기도 한다.⁴⁰ 원대자벽화묘의 연대에 관해서는 목서명의 검토를 통해 335년, 354년, 366년을 후보로 들 수 있지만 벽화묘가 조양 근교에 있으므로 342년 천도 이후인 354년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366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참고된다.⁴¹ 이로 보아 ‘모방 제1유형’은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술한 라마동Ⅱ M101호묘, 라마동Ⅱ M266호묘 출토품과 같이 삼연1단계에 중원식대장식구가 이입된 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모방 제작되었다면 ‘모방 제1유형’의 상한 연대는 4세기 전엽까지도 소급될 수 있다.

‘모방 제2유형’이 출토된 고분에서는 기년명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반 유물과 고분의 연대관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다. 요이영자M9001호묘는 덴리쿤의 삼연 초기묘,⁴² 강현숙의 삼연Ⅱ 단계(324~341년), 손위의 제4기(3세기 중엽~4세기 초), 조운재의 삼연 제2기(3세기 중엽~4세기 초)로 비정된다. 이 외에 라마동 서구촌묘와 라마동Ⅱ M196호묘는 강현숙의 삼연Ⅲ 단계로 전연이 멸망하는 370년경 이전으로 비정된다. 또 3조꼬기의 재갈과 A류의 철제경판이 출토되어 라마동Ⅱ M196호묘를 4세기 중엽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주목된다.⁴³ 이로 보아 ‘모방 제2유형’이 늦어도 4세기 중엽 즈음에 존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⁴⁴

한편 삼연2단계의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기년명 자료가 출토된 고분 중 대장식구가 공반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후연의 유일한 기년묘인 최홍묘(崔通墓, 395년)에서는 동대구(銅帶鉤)가 1점 출토되었

39 강현숙, 2006, 앞의 글, 123쪽.

40 田立坤, 1994, 앞의 글, 20~32쪽.

41 田立坤, 2002, 앞의 글.

42 田立坤, 2001, 앞의 글.

43 諫早直人,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雄山閣.

44 한편 ‘모방 제2유형’ 가운데 라마동Ⅱ M196호묘 출토품을 4세기 중엽 이후, 요이영자M9001묘, 서구촌묘를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桃崎祐輔, 앞의 글, 2005.

으나 대장식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⁴⁵ 북연의 풍소불묘(415년)에서는 도금 동대구(鍍金銅帶鉤) 1점, 도금동대잡(鍍金銅帶卡) 4점, 동대구(銅帶扣) 4점, 도금동과환(鍍金銅鈔環) 6점, 도금동행협(鍍金銅杏叶) 1점, 동대구(銅帶具) 2점 등 일견 대장식구의 부속구로 보이는 금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동시기 한반도 남부에 유행하는 심엽형대장식구와 유사해 대장식구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마구의 가능성을 지적한다.⁴⁶ 착상하지 않았으며 과판도 없어 대장식구로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안양 호민둔154호묘 출토 마구 복원도는 풍소불묘 출토품이 마구에 사용된 띠에 대단 금구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⁴⁷ 동일한 형태의 금구는 조양 팔보촌M1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묘에서도 대장식구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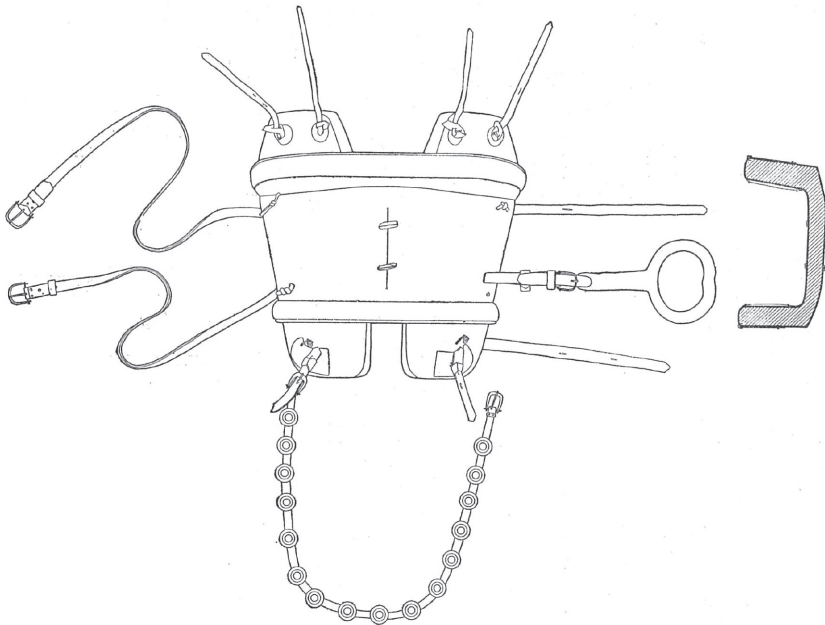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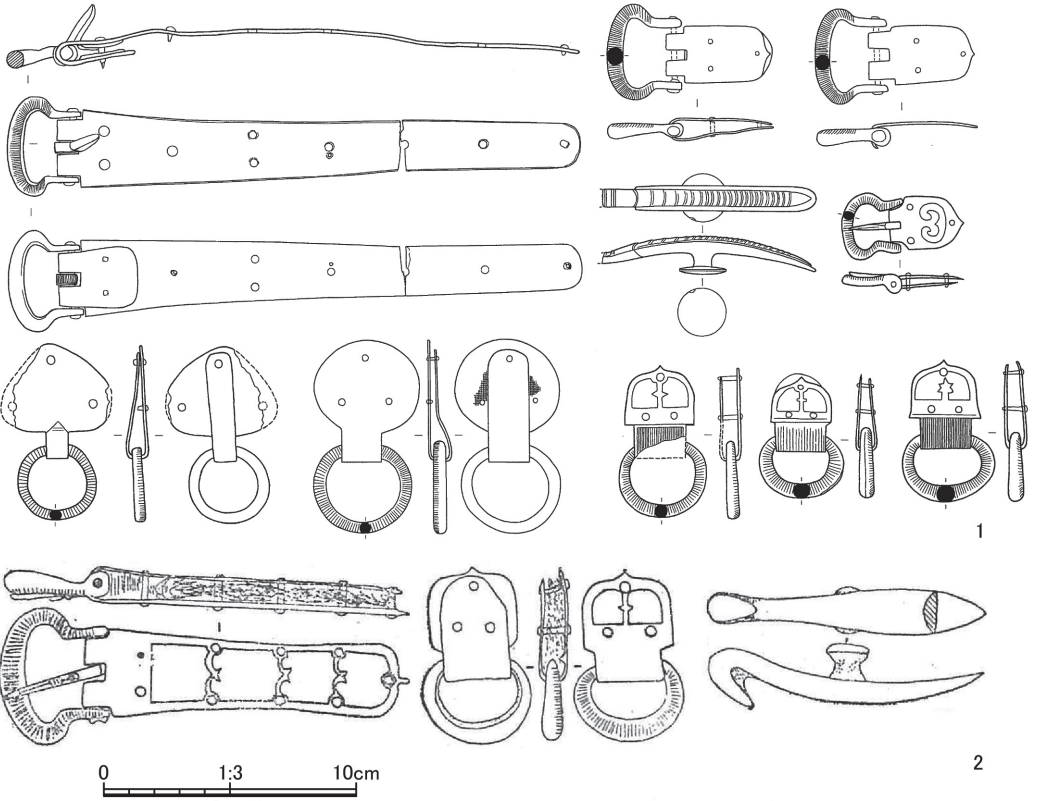
물론 후연·북연 시기의 모든 무덤이 발굴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여지도 충분하나 최홀묘(395년)와 풍소불묘(415년)를 중시한다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후연·북연에서 대장식구는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모방 제1유형’과 ‘모방 제2유형’이 혼재하는 삼연2단계의 존속 시기는 대체로 전연에 해당한다.

사실 삼연 대장식구의 제작 연대에 관해서는 당시 진(晉)과 삼연의 국제관계와 결부 지어 모모사키 유우스케(桃崎祐輔)가 이미 검토한 적이 있다. 이를 참고하면 모용황은 317년 6월 동진(東晉) 사마예(司馬睿)의 황제 즉위 권진(勸進)에 이름을 올리고 337년에 전연을 건국한다. 341년에 동진으로부터 연왕위(燕王位)를 수여받은 후 345년에는 동진의 연호(年號) 사용을 중지하지만 동진황제(東晉皇帝)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연왕(燕王)으로 신종(臣從)한다. 그러나 348년 모용황이 죽고 모용준(慕容儁)이 즉위하자 상황이 일변한다.

45 陳大爲·李宇峰, 1982, 앞의 글, 270~274쪽.

46 遼寧省博物館, 2015, 앞의 책, 59쪽.

4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技術室, 1983, 「安陽晉墓馬具復元」, 『考古』 1983年第6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 북표 풍소불묘 2. 조양 팔초촌M1호묘 대구(帶具) 3. 안양 효민동154호묘 마구(馬具) 복원도

그림 5 후연·북연의 대구와 마구

모용준은 352년 11월 중산(中山)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원새(元璽)라는 연호(年號)를 사용하고 백관(百官)을 설치함으로써 동진의 책봉체제에서 탈피한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 모모사키 유우스케는 동진전기(東晉前期)의 대장식구로 추정되는 라마동Ⅱ M275호묘 출토품의 상한연대를 317년으로, 하한연대를 345~352년으로 보았다.⁴⁸ 그리고 그보다 후행할 것으로 보이는 원대 자벽화묘, 십이대향전창고88M1호묘, 라마동Ⅱ M196호묘, 요이영자M9001호묘, 서구촌묘 등 선비화된 중원식대장식구를 352년 이후의 소산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선비식 대장식구의 상한을 전연이 동진의 책봉체제에서 자립한 352년, 즉 4세기 중엽으로 보고 하한을 북연이 북위 공격으로 고구려에 망명한 436년과 천왕포홍(天王馮弘)이 살해되어 멸망한 438년, 즉 5세기 전엽으로 비정한 것이다.⁴⁹ 문헌 기록을 중시한 모모사키 유우스케의 견해는 언뜻 보아 정합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스스로 밝혔듯이 라마동Ⅱ M101호묘 출토품을 동진 전기(前期)로 보는 연대관은 실은 공반된 안교를 5세기로 비정하는 후지이 야스타케의 중원식대장식구 연대관에 기초한다.⁵⁰ 표면에 남은 조금기술(彫金技術)의 가공 흔적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지이 야스타케의 중원식대장식구 연대관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⁵¹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라마동Ⅱ M275호묘 출토품이 광주대도산진묘(廣州大刀山晉墓) 출토품(324년)보다 문양과 제작기술로 보아 선행하므로 서진제(西晉製)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헌을 기준으로 설정한 352년 전후라는 획기는 좀 더 소급되어야 마땅하다.

48 桃崎祐輔, 2006, 「馬具からみた古墳時代會年代論-五胡十六國・朝鮮半島三國伽耶・日本列島の比較の視点から-」, 『日韓古墳時代の年代観』, 國立歴史民俗博物館・釜山大學校博物館.

49 桃崎祐輔, 2005, 앞의 글, 131~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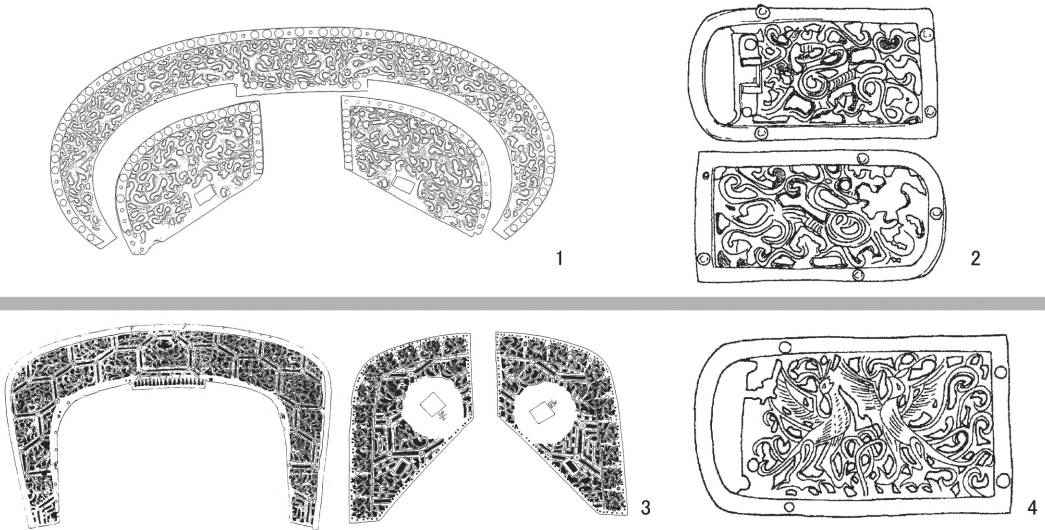
50 桃崎祐輔, 2005, 위의 글, 179쪽.

51 金跳咏, 2020, 앞의 글, 35~70쪽.

2. 전개와 특징

삼연1단계에는 서진에서 제작된 중원식대장식구를 모용선비가 수용한다. 삼연 2단계가 되면 이 중원식대장식구를 모티브로 전연에서 자체적으로 대장식구를 생산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원식대장식구를 그대로 모방하되 문양과 크기, 재질을 일부 바꾼 ‘모방 제1유형’과 초엽문(草葉文)을 기본 모티브로 하는 ‘모방 제2유형’이 그것이다.

문양에 주목하여 삼연2단계 대장식구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모방 제1유형’의 특징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공반된 장식마구와의 관계이다 (그림 6). 라마동M101호묘에서 출토된 금동제안교가 중원식대장식구를 본보기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자가 하사시의 지적이 타당하다면⁵² 재질과 문양이 유



1·2. 조양 라마동M101호묘 3·4. 조양 십이대향전창88M1호묘(1·3은 S=1/8, 2·4는 S=1/2)

그림 6 삼연 대장식구의 특징(모방 제1유형)

52 千賀久, 2007, 앞의 글, 383쪽.

사한 삼연 고분 출토 대장식구와 장식마구는 매우 가까운 환경(동일 공인 또는 동일 공방)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다 아키라는 ‘모방 제1유형’에 관해 한왕조(漢王朝)를 굴복시킨 자신감을 배경으로 모용선비가 창출한 것으로 보았으며 기마민족의 지보(至寶)라고도 할 수 있는 마구와 함께 중원의 관제(官制)에 따라 제도화한 복식구(服飾具)⁵³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대장식구와 마구에 대하여 ‘북방민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진(魏晉)의 제실(帝室)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관직제도에서 유래된 일종의 훈장이며 한인(漢人)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나타냈던 정치색을 농후하게 띤 위신재’⁵⁴로 보았다.

이처럼 ‘모방 제1유형’, 그리고 이와 공반된 장식마구는 모용선비가 전연 건국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제작한 초기의 금공품으로 중국의 관위제도(官位制度)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⁵⁵ ‘전연 왕권이 왕을 정점으로 안정된 신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왕조의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복식과 세트로 정비된 매우 정치성이 높은 기물’이라는 삼연의 장식마구에 대한 평가⁵⁶는 삼연2단계의 ‘모방 제1유형’의 대장식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과판과 대선금구의 크기를 통해서도 방증된다. 언급한 것처럼 ‘모방 제1유형’ 중 일부의 과판과 대선금구는 그 길이와 폭이 중원식대장식구보다 크다. 이는 단순히 부품의 크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매단 유기질제 허리띠의 폭도 함께 굵어진 것을 뜻한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착용자 허리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시각적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선금구와 교구에 중원식대장식구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독자적인 문양을 표현한 것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 이면서도 전연의 독자성을 발현하기 위한 복식 세트로서 마구와 대장식구를 제

53 町田章, 2006, 앞의 글, 60쪽.

54 町田章, 2011, 앞의 글, 480쪽.

55 諫早直人, 2012, 앞의 책, 295쪽.

56 諫早直人, 2012, 위의 책, 296쪽.

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처럼 ‘모방 제1유형’을 통해 중원 지역의 복식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의도⁵⁷는 동일한 중원식대장식구가 이입되었음에도 이를 변용하거나 새롭게 가공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백제, 신라, 왜(倭)와 확연히 다르다.

한편 초엽문을 모티브로 한 ‘모방 제2유형’의 특질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이 금제보요부금구(金製步搖付金具)이다. 모용선비가 보요를 사용한 것은 문헌 기록⁵⁸에서도 확인된다. 금제보요(金製步搖)는 모용선비의 중요한 복식품에 사용되었는데 공표된 것만 16점에 달한다. 특히 요서 지역에서 출토된 금제보요관은 완신(萬欣)의 집성에 의하면 총 14점으로 그 가운데 12점은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 나머지 2점은 북연에 가까운 시기라고 한다.⁵⁹ 이에 따르면 모용선비의 표식(標識)이라 할 수 있는 보요는 전연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대장식구가 제작되지 않은 북연까지, 여러 금동제품의 표면에 부착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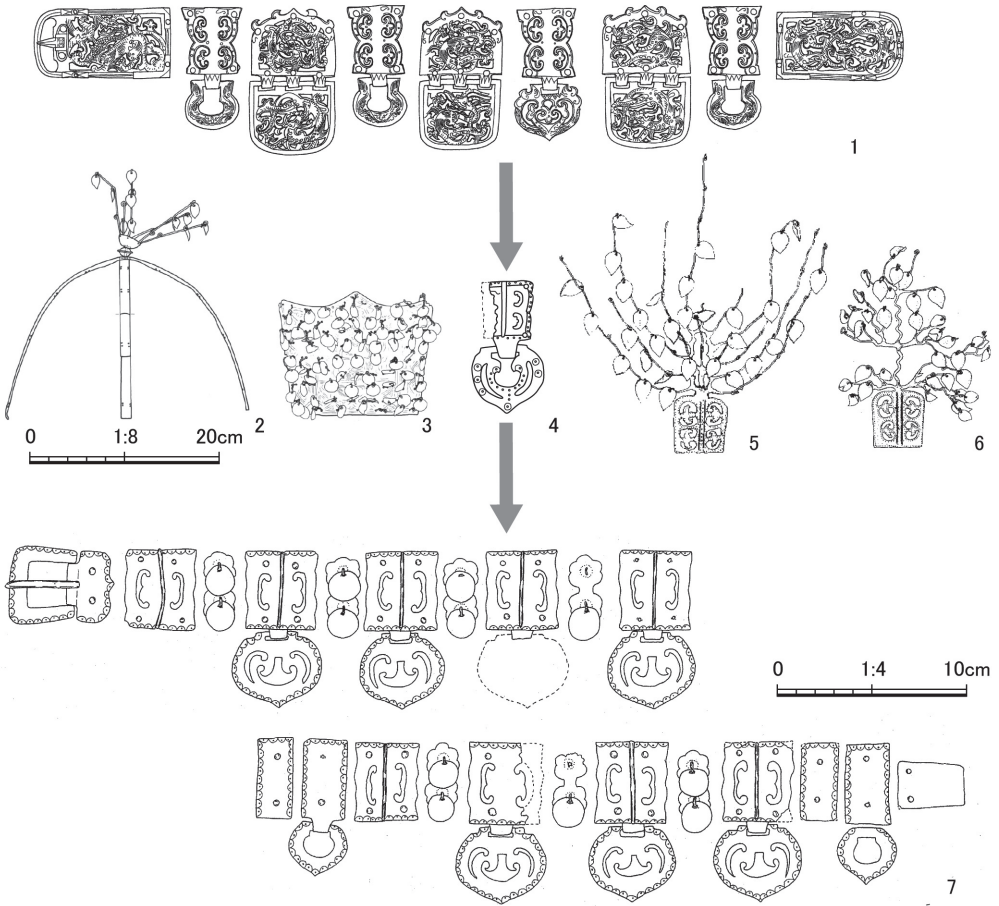
그 가운데 요녕성방신촌(遼寧省防身村)M2호(號)대소2점(大小2点), 침초구(晷草溝)M1, 침초구M2(그림 7-5~6), 십이태(十二台)M8713에서 출토된 금제보요관에는 삼엽문이 투조되었는데 그 배치와 문양이 대장식구의 과판과 흡사하여 주목된다. 금제보요관의 제작 연대를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비정하는 완신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금제보요관의 문양이 ‘모방 제2유형’ 대장식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북표 라마동 II M196호분 출토 대장식구가 주목된다. 과판의 형태로 보아 라마동 II M275 → 환인 연강향19호묘 → 라마동 II M196 순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림 7) 가장 퇴화한 라마동 II M196 과판에 보요가 부

57 千賀久, 2007, 앞의 글, 378쪽.

58 『晉書』108, 載記 8, 慕容, 「曾祖莫護跋 魏初率其諸部入居遼西 從宣帝伐公孫氏有功 拜率義王 始建國於棘城之北 時燕代多冠步搖冠 莫護跋見而好之 乃斂髮襲冠 諸部因呼之爲步搖 其後音訛 遂爲慕容焉」.

59 萬欣, 2003, 「鮮卑墓葬, 三燕史迹與金步搖飾的發現與研究」, 『遼寧考古論集』, 274쪽.



1. 북표라마동 II M275 2·3. 북표 풍소불모 4. 환인 연강향9호묘 5. 요녕침초구(遼寧甜草溝) M1 6. 요녕침초구 M2 7. 북표라마동 II M196

그림 7 삼연 대장식구의 특질(모방 제2유형)

착되었기 때문이다. ‘모방 제2유형’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기능이 없는 보요를 굳이 대장식구에도 매단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장식구에도 표현하고자 하는 모용선비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⁶⁰

이상과 같이 ‘모방 제1유형’과 ‘모방 제2유형’은 모용선비가 중원식대장식구

를 모티브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복식 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출된 기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질도 대부분 금동제이며 착장한 채 매납된 사례도 많아 대장식구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사했을 것이다. 다만 ‘모방 제1유형’이 새로이 건국된 전연 왕권의 의도 아래 장식마구와 함께 제작된 것이라면 ‘모방 제2유형’은 모용선비 고유의 전통적 문양과 모티브가 강하게 반영되어 현지에서 새롭게 창출된 대장식구로 평가할 수 있다.

IV. 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고구려의 대장식구는 집안을 중심으로 본계, 환인, 평양 등에 분포한다. 현재까지 총 26기의 고분에서 32식의 대장식구가 보고되었다(표 2). 다만 대장식구의 구성품이 완벽하게 출토된 사례가 없고 착장 여부도 대부분 알 수 없어 그 전개 과정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앞서 살펴본 삼연과 빈번하게 이루어진 접촉과 대립, 교류로 인해 고구려 대장식구에서도 ‘삼연 문화’⁶¹의 영향이 관찰되거나 고구려 대장식구만의 특질도 조금 간취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보고

60 이처럼 前燕에서 새로이 창출된 ‘모방 제2유형’이 東進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주목된다. 울산 하삼정115호 석곽묘에서는 금동제의 대장식구가 1식 출토되었다. 방형의 과관 중앙에 세로로 금속대를 부착한 점, 과관의 네 모퉁이에 못을 박아 띠와 연결한 점, 십자문 4개를 대칭적으로 표현한 점 등 三燕 대장식구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김도영, 2018, 「신라 대장식구의 전개와 의미」, 『韓國考古學報』 第107輯, 韓國考古學會; 土屋隆史, 2020, 「蔚山下三亭ナ地區115 號墓出土の晋式帶金具とその意義」, 『柳本照男さん古希紀年論集-忘年之交の考古學-』, 柳本照男さん古希紀年論集刊行會). 공반된 신라토기, 5세기 전~중엽의 신라계 성시구, 4세기 말~5세기 초의 왜계 장방관형철단갑으로 보아 피장자는 국제 교섭에 종사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三燕계대장식구(藤井康隆, 앞의 글, 2003), 대가야계 이식, 한반도계 묘제가 동시에 확인된 兵庫縣宮山古墳 피장자의 성격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61 조운재, 2015, 앞의 글, 98쪽.

〈표 2〉 고구려 고분 출토 대장식구

지역	고분	재질	형식	지역	고분	재질	형식
집안	산성하M152	금동	I 형식	집안	장천4호분	금동	Ⅲ형식
집안	산성하M159	금동	I 형식	집안	산성하M873	금동	Ⅲ형식
집안	우산하M3560	금동	I 형식	자성	서해리2고분군제1호분	-	Ⅲ형식
집안	산성하M332	금동	I 형식	집안	산성하M330	금동	IV형식
평양	고산동9호분	금동	Ⅱ형식	환인	연강향9호분	금동	IV형식
평양	덕화리3호분	은	Ⅱ형식	본계	소시진묘	-	IV형식
집안	산성하M725	금동	Ⅱ형식	집안	산성하M725	은	IV형식
집안	우산하M3305	은	Ⅱ형식	평양	호남리 금사총	금동	IV형식
집안	태왕릉	금동	Ⅱ형식	집안	우산하M1080	금동	IV형식
집안	칠성산96호분	금동	Ⅱ형식	집안	산성하M151	은	IV형식
집안	산성하M332	동	Ⅱ형식	집안	우산하M3162	금동	IV형식
집안	칠성산96호분	금동	Ⅲ형식	집안	산성하M3296	철	IV형식
집안	우산하M3560	금동	Ⅲ형식	집안	산성하M3296	금동	IV형식
집안	우산하M3142	금동	Ⅲ형식	집안	우산하M3105	금동	IV형식
평양	고산동10호분	금동	Ⅲ형식	평양	토포리대총	-	IV형식
평양	호남리 사신총	금동	Ⅲ형식	평양	고산동9호분	금동	IV형식

된 대장식구를 집성하여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각 형식의 존속 시기와 특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형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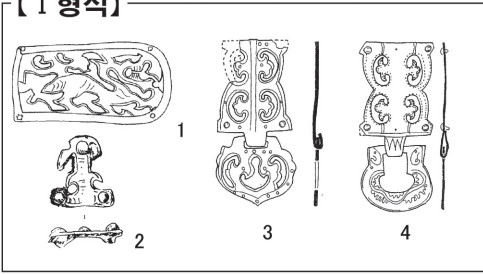
형식 분류에 관해서는 아즈마 우시오, 강현숙, 장슈에옌, 이한상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아즈마 우시오는 고구려 대장식구를 I~V형식으로,⁶² 강현숙은 I~IV형식으로,⁶³ 이한상은 I~Ⅲ류로,⁶⁴ 장슈에옌은 대장식구의 구성품을 더욱 세

62 東潮, 1997, 앞의 책, 403~4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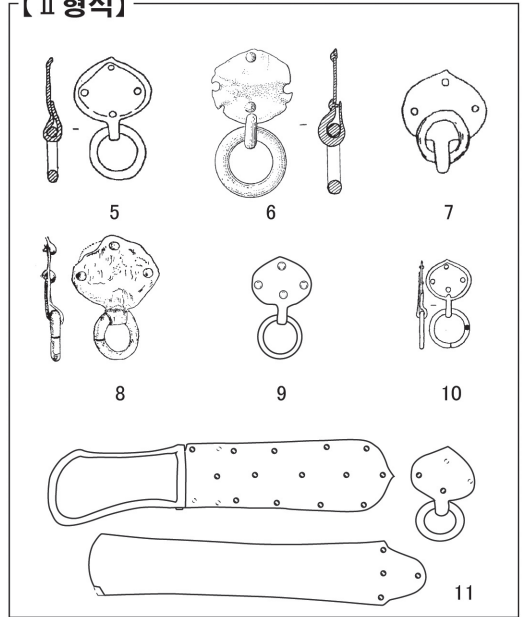
63 강현숙, 2010, 앞의 글, 110~113쪽.

64 이한상, 2004, 앞의 책, 208~2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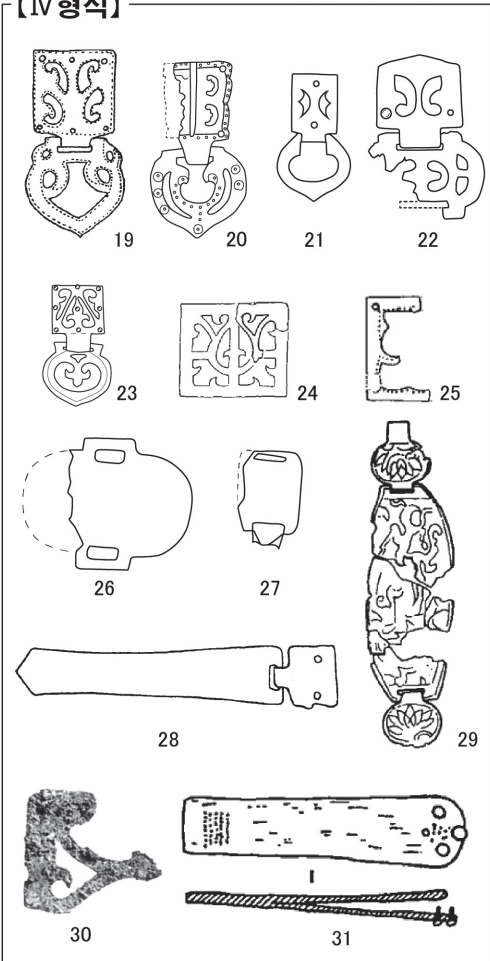
【 I 형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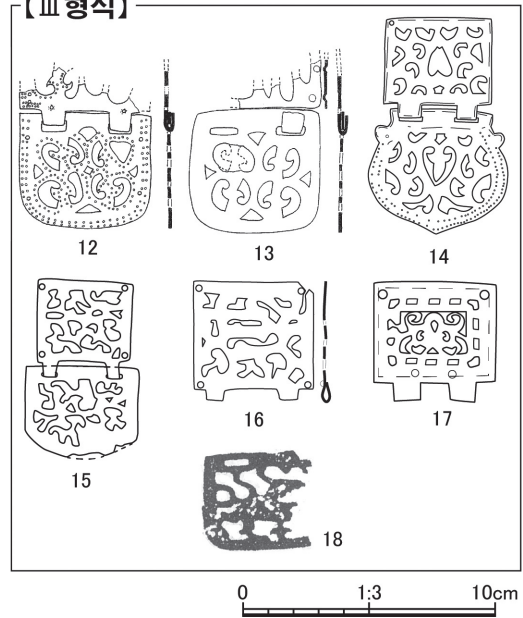
【 II 형식 】



【 IV 형식 】



【 III 형식 】



1. 집안 산성하M159 2·8. 집안 산성하M332 3·12. 집안 우산하M3560 4. 집안 산성하M152 5. 집안 우산하M3305 6. 집안 태왕릉 7·30. 평양 고산동9호묘 9·23. 집안 우산하M725 10·14. 집안 칠성산96호분 11. 평양 덕화리3호묘 13. 집안 우산하M3142 15. 평양 고산동10호묘 16. 집안 산성하M873 17. 평양 호남리사신총 18. 자성 서해리2고분군제1호분 19. 집안 산성하M330 20. 환인 연강항19호묘 21. 집안 우산하M151 22. 집안 우산하M3162 24. 평양 토포리대총 25. 평양 호남리금사총 26·31. 집안 우산M3296 27. 집안 우산하M3105 28. 본계 소시진묘 29. 집안 우산하M1080 (7, 16, 17, 24, 25, 30, 31은 축척부동)

그림 8 고구려 고분 출토 대장식구

분하였다.⁶⁵ 이 가운데 과판과 수하식을 조합 관계를 기준으로 한 강현숙의 분류안이 일목요연하고 간결하다. 다만 집성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우산하 M3560 출토품을 모두 하나의 형식으로 분류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강현숙의 분류안을 따르되 집성되지 않은 출토품⁶⁶까지 모두 포함하여 대장식구를 다시 분류하였다. 각 형식은 아래와 같다(그림 8).

I 형식: 중원식대장식구이다.

II 형식: 역심엽형대장식구로 역심엽형과판에 둥근 고리를 연결하였다.⁶⁷

III 형식: (장)방형 과판에 말각방형 또는 심엽형의 수하식을 2개의 고리로 연결하였다. 과판과 수하식에는 용문(?) 또는 초엽문을 투조하였다.

IV 형식: 초엽문이 있는 종장형 또는 방형 과판과 심엽형의 수하식을 1개의 고리로 연결하였다. 요패와 대선금구 역시 이 형식에 해당한다.

2. 존속 시기

1) I형식

집안 산성하M159에서는 중원식대장식구 3단계⁶⁸의 대선금구가 출토되었다. 삼연에서 유입되었다는 견해⁶⁹도 있으나 서진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⁷⁰

65 鑿金帶扣(7式), 銅·鐵帶扣(6式), 帶鈎(7式), 鉞尾(7式)으로 분류하였다.

66 집안 우산하M3560, 前屯7號墳에서 출토된 반원형금구는 대장식구로 확인할 수 없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7 II 형식을 모두 대장식구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형태는 백제, 신라의 대장식구와 같으나 고구려 고분에서는 과판 1점만 보고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집안 마선구1호분에서는 성시구의 부속품으로, 평성 지경동고분에서는 마구의 부속품으로 역심엽형금구가 사용되었다. 다만 평양 덕화리3호분 사례처럼 대장식구의 부속품으로 역심엽형금구가 사용된 사례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역심엽형대장식구를 허리띠를 장식하는 대장식구로 간주하되 향후 자료가 증가한다면 재검토하고자 한다.

68 金跳咏, 2020, 앞의 글, 35~70쪽.

69 藤井康隆, 2003, 앞의 글, 951~966쪽.

집안 산성하M332에서는 중원식대장식구 과(銜)E가 출토되었다. 유사한 부품이 광주대도산진묘(廣州大刀山晉墓, 324년), 무한시한양현웅가영진묘(武漢市漢陽縣熊家嶺晉墓)에서 확인된다.⁷¹

집안 우산하M3560에서 중원식대장식구 과B가 1점 출토되었다. ‘동진 것과 닮았으나 세부 상황이 다르며 수식이 현저히 퇴화되어 삼연에서 모방되었을 가능성(可能性)’을 지적하고 355~370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좁히는 견해⁷²도 있으나 과B는 중원식대장식구의 출현부터 소멸까지 지속되므로 연대를 비정하는 결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집안 산성하M152호분에서는 중원식대장식구 과C가 1점 출토되었다. 과판의 삼엽문, 수하식이 양진(兩晉)의 것과 같아 이미 지적된 것처럼⁷³ 중원에서 제작된 것이 고구려로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고구려고분에서 출토된 I 형식(중원식대장식구)은 종래의 연대관을 고려한다면 4세기 전엽~중엽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I 형식이 부장된 무덤의 축조연대는 이와 같거나 이보다 약간 후행한다.

2) II형식

II 형식(역십엽형대장식구)은 자체적인 변화 과정이 인지되지 않아 고분의 축조연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상한 연대와 관련해서 I 형식(중원식대장식구)과 II 형식이 공반된 집안 산성하M332에 주목할 수 있다. I 형식의 제작 연대를 중시한다면 II 형식 역시 4세기 전엽에는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0 姜賢淑, 2010, 앞의 글, 95~128쪽.

71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72 桃崎祐輔, 2009, 「고구려 왕릉 출토 기와·부장품으로 본 편년과 연대」,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99~270쪽.

73 千賀久, 1984, 「日本出土帶金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第6, 吉川弘文館; 姜賢淑, 2010, 앞의 글; 김지현, 2012, 앞의 글.

Ⅲ형식과 Ⅱ형식이 공반된 집안 칠성산96호분은 후술하듯이 5세기 전엽으로 비정된다.

집안 태왕릉에서도 Ⅱ형식이 1점 출토되었다. 태왕릉의 피장자는 고국양왕(391년 沒), 광개토대왕(413년 沒), 장수왕(491년 沒)으로 비정된다. 피장자가 누구든 늦어도 5세기대에 고구려에서 Ⅱ형식이 제작된 것은 변함없다.

평양 고산동9호묘에서 Ⅱ형식이 1점 출토되었다. 무덤의 구조, 벽화의 주제로 보아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⁷⁴

평양 덕화리3호분에서 역십엽형과판과 함께 대선금구, 교구가 출토되어 원래 1식(式)의 대장식구가 부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대선금구와 교구는 신라에서 성행하는데 신라제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고분의 연대에 관해서는 인근에 있는 덕화리1, 2호분의 축조 시기를 5세기 말로 보는 견해⁷⁵가 참고된다.

집안 산성하M725에서 Ⅱ형식의 대장식구가 1점 출토되었다. 후술하듯이 공반된 Ⅳ형식으로 보아 그 연대는 5세기 말~6세기 초로 비정된다.

이상 Ⅱ형식이 출토된 고분의 연대관을 고려한다면 그 존속 시기는 대략 4세기 전엽부터 6세기 전엽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

3) Ⅲ형식

Ⅲ형식 가운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장식구로 집안 우산하M3560, 칠성산96호분, 평양 호남리 사신총⁷⁶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집안 우산하M3560에서는 앞서 4세기 전엽~중엽으로 비정한 Ⅰ형식(중원식대장식구)과 함께 Ⅲ형식이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Ⅲ형식 역시 늦어도 4세기 전엽에는 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4 전호태, 2011, 「고구려 평양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蔚山史學』 제15집, 울산대학교 사학회, 1~175쪽.

75 전호태, 2011, 위의 글, 1~175쪽.

76 東潮, 1997, 앞의 책, 427쪽.

집안 칠성산96호분 출토 대장식구는 과관에 불규칙적으로 표현된 초엽문, 수하식의 외연으로 보아 경주 황오동4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적석목곽묘 가운데 고식으로 분류되는 황오동4호분의 연대에 관해서는 대부분 5세기 전엽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칠성산96호분의 연대가 4세기 중엽일 가능성이 크되 그 상한이 4세기 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 보고서의 견해⁷⁷를 포함하여 마구를 검토하여 고분의 연대를 4세기 후엽,⁷⁸ 4세기 말~5세기 초,⁷⁹ 5세기 전엽⁸⁰으로 비정하는 견해와도 정합적이다. 5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황남대총 남분의 대장식구를 고려한다면 5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신도가 그려진 평양 호남리 사신총은 규모와 입지로 보아 고구려왕릉으로 비정된다. 피장자는 안원왕(545년 沒)⁸¹ 또는 양원왕(599년 沒)⁸²으로 비정된다.

한편 아즈마 우시오는 집안 산성하M873, 평양 고산동10호분을 후기 I 기(5세기 중엽)로, 양원왕릉(545~599)으로 비정한 평양 호남리 사신총과 호남리 금사총을 후기 IV기(6세기 후엽)로 비정하였다.

이상 III형식이 출토된 고분의 연대관을 고려한다면 그 존속 시기는 대략 5세기 전엽부터 6세기 후엽 이후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IV형식

IV형식 가운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대장식구로 환인 연강향19호묘, 집안 산

77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의 清理」, 『考古』 1979年第1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78 李熙濬,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 第17號, 嶺南考古學會, 33~67쪽.

79 諫早直人, 2012, 앞의 책.

80 東潮, 1997, 앞의 책; 桃崎祐輔, 2006, 앞의 글.

81 기경량, 2017,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88, 한국고대사학회.

82 東潮, 1997, 앞의 책.

성하M725, 평양 토포리대총⁸³ 출토품을 들 수 있다.

환인 연강향19호묘에서는 금동제의 과가 1점 출토되었다. 과판에는 삼엽문 4개를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심엽형 수하식에는 초엽문을 표현하였다. 금동제인 점, 수하식과 과판 주위를 조각끝로 시문한 점, 과판(鈔板)의 중앙부에 금구를 세로로 부착한 점 등 앞서 ‘모방 제2유형’으로 분류한 북표 라마동ⅡM196 출토품과 흡사하다.⁸⁴ 북표 라마동ⅡM196의 연대를 고려하면 연강향19호묘는 4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비정할 수 있다.

집안 산성하M725에서는 은제의 초엽문대장식구가 1점 출토되었다. 유사한 문양과 재질의 대장식구는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며 특히 경주 서봉총 출토품과 흡사하다. 서봉총에서는 IV기(期)의 신라 대장식구가 출토되어 5세기 말~6세기 초로 비정된다.⁸⁵

평양 토포리대총에서 출토된 파편은 복원도로 보아 초엽문을 모티브로 한 대장식구일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문양의 대장식구는 경주 천마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마총에서는 V기의 신라 대장식구가 출토되어 6세기 전엽으로 비정된다.⁸⁶ 이는 입지와 규모로 보아 왕릉일 가능성이 큰 토포리대총의 피장자를 문자명왕(519년 沒),⁸⁷ 안장왕(531년 沒)⁸⁸ 등 6세기 전반의 왕으로 추정하는 견해와도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83 東潮, 1997, 위의 책, 427쪽.

84 고구려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東潮, 1997, 위의 책, 404쪽; 姜賢淑, 2010, 앞의 글) 라마동ⅡM196와 유사성을 고려하면 연강향19호묘 출토품은 중원식대장식구를 모티브로 三燕에서 제작된 후 高句麗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藤井康隆, 2003, 앞의 글; 조운재, 2015, 앞의 글).

85 김도영, 2018, 앞의 글, 72~123쪽.

86 김도영, 2018, 위의 글, 72~123쪽.

87 東潮, 1993, 「朝鮮三國時時代における横穴式石室墳の出現と展開」,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47集, 42~56쪽.

88 趙俊杰, 2009, 「대동강유역 고구려봉토석실묘의 등급과 계층」, 『高句麗渤海研究』35輯, 고구려발해학회, 153~181쪽; 기경량, 2017, 앞의 글, 5~45쪽.

이상 IV형식이 출토된 고분의 연대관을 고려한다면 그 존속 시기는 대략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삼연을 포함하여 고구려 대장식구의 존속 시기를 정리하면 <그림 9>와 같다.

3. 전개와 특징

고구려의 대장식구는 구성품이 완전한 세트로 출토된 사례가 없어 단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각 형식의 출현과 소멸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1) 고구려1단계

고구려에서 대장식구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로 4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I 형식, II 형식, III 형식이 출현한다.

중원식대장식구인 I 형식(집안 산성하M159, 산성하M152)에 대해서는 중국 제품을 고구려에서 모방하였다는 견해⁸⁹도 있으나 형태로 보아 양진에서 제작된 후 고구려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고구려의 전통 묘제인 적석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지배층은 중원식대장식구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자 했을 것이다. 수입 경로는 단언할 수 없으나 앞서 살펴본 삼연을 경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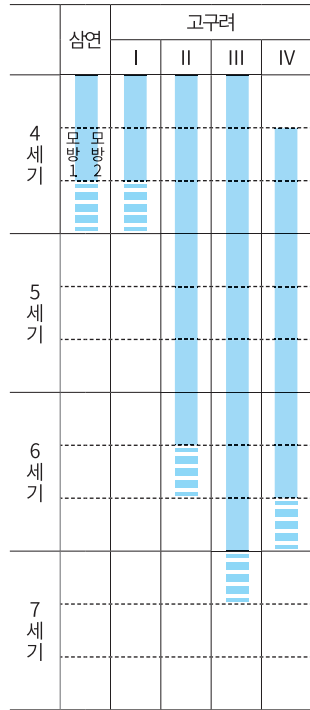


그림 9 삼연 및 고구려 대장식구의 존속기간

89 町田章, 1987, 「匈奴式帶金具の變遷」, 『東アジアの裝飾墓』, 同朋舎出版, 89쪽.

Ⅱ형식은 아직 중원과 삼연에서 보고된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한다면 역삼엽형과판에 둥근 고리를 연결한 Ⅱ형식은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5세기 이후 한반도 남부지방에 등장하는 역삼엽형대장식구의 원류는 현재까지 자료로 보아 고구려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평면 (장)방형의 과판에 동물(용)문을 투조하고 수하식을 2개의 고리로 연결한 Ⅲ형식 역시 현재까지 고구려에 집중된다. 과판, 수하식의 문양과 결구 방식으로 보아 Ⅱ형식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 창출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⁹⁰

예를 들어 우산하M3560의 초엽문수하식의 외형은 기본적으로 중원식대장식구 과A와 유사하다. 다만 수하식의 외연에 금속테를 두르지 않았으며 중원식대장식구에는 보이지 않는 점열문이 시문되어 그 차이도 분명하다. 한편 투조한 엽문(葉文)이 삼연의 금제관장식에서 확인되므로 삼연제(三燕製)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고국원왕이 삼연에게 굴복한 355년 이후 하사, 진진에게 삼연이 멸망하는 370년을 하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⁹¹ 다만 아직 삼연에서 동일한 결구 방법과 문양의 대장식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작기술과 문양이 흡사한 대장식구가 우산하M3142에서 출토된 사실을 중시한다면 우산하M3560을 비롯하여 유사한 문양과 결구 방식의 Ⅲ형식은 고구려의 독창적인 대장식구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평양 호남리 금사총, 호남리 사신총 출토품으로 보아 남천(南遷) 이후에도 고구려의 지배층은 다양한 문양을 모티브로 한 Ⅲ형식의 대장식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실상은 알기 어렵다.

한편 Ⅰ·Ⅱ·Ⅲ형식의 대장식구는 이른 시기 신라의 무덤에서도 확인된다. 경주 쪽샘L17호묘에서 Ⅰ형식이, 경주 황오동4호분에서 칠성산96호분과 유사한 Ⅱ·Ⅲ형식의 대장식구가 공반되었다. 이른 시기의 경주 출토 대장식구의 제

90 姜賢淑, 2010,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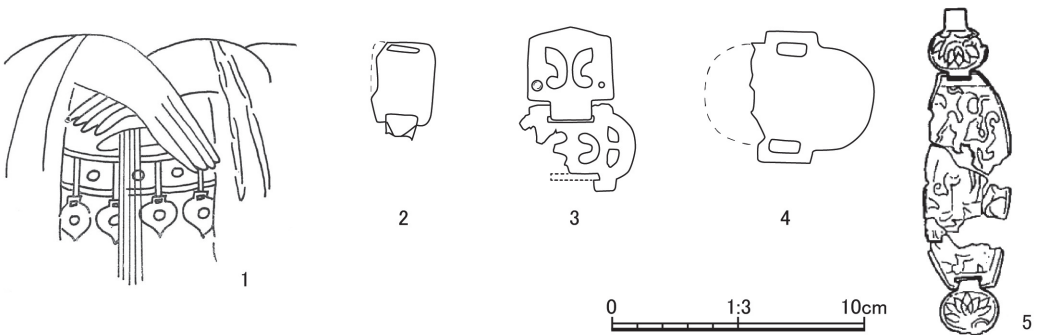
91 桃崎祐輔, 2009, 앞의 글.

작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신라에서 대장식구 문화가 성행하게 된 계기로 고구려의 영향은 충분히 상정해봄 직하다.

2) 고구려2단계

4세기 중엽 이후로 비정된다. I·II·III형식이 지속된다. 실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357년 축조된 안악3호분에 그려진 장하독(帳下督)이 착장한 대장식구가 중원식대장식구 3단계로 비정⁹²되는 과D와 흡사(그림 10-1)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2단계에도 I형식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³ 그 배경과 관련하여 336년, 343년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가 동진으로 견사한 사실에 주목하는 견해가 주목된다.⁹⁴

한편 고구려2단계에는 새롭게 IV형식이 출현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요패



1. 안악3호분 벽화 중 장하독의 과대 착용 세부 실측도(尹善姬, 1987: 307) 2. 집안 우산하M3105
3. 집안 우산하M3162 4. 집안 우산하M3296 5. 집안 우산하M1080

그림 10 장하독의 과대(1)와 요패(2~5)

92 金跳咏, 2020, 앞의 글.

93 尹善姬, 1987, 「三國時代 鈎帶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研究」,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Ⅱ,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94 桃崎祐輔, 2006, 앞의 글, 179쪽.

이다(그림 10-2~5). 집안 우산하M3105, 우산하M3162, 우산하M3296, 우산하M1080에서는 양진과 삼연에서 확인되지 않는 요패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형식은 다양하나 양단에 별개의 금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은 점은 동일하다. 이는 단순히 금구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양단의 구멍을 통해 여러 개의 수하식을 하단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은 당시 중국과 삼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용 방식으로 고구려에서 처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⁹⁵

이 가운데 집안 우산하M3162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의 문양은 삼연의 ‘모방제2유형’과 흡사하고 우산하M3296에서 출토된 타원형요패는 낙동강 이동 지역, 즉 신라 고분에서 자주 확인된다. 이처럼 요패만 본다면 고구려에서 출토된 대장식구는 마치 삼연과 신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집안 우산하M3142, 산성하M330, 연강향19호묘, 우산하M151에서 삼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초엽문의 대장식구가, 집안 우산하M725, 평양 덕화리3호묘에서 신라 대장식구와 유사한 사례가 출토된 것에서도 방증된다. 대장식구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양상은 삼연과 신라를 연결하는 고구려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신라가 중원의 새로운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데 북방의 고구려가 창구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평양 천도 후,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까지 계속해서 대장식구를 제작, 사용, 폐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쉽게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실상은 알기 어렵다.

95 이한상, 2004, 앞의 책.

V. 맺음말

기마민족에 의해 개발된 대장식구가 정형화된 형태로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된 계기는 양진왕실(兩晉王室)에서 제작된 중원식대장식구였다. 인접한 삼연과 고구려는 물론 백제와 신라, 가야, 일본열도까지 확산된 중원식대장식구는 동아시아에서 허리띠를 장식하는 문화를 성행시킨 계기였다.

이후 여러 지역의 각 정치체는 대장식구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다만 중원식 대장식구를 모든 정치체가 동일한 의도로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인접한 모용선비는 양진에서 이입된 중원식대장식구를 모티브를 이용하여 그대로 모방 제작하거나 자신들의 전통적 문양과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된 독창적인 대장식구를 제작한다. 삼연의 대장식구는 현지로 이입된 중원식대장식구를 모델로 하여 모용선비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복식 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출된 정치색 짙은 기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한 중원식대장식구가 이입되었음에도 이를 변용하거나 새롭게 가공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백제, 신라, 왜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삼연의 대장식구는 인접한 고구려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원과 삼연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식의 고구려 대장식구는 현재까지 자료로 보아 대부분 고구려에서 창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대장식구에서는 삼연과 신라 대장식구의 요소가 함께 확인된다. 특히 요패를 사용하여 수하식을 아래로 길게 연결하는 방식은 중원과 삼연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신라에서는 성행한다. 이러한 양상은 삼연과 신라를 연결하는 고구려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신라가 중원의 새로운 선진 문물을 도입하는 데 북방의 고구려가 창구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세기 이후 한반도 중남부의 백제와 신라, 바다 건너 일본열도의 왜에서 대장식구가 성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글에서 분석한 것처럼 중국대륙과 한반도 남부를 잇는 삼연과 고구려의 대장식구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 강현숙, 2006,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중국 三燕 요소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0, 「帶金具 副葬 高句麗 古墳의 考古學的 含意」, 『韓國古代史研究』 59, 韓國古代史研究會.
- 기경량, 2017,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88, 한국고대사학회.
- 김도영, 2018, 「신라 대장식구의 전개와 의미」, 『韓國考古學報』 第107輯, 韓國考古學會.
- _____, 2020, 「동아시아 중원식대장식구의 전개와 의미」, 『韓國考古學報』 第117輯, 韓國考古學會.
- 김지현, 2012, 「古代 東亞細亞 出土 晉式帶金具의 成立과 展開」, 『韓國上古史學報』 第75號, 韓國上古史學會.
- 桃崎祐輔, 2009, 「고구려 왕릉 출토 기와·부장품으로 본 편년과 연대」,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오진석, 2019, 「삼연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高句麗渤海研究』 第65輯, 高句麗渤海學會.
- 尹善姬, 1987, 「三國時代 鈔帶의 起源과 變遷에 관한 研究」,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II,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李漢祥, 1995,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 裝身具分析을 중심으로 -」, 『韓國史論』 33, 서울大學校國史學科.
- _____, 1997, 「裝飾大刀의 下賜에 반영된 5~6世紀 新羅의 地方支配」, 『軍事』 35, 國防部軍史編纂委員會.
- _____,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_____,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 지배』, 서경문화사.
- _____, 2011, 「허리띠 분배에 반영된 고대 동북아시아의 교류양상」, 『동북아역사논총』

33. 동북아역사재단.

- 李熙濬,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 第17號, 嶺南考古學會.
- 張雪巖, 2001, 「集安市 發掘 高句麗 허리띠꾸미개(帶飾)研究」, 『高句麗研究』 第12集, 高句麗研究財團.
- 전호태, 2011, 「고구려 평양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蔚山史學』 제15집, 울산대학교 사학회.
- 조운재, 2015, 「考古資料를 통해 본 三燕과 高句麗의 문화적 교류」, 『先史와 古代』 第43號, 한국고대학회.
- 趙傑杰, 2009, 「대동강유역 고구려봉토석실묘의 등급과 계층」, 『高句麗渤海研究』 35輯, 고구려발해학회.

中文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 万欣, 2003, 「鮮卑墓葬, 三燕史迹與金步搖飾的發現與研究」, 『遼寧考古論集』.
- 辛發·魯寶·吳鵬, 1995, 「錦州前燕李廆墓清理簡報」, 『文物』 1995年第6期, 文物出版社.
- 王仁湘, 1986, 「帶扣略論」, 『考古』 1986年第1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三燕文物精粹』, 遼寧人民出版社.
- 遼寧省博物館, 2015, 『北燕馮素弗墓』, 文物出版社.
- 張柏忠, 1989, 「內蒙古科左中旗六家子鮮卑墓群」, 『考古』 1989年第5期.
- 田立坤, 1994, 「朝陽前燕奉車都尉墓」, 『文物』 1994年第11期, 文物出版社.
- _____, 1996, 「論帶扣的形式及演變」, 『遼寧文物學刊』 1996年第1期.
- _____, 1998, 「三燕文化與高句麗考古遺存之比較」, 『青果集 吉林大學考古系建系10周年紀念論集』, 知識出版社.
- _____, 2001, 「三燕文化墓葬的類型與分期」, 『漢唐之間文化藝術的互動與交融』, 文物出版社.
- _____, 2002, 「袁台子壁畫墓的再認識」, 『文物』 2002年第9期,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技術室, 1983, 「安陽晉墓馬具復元」, 『考古』 1983年第6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陳大爲·李宇峰, 1982, 「遼寧朝陽後燕崔適墓的發現」, 『考古』1982年第3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1979年第1期,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日文

諫早直人, 2012, 『東北アジアにおける騎馬文化の考古學的研究』, 雄山閣.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12, 『古墳關聯資料』, 國立歷史民俗博物館資料圖錄8.
桃崎祐輔, 2005, 「七支刀の金象嵌技術にみる中國尙方の影響」, 『文化財と技術』第4號, 工藝文化財研究所.
_____, 2006, 「馬具からみた古墳時代會年代論-五胡十六國·朝鮮半島三國伽耶·日本列島の比較の視点から-」, 『日韓古墳時代の年代觀』, 國立歷史民俗博物館·釜山大學校博物館.
東潮, 1993, 「朝鮮三國時代における横穴式石室墳の出現と展開」,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47集.
_____,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藤井康隆, 2003, 「三燕における帶金具の新例をめぐって」,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Ⅲ-2, 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刊行會.
_____, 2006, 「晋式帶金具補考」, 『古代』第119號, 早稻田大學考古學會.
飛鳥資料館, 2009, 『北方騎馬民族のかがやき 三燕文化の考古新發見』.
小池伸彦, 2006, 「遼寧省出土の三燕の帶金具について」, 『東アジア考古學論叢-日中共同研究論文集-』, 奈良文化財研究所.
町田章, 1987, 「匈奴式帶金具の變遷」, 『東アジアの裝飾墓』, 同朋舎出版.
_____, 2006, 「鮮卑の帶金具」, 『東アジア考古學論叢-日中共同研究論文集-』, 奈良文化財研究所.
_____, 2011, 「前燕高橋鞍の検討」, 『勝部明夫先生喜壽記念論文集』, 勝部明夫先生喜壽記念論文集刊行會.
千賀久, 1984, 「日本出土帶金具の系譜」, 『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第6, 吉川弘文館.
_____, 2007, 「中國遼寧地方の帶金具と馬具」, 『日中交流の考古學』, 同成社.

土屋隆史, 2020, 「蔚山下三亭ナ地區115 號墓出土の晋式帶金具とその意義」, 『柳本照男さん古希紀年論集-忘年之交の考古學-』, 柳本照男さん古希紀年論集刊行會.

삼연·고구려 대장식구의 전개와 특질

김도영

이 글에서는 삼연(三燕)과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대장식구에 주목하였다. 기년명 자료를 참고로 삼연 대장식구의 제작 연대를, 기존의 고분 연대관을 참고로 고구려 대장식구의 존속 시기를 추정하고 각각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연의 대장식구는 현지로 이입된 중원식대장식구를 모델로 하여 모용선비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복식 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출된 정치색 짙은 기물이었다. 4세기 전엽~중엽, 전연(前燕)에서는 왕권의 의도 아래 장식마구와 함께 제작된 ‘모방 제1유형’과 모용선비 고유의 전통적 문양과 모티브가 강하게 반영된 ‘모방 제2유형’이 함께 제작되고 있었다.

삼연의 대장식구는 인접한 고구려에도 영향을 끼쳤다. 중원과 삼연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식의 고구려 대장식구는 현재까지 자료로 보아 대부분 고구려에서 창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요패를 사용하여 수하식을 아래로 길게 연결하는 방식은 중원과 삼연에서 확인되지 않고 신라에서 성행하였으므로 고구려 대장식구가 중원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4세기 전엽, 양진(兩晉)에서 제작된 중원식대장식구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다. 이를 계기로 5세기가 되면 백제와 신라, 바다 건너 왜(倭)에서 독자적 양식의 대장식구가 제작된다. 동아시아의 동단까지 허리띠를 장식하는 대장식구 문화가 성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중원과 한반도 및 일본열도를 지리적으로 이어준 삼연과 고구려의 대장식구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삼연, 고구려, 대장식구, 전개, 특징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amyeon(三燕) and Goguryeo Belt Ornament

Kim Doyoung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Belt Ornament of Samyeon(三燕) and Goguryeo, and examined the production date and characteristics.

The Belt Ornament of Samyeon(三燕) was modeled after the Chinese-style Belt Ornament imported to the area, and was an ite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ir ancient costumes by MoYongSeonBi(慕容鮮卑).

Various types of Goguryeo Belt Ornament are likely to have been produced in Goguryeo. Belt Ornament of Goguryeo was popular in Silla.

It can be seen that Goguryeo Belt Ornament served as a bridge betwee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5century, Belt Ornament in its own style was produced in Baekje, Silla, and Yamato(倭).

Belt Ornament was preval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because Samyeon (燕), who connected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Belt Ornament of Goguryeo.

Keywords: Samyeon(三燕), Goguryeo, Belt Ornament, development, characteristic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변천

정선화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 박사

- I. 머리말
- II. 미군정기~제7차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 III. 2007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 IV. 맺음말



I. 머리말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¹의 연구는 1883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 소속의 사코 가케노부(酒匂景信)가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서 광개토왕비의 탁본을 입수해 일본으로 가져간 후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초창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연구는 영락 6년의 일부 내용인 신묘년조(辛卯年條) 기사(32자)만 해명하는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광개토왕비의 본질적인 역사적 가치를 외면한 채 『일본서기』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관련 내용과 일제에 의한 한·일 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사료로만 여겨져왔기 때문이다.²

-
- * 투고: 2021년 7월 13일, 심사 완료: 2021년 8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8월 25일
- 1 ‘광개토왕비’의 명칭은 ‘광개토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대(태)왕비’, ‘광개토호태왕비’, ‘호태왕비’ 등 다양하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편수용어인 ‘광개토대왕릉비’를 사용하고 있다. 비석의 명칭은 비석을 제작할 당시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다. 古碑 중 명칭이 기록상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비석의 성격 규명을 통해 부여된다. 이 비석은 왕의 능 앞에 세우기 위한 왕릉비라기보다 고구려의 정치·사회·문화 전반을 고르게 기록한 선례가 없는 비석이다. 왕릉비로 한정하여 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김현숙, 2013,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458~465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광개토왕비’로 칭하기로 한다. 다만 교과서를 인용할 경우 해당 교과서에 기술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광개토왕비에 관한 연구성과 중 이 글에 도움이 되었던 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佐伯有清, 1974,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145쪽, 188쪽; 鄭杜熙, 1979, 「廣開土王陵碑文 辛卯年 記事의 再檢討」, 『역사학보』 82, 200쪽; 劉智智·徐日範, 1996, 「好太王碑의 發見과 釋文研究」, 『고구려발해연구』 2, 274쪽;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23쪽; 이영식, 2017, 「임나일본부의 허상과 가야제국」, 『한국고대사 2』, 주류성, 86~93쪽; 연민수,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178쪽; 鄭孝雲, 2007, 「『새역사교과서』와 任那日本府」, 『일어일문학』 35, 378쪽; 남재우, 2011,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한국고대사연구』 61, 158쪽; 김영하, 2012,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1955년 정인보의 연구를 계승한 북한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 남한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제기되었다. 초창기 연구는 신묘년조 기사에 대한 일본 측 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후 서체를 비롯하여 국어사적 접근 등 광개토왕비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폭넓게 추구하는 글들이 제기되어 연구의 폭이 한층 확대되었다.³ 광개토왕비의 서체를 통해 삼국의 필법과 서풍을 연구하는 것은 삼국의 서사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⁴

특히 광개토왕비 관련 연구는 한·일 고대관계사에서 이견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역사교과서의 서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구려의 유물임에도 해방 전후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 한·일 역사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고 있다.⁵ 동일한 유물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일본 고등학교 『日本史B』 교과서에 광개토왕비가 수록된 곳은 ‘야마토 정권’을 다루는 4~6세기 대외 관계사 단원이다.⁶ 비문에는 왕가의 내력과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 과정, 수묘인 관련 법률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日本史B』 교

해석-신묘년기사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66, 211쪽, 221쪽; 윤선태, 2014, 「가야(加耶),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1』, 사계절, 373쪽; 정효은, 2021, 「가야사의 듀얼리즘과 연구사의 스펙트럼」, 『한일 관계사연구』 71, 7~8쪽.

- 3 高光儀·孫煥一, 2004, 「書體를 통해서 본 高句麗 正體性: 廣開土大王碑體의 형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8; 고평의, 2013, 「광개토왕비의 서체」,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權仁瀚, 2015, 『廣開土王碑文 新研究』, 박문사.
- 4 孫煥一, 2002, 「高句麗 廣開土大王碑 隸書가 新羅 書體에 미친 影響」, 『고구려발해연구』 13, 46~47쪽.
- 5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자국사 교과서에 동시에 수록되어 있는 유물은 ‘廣開土王碑’, ‘七支刀’,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紺瑠璃环’ 등이다.
- 6 일본 고등학교 『日本史B』에는 광개토왕비와 관련해 신묘년조 기사를 활용한 서술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정선화의 다음 글을 참조 바람(2021, 「『日本史B』 교과서의 廣開土王碑 관련 서술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159).

과서에서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역 진출과 임나 경영의 시작을 보여주는 초기 연구자의 견해를 신묘년조와 연관하여 다루고 있을 뿐이다.⁷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서술 내용과 학습 자료로서 비의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다.⁸

역사는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서술되므로 유물 자료가 역사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동일한 사료지만 학습자료로서 해당 사료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마다, 교육과정기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한국사』에 기술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을 통해 최신 연구성과의 적절한 반영, 지향하는 서술 형태, 학습자료로서 비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미군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2010년 검정본(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검토하고자 한다.⁹ Ⅱ장과 Ⅲ장의 구분 기준은 첫째, 고등학

7 전진국, 2019, 「『任那興亡史』의 논지와 학술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 관계사연구』 64, 90쪽.

8 우리나라 고등학교 자국사 교과서의 서명은 1946년의 미군정기에는 『國史敎本』,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은 『국사』이다(단,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사』, 『고등 국사』,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최신 국사』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이 기간의 서명도 『국사』로 칭하기로 함). 이후 수시 개정 교육과정 체제로 바뀌면서 서명은 『한국사』로 변경되었다. 이 글의 검토 대상 교과서는 광개토왕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기 시작한 미군정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국사』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이다. 각각 ‘『국사』’와 ‘『한국사』’로 칭하기로 하며 시기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제1차 『국사』’, ‘2007 『한국사』’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국사』와 『한국사』를 함께 칭할 때는 『한국사』라고 통일하며 출판사별로 <표>에 정리할 때는 2음절까지만 표기(예를 들어 금성출판사는 ‘금성’)하고 시기 구분은 ‘2007 금성’, ‘2015 천재’ 등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정식 출판사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9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10년도에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각론에 의거해 서술된 것은 맞지만, 이때는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총론이 개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2010년 검정본’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시기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표기함을 밝혀둔다.

교 역사과 교육과정이 차수에서 수시 개정으로 변경된 것과 서명이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뀐 점이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집필 기준을 설정하고 최신 연구 성과의 반영을 문서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¹⁰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은 이 글의 검토 대상 교과서 목록이다.

<표 1> 검토 대상 교과서 목록

교육과정	교과서명	저자/출판사	발행체제	발행연도
미군정기	『國史敎本』	신단학회/군정청문교부	국정	1946
제1차 교육과정 ¹⁰	『우리나라문화사 〈고등국사〉』	홍이섭/정음사	검정	1957
	『고등국사』	김상기/장왕사		1964
제2차 교육과정	『최신국사』	민영규·정형우/양문사	검정	1967
	『국사』	신석호/광명출판사		1968
	『국사』	변태섭/법문사		1968
	『국사』	신석호/광명출판사		1971
	『국사』	이병도/일조각		1972
제3차 교육과정	『국사』	문교부/한국교과서(주)	국정	1979
제4차 교육과정	『국사(상)』	문교부/대한교과서(주)	국정	1982
				1983
제5차 교육과정	『국사(상)』	교육부/대한교과서(주)	국정	1990
제6차 교육과정	『국사(상)』	교육부/대한교과서(주)	국정	1996
제7차 교육과정	『국사』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 위원회	국정	2002

10 제2차 교육과정이 1963년부터이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에 의해 1968년부터 발행되므로 이를 제1차 교육과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한철호 외/미래엔	검정	2011
		도면희 외/비상교육		
		최준채 외/법문사		
		이인석 외/삼화출판사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권희영 외/교학사	검정	2014
		김종수 외/금성출판사		
		왕현중 외/두산동아		
		최준채 외/리베르스쿨		
		한철호 외/미래엔		
		도면희 외/비상교육		
		주진오 외/천재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최준채 외/금성출판사	검정	2020
		노대환 외/동이출판		
		한철호 외/미래엔		
		도면희 외/비상교육		
		신주백 외/씨마스		
		최병택 외/천재교육		

II. 미군정기~제7차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학습자료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역사자료가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부터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과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교과서의 판형이 기존과는 달리 국배변형(판형 가로 185mm, 세로 255mm)으로 확대되고 이 시기

부터 칼라용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용어와 개념을 설명하는 날개주, 본문 내용 중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움글, 역사적 현상이나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사료를 통해 더 깊이 학습할 수 있는 심화과정 등 다양한 학습 코너가 마련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미군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과 학습자료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미군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¹¹

서명	교육과정	서술 내용 및 학습자료 활용
① 『國史敎本』 10쪽	미군정기 1946	본문: 廣開土王碑 (나) 『廣開土王의 偉業과 高句麗세력의 南進』 高句麗의 廣開土王 (第十九代)은 東征西伐 南進北討에 一生을 보내어 高句麗의 威力을 빛내며 領域을 크게 늘여 廣開土王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게 되었나니. 南으로 百濟를 쳐 漢水以北을 차지하고 다시 新羅의 邊境을 엮보던 日本兵을 쳐 그것을 洛東江上 流域에서 殲滅하였으며, 東으로 향하여 당시 叛服이 無常하던 沃沮와 濊를 거둬 平定하고 北으로 挹婁의 여러 部族을 平定하는 등 우리 歷史上에 未曾有의 武勳을 빛내었다.
② 『우리나라 문화사』 26, 27쪽	제1차 1957	본문: 호태왕(廣開土境永安好太王, 391~412) 때에는 또한 중국의 내란의 틈을 타서 요하를 넘어 뻗어 나가고 남으로 조선 반도 안으로 향하여 크게 공략(攻略)을 전개시키어 백제(百濟)와 싸우며, 칙강(拓疆, 국경을 늘인다)의 사업을 차근차근 전개하였으며…
③ 『고등국사』 36, 63쪽	제1차 1964	본문: 고구려의 국력은 다시 곧 회복되어 광개토 왕(廣開土王 - 제19대)시대(서기391~412)에 이르러는 우리 역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큰 영토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광개토 왕은 북으로 숙신족(肅慎族 - 후세의 만주족)을 정복하여 송화강(松花江)유역을 아울러 서쪽으로 후연(後燕)을 쳐 요하 이동을 확보하였으며 남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다시 신라의 변경(邊境)을 엮 보던 왜인을 쳐 낙동강 상류역에서 그것을 섬멸하였다. 본문: 광개토 왕비의 자체(字體)는 그 고아(古雅)함이 한예(漢隸)에 육박(肉迫)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사진자료: 광개토 왕비

11 <표 2>의 서술은 해당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이 현재와 다른 부분이 많음).

<p>④ 『최신국사』 32, 33, 47쪽</p>	<p>제2차 1967</p>	<p>본문: 광개토왕(廣開土王)때에 이르러서는 우리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큰 영토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는 동북으로 멀리 숙신(肅愼)까지 병합하였으며 서북으로 부여를 정복하고, 남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또 군대를 신라에 파견하여 통꼬우(通溝)에 우뚝 솟아 있는 광개토왕비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다.</p> <p>본문: 글씨로는 고구려 광개토왕비·지금 평양 성벽에 남아 있는 고성 각석(故城刻石) 및 -후략-</p> <p>사진자료: 광개토왕비, 광개토왕비의 글씨(일부)</p> <p>캡션: 광개토왕비 왕 일대의 사적을 기록한 비인데 여기에 신라를 도와 왜군을 격파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p>
<p>⑤ 『국사』 29쪽</p>	<p>제2차 1968</p>	<p>본문: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391~412)은 사방을 정벌하여 고구려 영토를 크게 넓힌 왕으로서, 라오통·현도를 격멸하여 숙원인 서진 정책을 완수한 다음, 동북으로 숙신(肅愼)을 정복하고 남하정책(南下政策)을 취하여 동예를 정복하였으며 신라를 억압하여 인질(人質)을 받았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정벌하였으며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 지방을 차지하였다.</p> <p>사진자료: 광개토왕비</p>
<p>⑥ 『국사』 32, 33쪽</p>	<p>제2차 1968</p>	<p>본문: 광개토왕은 재위가 불과 22년이었으나 그 동안 사방으로 정복사업을 감행하여 문자 그대로 영토를 넓게 개척한 왕이니 왕의 위대한 업적은 지금 통구에 우뚝 솟아 있는 그의 능비(陵碑)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에 의하면 일생 동안에 64성, 1,400여 촌을 공파(攻破)하였다 한다. 이리하여 광개토왕때에는 서쪽으로 라오통 지방을 차지하고 동북의 숙신(肅愼)을 복속시켜 만주의 주공인(主人公)이 되었으며, 남쪽을 백제를 정벌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아우르게 되었던 것이다.</p> <p>사진자료: 광개토 왕비</p>
<p>⑦ 『국사』 29쪽</p>	<p>제2차 1971</p>	<p>본문: 광개토왕(재위391~412)은 사방을 정벌하여 고구려 영토를 크게 넓힌 왕으로서, 라오통·현도를 격멸하여 숙원인 서진 정책을 완수한 다음, 동북으로 숙신을 정복하고 남하정책을 취하여 동예를 정복하였으며 신라를 억압하여 인질을 받았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정벌하였으며 백제를 쳐서 한강 이북 지방을 차지하였다.</p> <p>사진자료: 광개토왕비(만주 지안현)</p>
<p>⑧ 『국사』 28, 29쪽</p>	<p>제2차 1972</p>	<p>본문: 광개토왕[391~412]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중국 후연과 싸워 라오퉁 강 이동을 확보하고, 북으로 북부여를 쳐서 얻고 동북으로 멀리 숙신까지 아울렀으며, 남으로 백제를 공략하여 입진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 때, 왜구가 신라를 침범하자, 신라의 요청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왜를 쳐서 물리쳤다. 현재도 남아 있는 통꼬우의 광개토왕비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고 있다.</p> <p>사진자료: 광개토왕비[통꼬우]</p>

<p>⑨ 『국사』 1, 24, 40, 41쪽</p>	<p>제3차 1979</p>	<p>단원도입부 캡션: 광개토왕비 광개토왕의 일생 사업이 기록되어 있는 높이 6.6m, 총 갓수 1800여 자의 한국 최대의 비석이다. 현재 만주 퉁구 소재</p> <p>본문: 광개토왕 때에 이르러서는 크게 팽창하였다. 그리하여 먼지, 백제를 압박하여 한강선까지 진출하였으며, 신라와 가야에 침입한 왜구를 몰아 냈고, 서쪽에서는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다.</p> <p>본문: 석총으로는 장군총이 유명한데, 그 앞에 광개토왕비가 있어서 그의 능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장군총은 방형 계단식으로 화강암을 7층으로 쌓아올렸는데, 맨 아래층은 길이가 약 30미터이고, 높이는 약 11미터이다.</p> <p>본문: 광개토왕비는 선돌이라는 전통적인 양식이다 새로운 문화의 산물인 한문을 써 넣은 것으로, 그 글씨체가 기운차고 독특하여 오늘날의 서도에서도 이를 많이 모방하고 있다.</p>
<p>⑩ 『국사(상)』 24, 37, 39, 40쪽</p>	<p>제4차 1982</p>	<p>본문: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광개토왕 때에 이르러서는 밖으로 국세를 크게 확장하였다.</p> <p>본문: 현재 전하는 당시의 한문으로는 퉁구에 있는 광개토왕비의 비문과 중원 고구려의 비문이 있다.</p> <p>본문: 석총으로는 장군총이 유명한데, 그 전방에 광개토대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광개토왕의 능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장군총은 계단식으로 화강암을 7층으로 쌓아올렸는데 맨 아래층은 길이가 약 30m이고, 높이는 약 13m이다.</p> <p>본문: 광개토왕비는 선돌이라는 전통적인 양식이다 새로운 문화의 산물인 한문으로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록하였는데, 그 글씨체가 기운차고 독특하다.</p>
<p>⑪ 『국사(상)』 25, 39, 41, 42쪽</p>	<p>제4차 1983 발행</p>	<p>본문: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광개토 대왕 때에 이르러서는 밖으로 국세를 크게 확장하였다.</p> <p>주(1): 퉁구에 남아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는 장수왕 때(414) 건립된 것으로, 그의 영토 확장 과정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영락 5년(395)의 비려 정복, 396년의 왜와 연결된 백제 정벌, 398년의 숙신 정복, 400년의 신라·가야의 정벌, 407년의 북방 정복, 410년의 동부여 정복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화계에서는 19세기 말에 일본군이 이 비석의 중요한 비문 일부를 위작하여 일본의 이른바 임나 경영설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p> <p>본문: 현재 전하는 당시의 한문으로는 퉁구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의 비문과 중원 고구려의 비문이 있다.</p> <p>본문: 석총으로는 장군총이 유명한데, 그 전방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광개토 대왕의 능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장군총은 계단식으로 화강암을 7층으로 쌓아올렸는데 맨 아래층은 길이가 약 30m이고, 높이는 약 13m이다.</p> <p>본문: 광개토 대왕릉비는 선돌 형태의 비석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하였는데, 그 한문 글씨체는 기운차고 독특하다.</p>

<p>⑫ 『국사(상)』 36, 37쪽</p>	<p>제5차 1990</p>	<p>본문: 당시의 활발한 정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성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복 활동은 중국의 정세를 이용하여 침략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의미를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탁본(부분)</p>
<p>⑬ 『국사(상)』 37, 53, 92쪽</p>	<p>제6차 1996</p>	<p>본문: 광개토 대왕 때에는 국력을 밖으로 팽창시켜 그 시호가 의미하는 것처럼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요동 방면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지역이 고구려의 판도가 되었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시키기도 하였다. 당시의 활발한 정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성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 광개토 대왕릉비는 선돌 형태의 자연석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하였는데 그 글씨체가 기운차고 독특하다. 사진자료: 광개토 왕릉비(중국 길림성 집안시)</p>
<p>⑭ 『국사』 44, 50, 266쪽</p>	<p>제7차 2002</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길림성 집안) 본문: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본문: 광개토 대왕릉 비문은 웅건한 서체로 쓰여졌고, -후략- 임기자료: (영락)9년(399)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서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400)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나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p>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광개토왕비는 미군정기부터 전 교육과정에 걸쳐 수록되었다. 다만 제3차(대단원 도입부에 수록)와 제4차의 본문에는 광개토왕비의 사진자료가 미수록되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4~1981)에는 무령왕릉 출토 유물 자료와 경주 천마총 장니 천마도가 새롭게 수록되었다.¹² 제3차 『국사』에는 고대사 영역의 유물자료 중

12 무령왕릉 출토 왕비 관의 금 장식은 1971년 충남 부여 송산리 제6호분의 배수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말다래에 그려진 천마도는 1973년 경주 황남동 고분 155호

고구려와 관련 있는 자료는 단 1점(금동 투조 문조 무의 금구: 북한 국보)만 수록되었을 뿐이다.¹³ 제4차 『국사』에서도 고구려의 유물자료는 단 1점이 수록되었는데 이때의 자료는 충주고구려비이다. 1979년에 발굴된 충주고구려비가 고구려를 대표하는 금석문으로 수록되면서 광개토왕비는 미기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개토왕비는 왕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학습자료로 활용되었다면 새롭게 수록된 충주고구려비는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한반도 남부로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학습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제5차 『국사』부터는 고구려 관련 유물자료가 3점 이상 꾸준히 수록되었다. 고구려 관련 유물자료의 수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고구려 영역이 현재 한국(남한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유물자료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신출 고고학자료도 신라, 백제, 가야와 관련된 유물이 대부분이다. 한국 측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물자료는 충주고구려비, 호우명그릇,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막새 기와류, 토기, 치미 등이다.

〈표 2〉에 정리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과 학습자료 활용 현황을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비의 명칭이다. 〈표 2〉에 나타난 대로 미군정기부터 제3차 『국사』까지는 ‘광개토왕비’라고 기술하고, 제4차 『국사』 중 ⑪의

분(천마총)에서 발견되었다. 1971년과 1973년에 각각 발견된 고고학자료가 1974년 발행본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이는 고고학자료의 實檢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빠른 수록은 고대사 분야에서 1차 자료가 넘겨지지 못한 학계의 실정이 투영된 점도 감안되었지만 무령왕릉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무령왕릉은 백제의 유일한 왕릉이며 능 속의 부장품이 온전히 남아 있다. 둘째, 고등학교 자국사 교과서는 정치사회사를 중심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무령왕릉과 그 부장품을 활용한 백제의 정치적 성장을 강조하는 학습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3 제3차 『국사』 고대사 영역에 수록된 유물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동투조문조무의금구,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신라의 금관, 오리형의 가야토기, 신라토기 기마인물상, 임신서기석의 탁본, 경주석조보살상, 백제의 화전, 사택지적비탁본, 미륵반가사유상, 무령왕릉출토 왕비 관의 금장식, 서산마애불, 천마도, 발해와당, 성덕대왕신종의 비천문 탁본, 무열왕릉비의 이수와 귀부이다(문교부, 1974, 『국사』, 대한교과서(주)).

1983년 발행본부부터는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기술하였다. 광개토왕비로 기술하다가 ‘광개토 대왕릉비’로 바뀌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곳은 없다. 기존 연구성과의 광개토왕비 관련 논문 제목이나 본문에 기술된 명칭은 ‘광개토왕비’가 ‘광개토 대왕릉비’보다 많지만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최근까지는 ‘광개토왕비’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구성과를 참고한 명칭 변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4차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인용 1] 제4차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¹⁴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일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다.

4.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가. 사회적 연대의식
- 나. 민주, 복지, 정의 사회 건설의 사명감
- 다. 투철한 국가의식
- 라. 민족 문화 창달 의욕
- 마. 인류 공영 의식

[인용 1]은 제4차 교육과정의 교육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인용문에 기술된 대로 당시는 제5공화국 시기이다. 1979년 10·26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해 3월 정권을 잡은 신군부의 지향점이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주지 하듯이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 민주화운동을 화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사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진실공방이 진행 중이다.

14 문교부, 1981,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4」.

신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교육과정의 개편이 추진되자 유사역사학자들에 의한 ‘국사교과서 내용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소위 ‘국사교과서 파동’ 사건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제4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과 국가의식이 강조되었다.¹⁵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민족사관 교육이 강조되었다. 국사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고취는 이 시기에 더욱 강화되어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또한 ‘비석의 중요한 일부를 위작하여 임나 경영설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은 ㉠에만 유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고대사 서술뿐 아니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¹⁶

따라서 제4차 교육과정(1983년 발행본)부터 이 비의 명칭이 ‘광개토왕 대왕릉비’로 바뀐 배경은 당시의 정권이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후 비의 명칭이 광개토 대왕릉비로 굳어진 것은 비문에 기록된 고구려의 천하관을 나타내는 ‘태왕’, ‘천제지자’, ‘영락대왕’이라는 문자가 참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명칭을 ‘대왕릉비’로 바꾸면서 비의 성격이 능비로 ‘한정’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현재 이 비를 광개토왕의 ‘능비’로 한정하여 협소하게 논하는 연구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능비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의 명칭을 ‘대왕릉비’로만 명시하는 것은 비가 광개토왕의 능 바로 앞에 설치된 묘비로 오

15 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 56(1), 25쪽; 신선희, 2019, 「제4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大邱史學』 136, 4쪽, 10쪽.

16 차미희, 2007, 「4차 교육과정기(1982~89) 중등 국사교과서의 내용상 특성」, 『열린교육연구』, 246~254쪽; 신선희, 2019, 위의 글, 3~4쪽.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대사 분야의 연구는 신선희의 위 글을 참조 바람.

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¹⁷

둘째, 광개토왕과 비문 관련 서술상에 나타난 용어이다. 첫 번째는 광개토왕의 활동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표 2>에 의하면 ①~⑭는 모두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춘 서술임을 알 수 있다. ① 동정서벌, 남진복토, 쳐, 섬멸, 무훈, ② 공략, ③ 정복, 쳐, 공격, 섬멸, ④ 병합, 정복, 격파, ⑤ 정벌, 격멸, 정복, 쳐, ⑥ 정복, 복속, 공파, 정벌, ⑦ 정벌, 격멸, 정복, 쳐, ⑧ 쳐, 공략, ⑨ 격파, ⑩ 정복, 정벌, ⑪ 정복, ⑫ 정복, ⑬ 정복, 격퇴, ⑭ 정복, 격퇴, 공략이다.

이와 같은 용어가 기재된 단원은 주로 정치사를 다루는 단원이다.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국강병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정복 활동이 군사력을 이용하여 상대지역을 공격한 행위라면 외침 격퇴는 침략해 온 외적을 극복한 것으로 서술상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광개토왕비에는 고구려가 상대국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한 사실과 외침을 격퇴하여 자국의 영토 및 한반도의 남부를 지켜낸 사실도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준다.

다음은 광개토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 사용한 수식어이다. <표 2>의 ①, ④, ⑥, ⑧에는 ‘위대한 업적을 자랑’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은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을 부각시켜 위대함과 자랑스러움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라고 할 때 어떤 점이 왜 자랑스러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광개토왕비문에는 크게 세 분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표 2>의 교과서에서는 광개토왕의 정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좁혀 역사적 사고와 상상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광개토왕비가 있는 소재지의 지명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④ 통꼬우, ⑥ 통구, ⑦ 지안현, ⑧ 통꼬우, ⑨ 통구, ⑩ 통구, ⑪ 통구, ⑫ 국내성, ⑬ 국

17 각주 1) 참조.

내성, 길림성 집안시로 기술하였다. 국정이든 검정이든 발행체제와는 상관없이 교과서마다 각각의 지명을 사용하였다.¹⁸

둘째 항목의 네 번째는 <표 2>의 ①, ③, ④에 서술된 ‘우리 역사’이다.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나라는 고구려를 기준으로 한반도 북부의 여러 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여러 나라, 그리고 왜이다.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우리 역사’에 고구려는 마땅히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에는 백제, 신라, 가야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고대의 역사를 서술할 때 ‘우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당시 ‘우리’가 현재의 ‘우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역사는 ‘우리’를 과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한국사의 본질은 과거를 이해하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광개토왕비문의 내용을 소개할 기술된 용어이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사』에는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내용 중 영토 확장과 같은 정복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광개토왕의 일생이 전쟁터에서 살다 생을 마감한 왕으로만 그려져 있다. 비문에는 1,700자가 넘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영토 확장 외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외에 사실 관계에 신중함을 더해야 하는 서술을 세 가지 정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표 2>의 제3차, 제4차 『국사』에서는 광개토왕비가 장군총 앞에 세

18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법과 전문 연구가에 의해 편수용어로 정해져 있다(2003년 초판 발행). 이는 김정체제인 경우 교과서 심사과정에서 편수용어와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수정권고를 받기 때문에 최종본에는 편수용어로 표기된다. 다만 제2차 교육과정기는 김정체제일지라도 편수용어집이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교과서마다 다른 지명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9쪽.

워진 묘비로 표현되고 있다.²⁰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장군총의 묘주를 광개토왕으로 보는 견해와 장수왕으로 보는 견해로 대분된다. 그런데 장군총이 광개토왕의 능으로 생각한 서술이라면 장군‘총’이 아니라 ‘능’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 장군총은 여전히 무덤의 주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총’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장군총을 광개토왕릉으로 설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에 기술된 내용으로 ‘이 비석의 중요한 비문 일부를 위작하여’에 대해서이다. 이 문장은 일본군에 의해 비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²¹ 한때 일본 역사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이 주장은 중국인 연구자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²² 이후 비문이 조작되었다고 서술하는 논저는 사라졌다.

끝으로 <표 2>의 ㉡에는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한반도를 칭할 때 사용하는 ‘조선 반도’라는 용어가 눈에 띈다. ‘조선(朝鮮)’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1988)과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에는 이성계에 의해 14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의 대한제국 성립까지 존재했던 왕조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²³에서는 1910년 한국병합 후

20 이에 관한 연구서는 조법종의 글을 참조 바람(2012, 「高句麗 國內城의 空間과 廣開土王陵-地圖와 陵碑文 檢討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44). 이 외에 눈에 띄는 내용은 제4차 『국사』에서는 제3차 『국사』와 달리 장군총의 크기를 숫자적으로 더 크게 기술하였는데 이는 광개토대릉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비와 관련 있다고 믿는 장군총의 크기를 표기할 때 의도적으로 최대한 크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21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文의研究』, 吉川弘文館(조영광, 201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9에서 재인용).

22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3 한국이라고 부르다가 ‘조선’으로 고쳐 칭하게된 배경 설명은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였다. 한국은 「朝鮮」이라고 부르고, 수도 「漢城」(ソウル)은 「京城」이라고 고쳐 칭하게 되었다(小風秀雅 외, 2018, 앞의 책, 180쪽).’; ‘조선을 領有하여 ‘조선’이라고 고쳤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한다(深谷克己 외,

한국을 ‘조선(조선)’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고대 한반도를 ‘조선 반도’라고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학습자료의 활용 현황이다. 검토 대상 교과서에는 광개토왕비가 사진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비만 확대한 사진을 수록하거나, 비가 보관되어 있는 시설과 함께 수록한 곳이 대부분이며 탁본 자료를 기재한 곳도 있다. 비를 학습자료로 수록한 것은 광개토왕의 업적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근거자료로서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함이다. 제7차 『국사』에서는 광개토왕비뿐 아니라 비문의 내용 일부를 ‘읽기 자료’로 처음 제시하였다. 이로서 집필진의 주관적인 사관보다는 사료를 인용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광개토왕비의 서체에 관한 서술이다. 그동안 광개토왕비는 정치적인 면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왔다. 비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서체 등 예술적 면을 서술한 것은 <표 2>의 제2차 『국사』를 시작으로 제5차를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에 나타난다. 다만 문자자료의 서체를 표현하는 용어는 감상 위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사료의 미술사적 설명은 형용사, 부사를 사용할 때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표현하되 사실(事實)을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아함(④), 육박(④), 기운차고 독특함(⑨, ⑩, ⑪, ⑬), 웅건함(⑭)은 미술품을 감상하는 투의 설명이다. ‘고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나 품격 따위가 높고 우아하다’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광개토왕비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광개토왕비의 서체에 대한 사실(事實)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품격이 높고 우아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목간

2018, 『中學社會 歷史』, 教育出版, 180쪽.』;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한다. 병합에 의해 한국은 ‘조선’이라고 고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藤非讓治 외, 2018, 『中學社會 歷史分野』, 日本文教出版, 194쪽) 외 다수.

과 금석문 등의 고대 문자자료의 서체에 대해 예술 분야에서 역사성을 논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²⁴ 역사교과서에서는 유물자료 중 예술적 가치에 대해 서술할 경우 주관적인 감상보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²⁵

이상과 같이 미군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에 나타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의 서술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III. 2007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지금까지 II장에서 살펴본 교육과정은 제2차까지는 검정체제였고, 제3차부터 제7차까지는 국정체제였다. 단,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체제였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는 수시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며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비위키 자료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²⁶

24 고고학자료의 편년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문헌사적, 고고학적으로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 논해진다. 고고학자료의 편년을 주관적인 미술비평으로 논하는 것은 예술분야에서나 가능한 일이므로 역사학계에서는 지양해야 할 문제이다. 대표적인 사례(정현숙, 2018, 「고대 동아시아 서예자료와 월성 해자 목간, 『목간과문자』 20, 313쪽)로 정씨는 고문서의 작성연대를 논하면서 파임, 자형의 차분함, 필획의 강약, 노력한 필치, 안정감과 정연함 등 미술비평에나 사용되는 표현을 앞세워 한 시대의 사회경제사를 담고 있는 1차 사료의 편년을 다른 유물과 빗대어 논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술가의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역사는 사료에 근거한 역사가의 고증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25 이해영, 2006, 「DBAE 구성영역을 바탕으로 한 국사 교과서 미술사 내용 서술 분석」, 『역사교육』 98.

26 고대사 영역에 해당하는 고고학자료 중 한반도 출토 고대 목간 자료와 정창원 관련 유물자료는 1975년 경주 월지에서 처음 출토된 이후 2007 『한국사』에 처음 각각 수록되었다.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때마다 빠지지 않고 수록되고 있다. 금석문 자료

주로 텍스트로 구성된 본문 같은 읽기 자료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물자료 등 시각화된 역사자료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음은 교과서 발행체도가 검정체제로 다시 전환되면서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내용 요소를 대강화하여 제시하였다.²⁷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자국사 교과서는 『역사』라는 교과서명으로 심사를 통과했으나 『한국사』로 교과명이 변경되었다. 또한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었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문제제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이어졌다.²⁸ 교과명이 갑작스럽게 수정 고시되고 이어 한 달이라는 급박한 기간에 전근대 내용을 추가 서술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사용되기 전인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별로 4~5개 정도의 학습 요소를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집필 기준에서는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서도 사회경제사, 사상사 및 대외 관계사를 연계하여 한국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²⁹ 이러한 강조점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후 교육부는 2015년 9월 23(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새로 확정·발표하였다.³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는 2019년 11월 27일 8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중 집안 고구려비는 2012년 발견 후 2015 『한국사』(씨마스)에 처음 수록되었다.

27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1쪽.

28 한철호, 2011,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교육과정 개정 일정의 문제점」, 『한국사연구』 153, 376쪽.

29 교육과학기술부, 2011a,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4]」, 153쪽, 155쪽.

30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 교육과정정책과, 1쪽, 7쪽.

통과하여 2020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전근대사는 ‘주제별’로 서술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서술 분량은 대폭 축소되었다. 성취 기준에서는 전근대의 지배체제를 중심으로 정치사와 종교와 사상을 시기별로 서술하도록 명시하였다.³¹

이 장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과 학습자료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려 한다.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의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

구분 ³²	서술 내용 및 학습자료 활용
① 07미래 26쪽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안)</p> <p>본문: 광개토 대왕 때에는 국력이 밖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후연, 거란 등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하여 만주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대하였으며 남으로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남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p> <p>사료 읽기: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들)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광개토 대왕릉비 -</p>
② 07법문 29쪽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 414년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현재 만주의 지안에 있으며, 6.3m 높이의 돌 4면에 고구려의 성립과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p> <p>4세기 말에 즉위한 광개토 대왕은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였다. 먼저 백제를 공격하여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였으며, 거란을 원정한 후 다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백제와 가야, 왜를 잇는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왜가 자주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의 내물왕이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광개토 대왕은 5만의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이어 광개토 대왕은 금관가야로 후퇴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가야 연맹의 주도 세력이었던 금관가야는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 연맹의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남쪽을 정벌한 광개토 대왕은 만주 정벌에 나섰다. 서북쪽의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반도를 장악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속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켜 두만강 하류 유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활발한 정복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p>

31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36쪽, 49쪽.

32 2007 『한국사』인 ①~④는 '07', 2009 『한국사』인 ⑤~⑫는 '09'로, 2015 『한국사』인 ⑬~⑳는 '15'로 약하여 구분하였다.

	<p>고구려 왜 격퇴: (영락) 9년(399)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손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서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신라 왕)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400)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입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격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하였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 광개토 대왕릉비문 중 일부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활발하게 정복 사업을 벌였고, 왜를 격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p>
<p>③ 07비상 27쪽</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 본문: 광개토 대왕은 만주 지방을 공격하여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신라 내물왕의 요청을 받아 들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며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혔다.</p>
<p>④ 07삼화 30쪽</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성) 본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만주 지역에 대한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하여 거란과 숙신, 동부여를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또한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였다.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광개토 대왕릉비와 중원 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다. 자료록록: 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414년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릉비는 삼국의 정세와 일본의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금석문 자료이다. 비문에는 주몽의 신이한 출생과 건국 이야기, 대무신왕부터 광개토 대왕까지의 계보와 약력,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p>
<p>⑤ 09교학 27쪽</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성)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면서 만든 비석이다. 본문: 광개토 대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바탕으로 만주 지방을 대부분 차지하였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면서 신라와 가야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p>
<p>⑥ 09급성 38, 43, 71쪽</p>	<p>역사현장을 찾아서: 한국 고대 기념비의 효시, 고구려 광개토 대왕릉비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인 414년, 고구려 수도 국내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 자리였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사각기둥 모양의 비석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영원히 전해지길 염원하였다.” 중국 지안에 있는 광개토왕릉비에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부터 광개토 대왕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역사, 대왕의 대외 정벌 활동 등이 적혀 있다. 대왕을 모신 왕릉은 능비 서남쪽의 태왕릉과 동북쪽의 장군총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본문: 광개토 대왕은 강화된 중앙 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마침 중국 북부에서 위세를 떨치던 후연이 약화되고 백제는 내분이 끊이지 않았으며 신라는 백제와 왜의 협공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광개토 대왕은 만주 각지를 정벌하는 한편,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신라를 구원하여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하였다.</p>

	<p>이에 고구려인들은 전통적인 천손족 사상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천하 사방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천하관을 확립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가 진흥왕 순수비, 백제가 북위에 보낸 외교 문서 등은 세련된 한문 문장 실력을 잘 보여 준다.</p>
<p>⑦ 09두산 30쪽</p>	<p>역사 속 인물: 광개토 대왕, 위엄을 사해에 떨치다 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 '광개토 대왕릉비' - 414년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이 이룬 업적을 기리려고 태왕릉 앞에 6m가 넘는 거대한 비석을 세웠다.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릉비의 내용처럼 동북아시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수림왕의 개혁과 함께 국제 정세에 힘입은 바가 컸다. 5세기 이후부터 6세기 말까지 동아시아는 중국의 남북조 국가와 북방 유목 국가 유연, 고구려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부여를 병합하였으며 요동과 북방으로 뻗어 나갔다. 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본문: 광개토 대왕 때는 요동 지역과 만주를 차지하고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왜가 가야와 함께 신라를 침공하자 원군을 보내 격파하였다. 이 무렵 동아시아는 중국 남북조 국가와 북방 민족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고구려는 왕을 태왕이라고 부르고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였다.</p>
<p>⑧ 09리베 33쪽</p>	<p>자료 읽기: 광개토 대왕릉비와 호우명 그릇 자료1 광개토 대왕릉비 (영락)9년(399)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서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400)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북중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하였다. - 광개토 대왕릉 비문 - 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성 지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석으로 높이가 6.39m이고, 사면에는 총 1,775자의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 광개토 대왕은 이를 그대로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혀 놓았다.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대하였고, 남으로는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대국을 건설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p>
<p>⑨ 09미래 26, 27쪽</p>	<p>한국사백과: 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 광개토 대왕릉비 - 고구려인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으로 여겼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강한 국력에 바탕을 둔 고구려인의 자부심이 보인다. 이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과시하였음을 보여 준다. 본문: 광개토 대왕은 남으로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도와 왜군을 물리쳤다. 나아가 백제·왜와 연결된 가야를 공격한 뒤 한반도 남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또한 거란과</p>

	<p>후연 등을 격파함으로써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지배권을 확대한 광개토 대왕은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永樂)'을 사용하여 고구려의 높은 위상을 드러냈다.</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성)</p>
<p>⑩ 09비상 32쪽</p>	<p>고구려의 기제가 담긴 광개토 대왕릉비: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에 광개토 대왕릉비는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높이 6m가 넘으며, 고구려 특유의 웅장하고 힘이 넘치는 필체로 총 44행, 1,775자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추모왕(주몽)의 건국 신화와 함께 광개토 대왕이 북으로는 요동, 남으로는 백제 및 신라와 가야 지역까지 진출하여 백제와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천하관과 팽창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광개토 대왕릉비는 남아 있는 사료가 부족한 고대 국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문 해석을 둘러싸고 한·중·일 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고대사의 발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p> <p>본문: 4세기 말에 즉위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전개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서북쪽으로는 후연을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숙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켜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남부 지방과 두만강 하류 유역까지 차지하였다. 또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신라 내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며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5세기 고구려는 활발한 영토 확장에 힘입어 동북아시아에 위상이 높아졌으며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성 지안 시) 중국은 1982년에 비각을 세워 광개토 대왕릉비를 보호하다가 2004년에 지안 시 일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비석 둘레를 플라스틱 보호판으로 막아 관리하고 있다.</p>
<p>⑪ 09지학 31쪽</p>	<p>본문: 4세기 말에 즉위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대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여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다. 또한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면서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p>
<p>⑫ 09천재 29쪽</p>	<p>활동하기: 동북아시아의 최강자를 자부한 고구려</p> <p>본문: 광개토 대왕 때 적극적인 대외 확장을 추진하였다. 먼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5만의 군사를 신라에 파견하여 신라 영역을 침입해 온 왜를 물리치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방으로도 대규모의 영토 확장 사업을 전개하였다. 거란과 음루(말갈)를 정벌하였으며, 선비족이 세운 후연을 격퇴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고, 이어 부여를 병합하였다.</p> <p>자료1 고구려는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세계관을 부정하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천하를 설정하였으며, 중국과 다른 독자 연호를 사용하고, 왕의 칭호도 중국 황제와 같은 의미를 담은 '태왕', '대왕'이라고 하였다.</p> <p>자료2 영락(광개토 대왕 때의 독자 연호) 대왕의 은혜와 혜택이 하늘에 이르고 대왕의 위력은 사해(모든 세계)에 떨쳤다.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p> <p>사진자료: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성 지안)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것으로 높이가 6.39m의 거대한 비이다.</p>

<p>⑬ 15금성 16, 17, 18쪽</p>	<p>교실열기: 광개토 대왕의 정확한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다. 고구려 지배층들은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광개토)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다는 것(평안)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국가의 지배층들이 정복 전쟁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본문: 5세기 광개토 대왕 때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다. 정리교실: 광개토 대왕(재위 391~412) 만주, 한강 이북 점령, 신라 지원, 가야 공격</p>
<p>⑭ 15동아 14, 20, 21, 22쪽</p>	<p>본문: 광개토 대왕은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또한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캡션: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역사 생각하기: 4세기 말에 왜가 신라를 공격하자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관가야도 고구려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중단원 마무리하기의 자료1: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차 성과 해자를 부수로 …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고구려군 이)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문’- 사료 읽기: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 천제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었다. -‘광개토 대왕릉비문’-</p>
<p>⑮ 15미래 20쪽</p>	<p>사료특독: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옛적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물의 신)의 따님이었다. (광개토 대왕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永樂) 대왕이라 하였다.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사해(四海)에 떨쳤다. 백간(백제)과 신라는 옛적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 »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여긴 고구려인의 인식과 고구려가 천하 사방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본문: 고구려는 강해진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냈는데, 이는 이 무렵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나 충주 고구려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캡션: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성 지안)</p>
<p>⑯ 15비상 15, 25쪽</p>	<p>본문: 4세기 말에 즉위한 광개토 대왕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하였다. 본문: 5세기경에 건립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추모왕의 건국 이야기와 함께 광개토 대왕이 온 세상에 권위를 떨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광개토 대왕이 ‘대왕’, ‘태왕’ 등을 불렀고 이 시기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우며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형성하였다. 캡션: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성)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비석 주위를 보호판으로 막아 관리하고 있다. 자료실: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 태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가록히 여겨 …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릉비와 모두루묘지문에는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이 천신의 후</p>

	<p>손이며 광개토 대왕이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광개토 대왕을 ‘호태성왕’, ‘태왕’, ‘영락 대왕’ 등으로 높여 표현하였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기록하였다. 두 자료를 통해 고구려가 천손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⑰ 15씨마 19쪽	<p>주제탐구: 왕명으로 법률을 제정하다 최근에 발견된 집안 고구려비에는 광개토 대왕이 명을 배려 법률을 다시 정비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보인다. 또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부유한 자라도 함부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사지 말고, 이를 어긴 자가 있으면 관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하고 산 사람은 강제로 무덤을 지키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국왕이 명령을 기초로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하였다. 캡션: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성 지안)</p>
⑱ 15지학 15쪽	<p>본문: 4세기 말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 백제를 압박한 후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고, 북쪽으로는 후연과 거란을 물리쳐 영토를 넓혔다.</p>
⑲ 15천재 21쪽	<p>본문: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국력이 크게 팽창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다. 또 5만 군사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고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을 키우는 역사 읽기: <그림 2> 참조</p>
⑳ 15해남 20쪽	<p>본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천하관을 확립하였다.</p>

먼저 2007·2009 『한국사』의 서술 현황은 전 장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2015 『한국사』에 나타난 광개토왕비 관련 학습자료의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 『한국사』는 앞서 살펴본 교과서보다 전근대사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단원 편제는 다양해졌다. 이에 <표 3>의 내용과 함께 실제 교과서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15 『한국사』는 현행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비의 명칭은 전술한 대로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 광개토 대왕릉비로 동일하다. 둘째, 광개토왕과 비문에 관한 서술상의 용어이다. 첫 번째는 광개토왕의 활동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살펴본 선행 교육과정의 서술과 동일하게 ‘공격’, ‘정복’, ‘격파’, ‘점령’ 등 영토 확

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어 광개토왕의 업적을 평가할 때 사용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는 ⑥에만 나타난다.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두 번째는 광개토왕비가 있는 소재지에 관한 표현이다. 지안(①, ②, ⑥), 지린(④, ⑤, ⑦, ⑨, ⑭, ⑯), 지린 성 지안(⑧, ⑩, ⑫, ⑮, ⑰, ⑲)이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 사용되었던 통꼬우, 통구는 사라졌으며 현재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세 번째 ‘우리’를 강조한 경우는 ⑧의 ‘우리나라’가 있다. 이 용어도 ‘위대한’과 마찬가지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감소하였다.

네 번째는 광개토왕비문의 내용을 소개할 때 기술한 용어이다. 2007 『한국사』에서는 <표 2>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광개토왕이 이룬 영토 확장을 부각하여 무훈을 강조하였다. 2009·2015 『한국사』에서 선행 교육과정에 비해 새롭게 나타난 서술 형태는 정복 활동의 업적을 더욱 확장하여 고구려의 국제적 위치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즉, 행위의 주체가 ‘왕’ 개인에서 ‘고구려’라는 국가로 서술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독자적인 ‘연호’ 사용과 ‘천하관’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독자적 ‘연호’(⑧, ⑨, ⑫, ⑯, ⑲)와 고구려의 ‘천하관’(⑥, ⑦, ⑨, ⑩, ⑫, ⑮, ⑯, ⑲, ⑳)이다. 이 두 용어는 2009 『한국사』(교회사 제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서술상에 새로운 용어가 기술된다는 것은 학습자료로서 사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새롭게 기술된 ‘연호’, ‘천하관’은 비문의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출발한 것이라 하겠다.³³ 고대 국가 중 ‘독자적 천하관’에 관한 『한국사』의 서술은 이 비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고구려의 천하관 관련 내용이

33 비문에 기록된 용어 중 고구려의 천하관에 관해서는 검토 대상 교과서의 서술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천하관에 관한 전체적인 논의는 이 글의 흐름에서 비껴나므로 상세한 검토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관해서는 양기석(1983, 「4~5C 고구려 王者의 천하관에 대하여」, 『역사와 담론』 11), 노태돈(1988,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윤상열(2010, 「고구려 천하관의 형성 배경 연구-지배구조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광(2015, 앞의 글)의 글을 참조 바람.

유일하다.³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형성은 밖으로 정복 활동을 통한 국력 신장과 안으로 새롭게 확장된 토지로 인한 경제력 향상에 어울리는 사상·이념적 기반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구려가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성장해 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다.³⁵ 천하관 형성은 영토 확장으로 인한 백성들의 희생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건국 이야기, 고구려 왕계, 법률 제정에 관한 서술이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④, ⑩, ⑯, ⑰).

셋째, 광개토왕비 관련 학습자료 활용 현황이다. 먼저 광개토왕비 자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료로 수록한 방식은 선행 교육과정과 2007·2009 『한국사』에서 별 차이가 없다. 비만 확대한 사진을 수록하거나 비 옆에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수록하여 비의 크기를 기증하도록 하였다. 다만 선행 교과서에 비해 비문에 기록된 내용을 해석하여 인용한 사례는 증가하였다. 이때의 서술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비문에 기록된 일부 내용을 해석하여 인용만 한 사례(①), 두 번째는 비문 내용을 해석해 직접 인용한 후 본문에 해석을 서술한 경우(②, ④, ⑥, ⑦, ⑧, ⑨, ⑩, ⑫), 이 외는 비문 내용을 근거로 본문 서술로만 구성한 경우(③, ⑤)이다. 비문의 일부 내용을 해석하여 인용한 후 본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 사례는 2009 『한국사』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009 『한국사』의 정치·사회를 포함한 전근대사의 서술 분량이 2007 『한국사』에 비해 증가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넷째, 광개토왕비의 서체에 관한 서술이다. ⑥의 ‘세련된’과 ⑩의 ‘웅장하고 힘이 넘치는 필체’가 있다. 전술했듯이 미술품의 감상후기를 읽는 듯한 서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한국사』의 서술은 근현대사 중심이며 전근

34 노태돈, 1988, 앞의 글(고구려의 천하관에 관해 ‘독자적’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

35 조영광, 2015, 앞의 글, 47~48쪽.

대사 영역의 서술은 정치·사회사 중심이다. 그럼에도 광개토왕비의 서체에 관한 서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서사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살펴본 대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에 초점이 맞춰진 서술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하여 광개토왕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역사상을 정치적 상황 뿐 아니라 고구려의 왕가의 내력, 종교사상,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2007·2009·2015 『한국사』에 나타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현황을 살펴보았다. 영토 확장을 강조하는 서술 형태는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2009 『한국사』부터는 영토 확장 과정을 광개토왕 개인의 행위로만 서술하지 않고 당시의 국제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 점이 선행 교육과정과 다른점이다. 특히 영토 확장으로 강대해진 고구려의 모습을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치환하여 강대함의 범주를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서술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앞서 검토한 셋째 항목의 광개토왕비 관련 학습자료 활용 현황 중 2015 『한국사』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선행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서술되어온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춘 훈적 중심의 서술이며 이를 A 유형이라 칭하겠다(A유형: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둘째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에 초점을 맞춘 서술로 B유형이라고 하겠다(B유형: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셋째는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삼국의 사회 제도를 서술한 형태로 C유형이라 하겠다(C유형: 씨마스). 이때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지는 않고 각 유형별로 1곳씩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유형에서는 금성출판사, B유형은 천재교육, C유형에서는 씨마스의 서술 현황을 교과서에 수록된 실제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A유형의 금성출판사에서 광개토왕비가 수록된 단원은 고대 국가의 지배층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대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곳으로 ‘주제 3. 중앙 집권 국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삼국과 관련된 학습자료를 고르게 배치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같은 단원에 기재된 삼국 관련 학습자료는 동일한 시기가 아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비는 5세기, 신라의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6~7세기, 백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지도는 4세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의 각 국가별 상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학습자료를 선정해 삼국의 전성기를 소개하는 구성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2015 금성출판사의 광개토왕 관련 서술은 기존의 서술 형태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1>의 좌측 교실 열기에 ‘광개토 대왕의 정복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고대 국가의 지배층들이 정복 전쟁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발문이 있다. 이 발문은 정복 전쟁을 일으킨 행위의 주체가 국왕 개인이 아니라 고구려의 지배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고대의 왕토사상과는 다소 다른 관점의 기술로서 국가는 국왕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서의 국가’라는 점을 나타내고자 의도가 담긴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광개토왕과 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고착화된 광개토왕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러한 서술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은 효과적인 서술이라고 판단된다.³⁶

<그림 2>는 B유형의 천재교육에 기재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으로 고구려를 비롯하여 삼국의 독자적 천하관을 설명하고 있다. 천재교육은 2009 『한국사』에서는 본문의 서술을 통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설명했다면 2015 『한국사』에서는 비문에 기록된 문자를 확대하여 학습자료로서 광개토왕비의 역사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구성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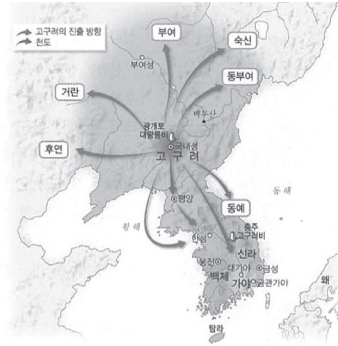
광개토왕비만 수록할 경우 비석의 외관에만 시선이 집중되지만 <그림 2>의

36 최준채 외, 2020, 『한국사 교과서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29쪽.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국력이 크게 팽창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다. 또 5만의 군사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고 한반도 남부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 장수왕 때에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427)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433)을 맺어 맞섰지만, 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여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 등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 5세기 고구려의 영토 확장



생각을 키우는 역사 읽기

삼국의 독자적인 천하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하 사방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천하관을 내세웠다. 고구려는 스스로를 천손 국가라 주장하며 백제와 신라를 복속국처럼 여겼다. 이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영락과 같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왕의 칭호도 중국 황제와 같다는 의미를 담아 '태왕' 또는 '대왕'이라고 불렀다. 고구려는 이와 같은 독자적인 천하관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 여러 나라와 폭넓게 교류하며 발전하였다.

한편, 백제와 신라도 나름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백제는 '대왕'이라는 군주 칭호를 사용하고 마한의 소국 일부를 남쪽으
 랍가라는 뜻의 남만으로 불렀으며, 탐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신라는 주변 세계를 평정하
 겠다는 염원에서 황룡사에 목탑을 만들었고, 울주 천전리 각석과 마운령비에서 각각 '대왕',
 '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 광개토 대왕릉비(193년 촬영, 중국 지린성 지안)

그림 2 2015 천재교육(21쪽)

천재교육의 활용 방식과 같이 비문에 기록된 내용을 확대하여 소개하면 비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당시 고구려의 영토 확장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지도를 함께 기재하여 고구려의 강대함을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역사지도를 통해서만 당시 왜의 동향은 전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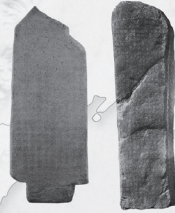
〈그림 3〉은 C유형의 씨마스에 수록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현황이다. 씨마

**집중
주제
탐구**

비석과 목간으로 본 삼국의 사회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고구려 왕명으로 법률을 제정하다

최근에 발견된 집안 고구려비에는 광개토 대왕이 명을 내려 법률을 다시 정비 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보인다. 또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부유한 자라도 함부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사지 말고, 이를 어긴 자가 있으면 판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하고, 산 사람은 강제로 무덤을 지키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국왕의 명령을 기초로 구체적인 법률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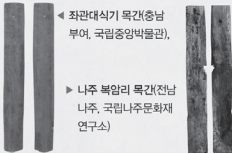


▲ 집안 고구려비 (중국 지린성 지안)
▲ 광개토 대왕릉비 (중국 지린성 지안)

백제 목간에 나타난 백제의 사회 제도

충남 부여 쌍북리에서 발견된 좌관대석기 라는 목간에는 국가가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 주고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목간에 적혀 있는 이자를 계산한 결과, 당시 이자율이 최저 33%에서 최고 50%였음이 밝혀졌다. 고구려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한편, 전남 나주 복암리에서 발굴된 목간을 통하여 백제가 7세기 무렵 농민의 토지 소유 현황과 호구 수, 곡물 수확량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조세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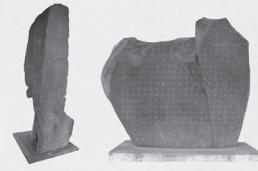


◀ 좌관대석기 목간(충남 부여, 국립중앙박물관),
▶ 나주 복암리 목간(전남 나주,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신라 각종 법률을 제정하다

법종왕 때 건립한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는 죄를 지은 촌의 주민을 처벌한 내용이 보인다. 신라는 새로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지방 주민과 국가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일반 백성과 차별하여 노비와 같이 대우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또 진흥왕 때에 건립한 단양 신라 적성 비에는 신라가 오늘날 충북 단양의 적성을 차지한 후, 공을 세운 적성 사람들에게 법률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상으로 준 기록이 있다.



▲ 울진 봉평리 신라비 (경북 울진)
▲ 단양 신라 적성비 (충북 단양)

1. 삼국이 다양한 법률과 사회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 보자.
2.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삼국 사회의 모습을 발표해 보자.

그림 3 2015 씨마스(19쪽)

스는 법률 제정에 관한 기록이 있는 고대의 문자자료를 활용하여 삼국의 사회 제도를 탐구 주제로 구성하였다.³⁷ <그림 3>의 상단에서부터 순서대로 고구려

의 법률 제정, 신라의 법률 제정, 백제의 사회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씨마스에서 광개토왕비와 함께 기재한 금석문은 집안 고구려비이다.³⁸ 2012년 발견된 이 비는 2013년 한국고대사학회의 홈페이지에 기재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³⁹ 광개토왕비, 충주고구려비와 함께 고구려 당대의 정치·사회 모습을 담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집안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수묘비로 알려져 있다.⁴⁰ 특정 묘주에 관한 정보는 없으며 수묘제 규정 시행에 따른 조치가 기술되어 있다. 이 비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수묘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비의 도입부에는 건국 신화와 후대 왕실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광개토왕비도 마찬가지이다.⁴¹ 수묘역을 보존·유지하기 위한 법령 선포의 매체인 것이다.⁴²

법률 제정에 관한 유물자료로는 삼국 중 신라의 봉평리 신라비, 단양 신라적성비가 교과서에 자주 소개되었다. 반면 백제와 고구려의 법률 제정에 관한

-
- 37 『한국사』뿐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역사②』에는 6종 모두 광개토왕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동일한 주제(광개토왕의 업적·천하관)로 기술되어 있다. 『역사②』 미래엔은 유일하게 대왕의 업적 외 건국 과정, 무덤 관리인과 그에 관한 법령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엔에 기술된 무덤 관리인과 그에 관한 법령은 2015 씨마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령(수묘제)을 의미한다.
- 38 광개토왕비가 집안고구려비와 더불어 당대의 사회상(수묘제 관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연구자들마다 논의가 분분하여 통설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 39 이영호, 2013, 「集安 高句麗碑의 발견과 소개」, 『한국고대사연구』 69.
- 40 집안 고구려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守墓碑뿐 아니라 律令碑, 敕令碑, 定律碑, 勅令碑, 守墓發令碑, 守墓律令碑, 守墓定律碑, 告誡碑, 警告碑, 묘상비, 교령비, 정률비 등 다양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강진원, 2016,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83.
- 41 집안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序頭의 서술 내용은 여호규의 글을 참조 바람. 여호규, 2015, 「集安高句麗碑와 광개토왕릉비 序頭의 단락구성과 서술내용 비교」, 『신라문화』 45.
- 42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앞의 책, 73쪽.

유물자료는 그동안 『한국사』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9 『한국사』(금성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에서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 목간을 소개하면서 백제에서 이자율이 제도적으로 문서화되었음을 서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5 『한국사』에서는 집안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에 공통으로 기록된 법률 내용을 기술하여 고구려도 백제와 신라처럼 사회 제도가 존재했음을 사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자자료는 당대의 사회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국사』의 광개토왕비 관련 학습자료와 서술 내용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변천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광개토왕비의 명칭이다. 미군정기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광개토왕비’로 사용하였고 제4차 교육과정(1983년 발행본)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광개토 대왕릉비’로 사용되고 있다. 비의 명칭이 변경된 배경을 명시한 곳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 다만 교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교과서 편수 자료집에 수록되면서 현행 교육과정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여진다.⁴³

둘째, 광개토왕과 비문 관련 서술상에 나타난 용어이다. 첫 번째 광개토왕의 활동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는 정복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 전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었다. 고구려에 침입한 나라는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서는 ‘왜’가 유일하다. 고대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은 타국을 침략하여

43 교과서 편수용어는 2003년 3월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2015년 7월 편수 용어와 표준국어대사전 용어, 문화재청 문화재명을 비교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복 전쟁을 통해 탈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위였다. 이미 광개토왕비가 건립된 전후 시기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영역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은 타국을 침략하여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으로만 기술하여 그의 정복 활동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복 활동은 자국 백성의 희생도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이 현행 집필 환경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광개토왕의 업적에 대해 논의를 새롭게 하지는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통해 비문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2015 『한국사』의 광개토왕비 관련 학습자료의 활용은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비가 있는 소재지는 여러 지명이 표기되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현재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우리’를 강조하는 표현도 점차 줄어 현행 교육과정에는 기술된 곳이 없다. 네 번째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내용은 개정이 이루어질수록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처음 본문의 서술에 나타나기 시작한 용어는 ‘연호’, ‘친하관’이다. 이와 더불어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기존에는 영토 확장에 초점이 맞춰진 서술이었으나 수시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변화된 서술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학습자료 활용 현황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광개토왕비 자체만 수록하였으며 본문에는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에 관한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석 바로 옆에 성인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자료가 수록되었다. 이는 광개토왕비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비문에 기록된 문자를 확대해 보여주며 핵심 용어를 지명하여 제시하는 방식도 등장하였다. 또한 수모제와 관련된 내용을 부각하여 당시의 법령제를 소개하는 등 기존에 비해 다양한 구성 방식을 구현하였다.

넷째, 광개토왕비의 서체에 관한 서술이다. 미술비평을 하는 듯한 표현은 변함이 없다. 다만 전근대사 서술 분량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도 서체에 관한 서술은 꾸준히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새로운 구성 방식으로는 그동안 광개토왕비는 정치사를 다루는 단원에 주로 수록되어 영토 확장을 강조하는 서술 형태였으나 2015 『한국사』에서는 종교·사상사에서 자세히 기재되기도 하였다. 이때 서술 흐름은 비문에 드러난 고구려의 건국신화 및 천하관을 고대 여러 국가의 건국 이야기와 천신 신앙과 함께 서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한국)와 직접 관련된 현존하는 고구려 관련 유물자료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이다. 역사교과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수록되고 있는 유물은 (a) 광개토왕비, (b) 충주고구려비, (c)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이다. 이 세 유물은 저마다 최고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a)는 문헌자료에서는 알 수 없는 고구려 및 당시 동아시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금석문이다. (b)는 고구려 금석문으로서 유일하게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 출토되었다. (c)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최고(最古)의 고구려 불상이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 불상이다. 또한 제작국과 제작자가 분명하다. 이 외에도 고구려와 신라의 정치적 관계를 보여주는 호우명이 있다.

이 중에서 한일 고대관계사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사료는 광개토왕비이다. 광개토왕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는 사료이다. 이는 광개토왕비가 고구려의 역사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여러 나라 및 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한국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서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광개토왕비를 둘러싼 당시의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추구하고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_____,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4]」.
_____, 2011a,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4]」.
_____, 2011b,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_____, 2011c,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
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교육부, 1992,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_____,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보도자료」, 교육과정정책과.
_____, 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 7]」.
문교부, 1981,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4」.
_____, 1988, 「문교부 고시 제88-7호 별책1」.
최준채 외, 2020,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단행본

-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 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삼인.
_____, 2019,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佐伯有清, 1974,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논문

- 강진원, 2016,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83.

- 高光儀,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고구려발해연구』 45.
-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요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 김영하, 2012,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해석-신묘년기사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66.
- 김현숙, 2013,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남재우, 2011,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한국고대사연구』 61.
- 남한호, 201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그 특징-일제강점기 분야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16.
- 노태돈, 1988,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 孫煥一, 2002, 「高句麗 廣開土大王碑 隸書가 新羅 書體에 미친 影響」, 『고구려발해연구』 13.
- 신선혜, 2019, 「제4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大邱史學』 136.
- 여호규, 2015, 「集安高句麗碑와 광개토왕릉비 序頭의 단락구성과 서술내용 비교」, 『신라문화』 45.
- 연민수,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 劉永智·徐日範, 1996, 「好太王碑의 發見과 釋文研究」, 『고구려발해연구』 2.
- 윤선태, 2014, 「가야加耶,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1』, 사계절.
- 이영식, 2017, 「임나일본부의 허상과 가야제국」, 『한국고대사 2』, 주류성.
- 이영호, 2013, 「集安 高句麗碑의 발견과 소개」, 『한국고대사연구』 69.
- 이해영, 2006, 「DBAE 구성영역을 바탕으로 한 국사 교과서 미술사 내용 서술 분석」, 『역사교육』 98.
-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 _____,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 56(1).
- 전진국, 2019, 「『任那興亡史』의 논지와 학술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4.

- 鄭杜熙, 1979, 「廣開土王陵碑文 辛卯年 記事의 再檢討」, 『역사학보』 82.
- 정선화, 2021, 「『日本史B』 교과서의 廣開土王碑 관련 서술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159.
- 鄭孝雲, 2007, 「『새역사교과서』와 任那日本府」, 『일어일문학』 35.
- _____, 2021, 「가야사의 듀얼리즘과 연구사의 스펙트럼」, 『한일관계사연구』 71.
- 조영광, 2015,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대외 관계와 고구려 천하관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9.
- 차미희, 2007, 「4차 교육과정기(1982~89) 중등 국사교과서의 내용상 특성」, 『열린교육연구』.
- 한철호, 2011,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교육과정 개정 일정의 문제점」, 『한국사연구』 153.
- 홍승우, 2016, 「고구려 올령의 형식과 제정방식: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사례 분석」, 『목간과문자』 16.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 관련 서술 변천

정선화

이 글은 미군정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빠지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 광개토왕비 관련 서술 내용과 학습자료의 활용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본문에 기술된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영토 확장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수묘인 관련 법률 제정 등 비문에 기록된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은 영토 확장의 주체를 광개토왕 개인으로 기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위대한’ 군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영토 확장을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과 연결하여 동아시아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별 서술이 아니라 주제별로 본문 서술이 이루어지면서 서술 분량이 대폭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한국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문에 기록된 고구려의 영토 확장은 광개토왕 개인의 흔적을 넘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동

아시아 속에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찾기도 하지만 정복 전쟁의 이면을 고찰하도록 이끄는 서술도 나타났다.

그동안 광개토왕의 무훈을 강조하던 서술 경향에서 비문에 기록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광개토왕비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하는 집필의 의도로 파악된다. ‘위대한’ 군주상에서 정복 전쟁이 가져온 실상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 광개토왕비, 학습자료, 서술 변천, 교육과정, 천하관

ABSTRACT

A Transformation of the Description of King Gwanggaeto Stele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Jeong Sunhwa

This article looked at King Gwanggaeto stele descriptions and changes in the use of learning materials, which are written from the syllabus to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ontents described in the text focused on the conquest activities of King Gwanggaeto until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After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program in 2009, the contents recorded in the inscriptions began to be dealt with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territory, Goguryeo's independent Cheonhagwan, and the enactment of laws related to the tombs.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7th curriculum were marked by the tendency to describe the subject of territorial expansion as King Gwanggaeto's individual. He was also described as a "great" monarch. From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9, Goguryeo's international status in

East Asia was described by connecting territorial expansion with Goguryeo's independent Cheonhagwan.

In particular,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amount of descriptions was drastically reduced as Topic-specific description were made by subject rather than by country. Nevertheless, it is worth noting that new content has emerged, which was not covered in the existing “Korean History. The expansion of Goguryeo's territory recorded in the inscription goes beyond the individual admonitions of King Gwanggaeto and finds Goguryeo's international status in East Asia at a national level, but there was also a description that led us to consider the other side of the conquest war.

The fact that the narrative trend, which has emphasized King Gwanggaeto's military service, began to deal with various contents recorded in the inscription is understood to be the intention of writing to clearly reveal the historical value of Queen Gwanggaeto. It is also thought to be a new attempt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reality brought about by the War of Conquest in the “Great” Monarchy.

Keywords: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Korean history textbook, King Gwanggaeto stele, Learning materials, narrative transformation, Curriculum, world view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울릉도 목재 반출과 채무 상환을 둘러싼 조일 교섭

박한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개척사 수행원의 시마네현 표류와 금전 대부 문제
- III. 일본인 인부의 채무 상환 추구하고 협상 타결
- IV. 울릉도 목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가이 군지의 활동
- V. 맺음말



I. 머리말

1882년 6월 15~25일까지 11일 동안 울릉도감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섬 현황을 조사하였다.¹ 그가 남긴 『울릉도감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에는 조선인의 지역별 출신과 인원, 어채와 벌목 등의 경제활동, 주거 가능 장소와 포구 등의 지리정보, 침입한 일본인 동향 등이 담겨 있다. 그는 7월 19일 고종(高宗)에게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² 이 자리에서 이규원은 “한 치의 땅이라도 조종(祖宗)의 강토”이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고종은 울릉도 개척에 속히 착수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³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임명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후속 조치였다.

1883년 4월 22일 고종은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 김옥균(金玉均)을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하고 포경(捕鯨) 업무를 겸하도록 명하였다.⁴ 여기서 동남제도는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 연안 도서(島嶼)의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보다 4일 전 일본에서는 도쿄부지사(東京府知事)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가 일본인들이 멋대로 울릉도(蔚陵島)에 항해하여 상륙하지 말라는 고시를 발표하였다.⁵ 이것은 예조판서 심순택(沈舜澤)이 1881년 울릉도에

* 투고: 2021년 7월 13일, 심사 완료: 2021년 8월 4일, 게재 확정: 2021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1-기획연구-4).

1 이 글에서는 개항 이후 조선과 일본 양국의 사료를 활용하는데, 본문에서 서술하는 날짜는 모두 양력으로 환산하고 통일하여 서술한다. 각주에 인용하는 조선 자료는 양력 날짜를 병기하였다.

2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48~153쪽; 신용하, 2020,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중』, 동북아역사재단, 70~74쪽.

3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6月 5日(양 1882. 7. 19.).

4 『承政院日記』 高宗 20年 3月 16日(양 1883. 4. 22.).

불법으로 도항하여 벌목한 일본인 7명의 퇴거를 요구하는 조회를 외무성(外務省)으로 보낸 이후 일본정부 내 논의를 거쳐 나온 지방관의 고시였다.⁶ 울릉도에 도항하여 목재와 해산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일본인들이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조선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감독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 문제를 전담할 인물로 김옥균을 개척사에 임명하였다. 1883년 5월 초부터 김옥균이 조만간 일본에 건너올 예정이란 소식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⁷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捕鯨使)’ 신분으로 6월 초에 김옥균이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으며 조만간 도쿄에 건너온다는 보도도 있었다.⁸ 김옥균은 울릉도의 풍부한 물산을 개발하여 조선정부의 재원(財源)을 삼겠다는 목적에서 일본에 건너가 현지인들과 거래를 시도하였다. 그는 “이번에 개척사직에 임명되어 동남 제도(諸島)의 개척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⁹ 그는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까지 왕

5 「東京府諭達」, 『郵便報知新聞』, 1883년 4월 18일, 1면 1단. “北緯 37度 30分, 西經 8度 57分(東京本丸 天守臺에서 기산)에 위치한 日本稱 松島(一名竹島), 朝鮮稱 蔚陵島는 멋대로 도항. 상륙하지 말 것. 이 취지로 유달함”. 1883년 3월 1일 태정대신(太政大臣)은 내무경(內務卿)에게 「내달안(內達案)」을 내렸는데, 내무성은 각 지방관청에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은 1877년 발포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일본 측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도쿄 부를 비롯하여 시마네현(島根縣)에서도 해당 지시를 고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는 울릉도 도항 금지 고지가 나간 이후 울릉도에 목재를 벌채하러 가는 일본인들의 도항 문제로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이 요시카와와 교섭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도쿄부지사의 고시를 제시하였다.

6 「辛巳禮曹判書以禁斷蔚陵島伐木事抵外務卿書」, 『同文彙考』 卷4 附編續 邊禁二; 禮曹判書 沈舜澤 → 外務卿 井上馨 書翰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 卷1; 『日本外交文書』 卷14, #160 附屬書1 甲號, 387~388쪽.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에는 필사본 서한에 날짜가 없으며, ‘辛巳六月’은 외무대보 우에노 가케노리(上野景範)가 외무2등속 소에다 세쓰(副田節)에게 보낸 1881년 8월 14일 공문 제41호 끝에 별도로 주기가 된 문구이다. 이와 달리 『同文彙考』에는 ‘辛巳年五月’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작성일은 ‘辛巳年五月’로 보려 한다.

7 『朝野新聞』, 1883년 5월 18일, 1면 4단.

8 『時事新報』, 1883년 6월 18일, 2면 4단.

복하면서 목재를 운반할 선박과 인부를 고용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김옥균은 같이 데려간 백춘배(白春培)에게 “울도(蔚島) 목재(木料)의 건을 경영”하도록 지시하였다.¹⁰ 백춘배는 개척사의 실무 담당자로 활동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다.¹¹ 이광린은 조일 양국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김옥균이 개척사로서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향후 외교현안으로 비화한 과정을 정리하였다. 금병동은 갑신정변 발발 이전부터 일본을 왕래한 김옥균의 생애 전반을 일본 곳곳에 산재한 자료를 조사, 이용하여 치밀하게 복원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와 관련해서는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清成)에게 보낸 김옥균 서한을 소개하였으며,¹² 고베에서 발생한 울릉도 목재 소유권 관련 소송을 『조야신문(朝野新聞)』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박은숙은 동남제도개척사의 활동 배경이 울릉도·독도에서부터 동남 연안의 섬과 제주도에 걸쳐 있었으며, 개척사는 만국공법(萬國公法) 체제 안에서 조선의 영토·영해권을 확실히 하며 그 안에서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옥균이 도일할 때 그가 주관하여 제작하고 휴대했던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시미즈 미쓰노리(清水光憲)가 편찬한 것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

9 「井上外務卿金玉均對話筆記摘要」, 『韓國借款關係雜纂』 卷1(JACAR Ref. B04010719200). 이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김옥균의 차관 교섭과 관련하여 소개된 적이 있다.

10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卷1(이하 『日案』), #621 附「金玉均隨員白春培供辭」, 298쪽.

11 李光麟, 1986, 「金玉均의 「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使」 任命에 대하여」,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琴秉洞, 2001, 『增補新版 金玉均と日本』, 東京: 綠蔭書房; 박은숙, 2012,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울릉도·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36.

12 김옥균 서한은 요시다 기요나리 관계문서를 번각한 자료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1884년이라는 연도 외에 일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울릉도에 나온 ‘비류(匪類)’란 단어와 본문에서 다루는 가이 군지 관련 기록의 ‘난민(亂民)’이란 표현을 볼 때 덴주마루 사건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吉田清成關係文書』 卷3(京都大學文學部 日本史研究室 編, 京都: 思文閣出版, 2000), 296쪽.

장된 「조선여지도(朝鮮輿地圖)」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에 담긴 김옥균의 영토수호 의식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읽어냈다. 세 연구자는 조일 양국의 외교문서와 신문 등을 활용하여 동남제도개척사로서 김옥균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며 활동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동남제도개척사 활동에 접근할 때 『구한국외교문서: 일안(舊韓國外交文書: 日案)』과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처럼 활자로 간행된 외교문서를 활용하였다. 김옥균의 인식과 활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 목재를 반출한 선박과 고용 인부, 반출 목재의 수량, 이들과 채무 문제로 송사를 벌였던 종사관 백춘배와 가이 군지(甲斐軍治) 등 개척사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까지 상세히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¹³ 개척사 업무는 김옥균이 고용한 인물들이 권한을 위임받았던 만큼 이들이 시기별로 울릉도와 일본 현지를 왕래하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남제도개척사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밀항, 불법적인 목재 반출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1880년대 초중반 울릉도를 왕복한 덴주마루(天壽丸)와 반리마루(萬里丸)가 일본으로 실어 간 목재의 반환과 소유권 문제를 두고 발생한 분쟁 양상을 다룬 연구가 대표적이다.¹⁴ 덴주마루는 조선과 일본, 반리마루는 조선과 일본, 미국, 독일이 목재의 소유권과 처분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분쟁 사례였다. 양국이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소송의 전개과정과 결말을 복원하였는데, 반리마루 사례는 연구자마다 동일한 자료를 반복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분석을 통해 울릉도 목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당사자가 어

13 백춘배, 탁정식(卓挺植), 이의고(李誼果)와 김옥균의 관계와 약력을 소개한 대중서가 나왔으나, 울릉도 목재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은숙, 2011,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너머북스, 263~270쪽.

14 송병기, 2010, 앞의 책; 박성준, 2014,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東北亞歷史論叢』 43; 박한민, 2020, 「1883년 덴주마루(天壽丸)의 울릉도 목재 불법반출과 조일 간 반환 교섭」, 『史叢』 99.

떠난 입장에서 사안에 접근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울릉도 목재의 일본 반출 문제에 깊숙이 관여한 동남제도개척사와 관련하여 새 자료를 발굴, 활용하여 개척사 수행원들의 활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주목한 개척사 수행원은 종사관 백춘배와 고용인 가이 군지, 김우성[金祐誠, 별칭 김화원(金花園)], 양재문(梁在文)이다. 이들의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흩어져 있다.¹⁵ 이 자료들은 미간행 자료로, 기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 여기에는 기간행된 외교문서 자료집에 빠져 있는 계약서 원본과 재판 조서(調書), 진술서와 청원서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백춘배와 가이 군지 등 개척사 김옥균을 수행한 인물들의 활동, 울릉도에 6회에 걸쳐 왕복하면서 목재를 고베로 운반한 일본 선박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개된 송사(訟事)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입헌정당신문(日本立憲政黨新聞)』은 ‘공판방청필기(公判傍聽筆記)’를 연재하면서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여기서는 당시 발행된 여러 신문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울릉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울릉도 목재 반출에 관여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지 규명할 수 있다. 변론과 선고 과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간행 자료를 통해서도 동남제도개척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인 조일 양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이 군지 관련 자료로는 울

15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 朝鮮國ノ部』卷4(이하 『救助雜件』, JACAR Ref. B12081771700); 『山口縣平民内田徳次郎外一名ヨリ朝鮮政府代人白春培ニ對スル職夫雇賃請求一件』(『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卷29, 金容九編, 亞細亞文化社, 1995 수록. 이하 『職夫雇賃請求』, 영인본은 『史料叢書』29권의 쪽수 병기); 『神戶港ニ於テ日本形船万里丸朝鮮國蔚陵島ヨリ搭載ノ材木差押一件』(JACAR Ref. B10074439400. 이하 『材木差押一件』); 『甲斐軍治索債案件』(奎26295, 이하 『索債案件』).

릉도로 도향한 일본 선박의 명칭과 횡수, 일본으로 운반해 간 울릉도 목재의 수량 등을 상세히 복원할 수 있다. 새 자료의 활용을 통해 울릉도 목재 반출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남제도개혁사 김옥균과 수행원들의 활동, 채무 상황 문제를 둘러싼 조일 간 교섭 전말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개혁사 수행원의 시마네현 표류와 금전 대부 문제

1885년 1월 12일 시마네현령(島根縣令) 후지카와 다메치카(藤川爲親)는 외무성으로 「조선인 취급 방법 문」을 보냈다.¹⁶ 이 문서에는 울릉도에서 강원도 평해(平海)로 도향하려다가 폭풍우를 만나 시마네현(島根縣) 오키노쿠니(隱岐國) 치부군(知夫郡) 비타무라(美田村)로 표류한 조일 양국민의 근황이 담겨 있다. 표류해 온 이들은 전년 12월 5일 울릉도에서 출항하였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하여 표류하다가 이틀 후 시마네현에 도착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선인은 김우성과 양재문이다. 김우성은 자신을 김화원(金花園)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강원도 고성 화원촌이 고향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표류했다는 소식은 시마네현에서 간행된 지역신문에서도 보인다.

근래 조선인 2명이 마쓰에(松江)에 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보았다. 전적으로 두려운 자도 무엇도 아니며 불쌍한 모습(憫然)이었다. 한 사람은 동국(同國) 강원도 고성(高城) 화원촌(花園村)의 김우성(金裕誠, 20세), 한 명은 같은 마을 양재문(梁在文, 33세)이었다. 작년 동국의 영토(同國領-조선령, 번역자) 송도(松島-울릉도, 번역자)를 개간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옮겨 감과 동시에 우리나라 각지에서도 이 지역으로 옮겨 가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후 사무관(事

16 乾第19號 1885년 1월 12일 島根縣令 藤川爲親 → 外務卿代理 外務大輔 吉田清成 「朝鮮人取扱方之義伺」, 『救助雜件』.

務官)의 연락이 닿지 않았고, 미곡(米穀)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도 목숨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위의 2명을 합쳐 12명을 한 번에 데리고 해당 섬을 뒤로하고 닻을 풀었다. 그 사이에 여러 차례 고난을 맛보다가 이윽고 오키노쿠니(隱岐の國) 치부리우라(知夫里浦)에 표착하였기 때문에 결국 마스에 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當) 경찰서에서는 조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¹⁷ (밑줄은 인용자)

위 기사에 나오는 ‘김유성’은 김우성의 오기(誤記)이다. 양재문의 성명 표기는 동일하다. 조선령 울릉도를 개간하기 위해서 도향한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섬 안에 식량이 부족하여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던 정황을 기사에서 읽을 수 있다. 조선인 2명과 같이 표류한 일본인은 시마네현 이즈모노쿠니(出雲國) 시마네군(島根郡) 다무라 쇼타로(田村正太郎)를 비롯하여 모두 11명이었다.¹⁸ 아마구치현(山口縣) 출신이 8명, 시마네현 출신이 2명, 도야마현(富山縣) 출신이 1명으로 아마구치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20대가 4명, 30대가 4명, 40대가 2명이었다. 이들은 1884년 4월 동남제 도개척사 종사관 백춘배에게 고용되어 울릉도로 도향하였고, 같은 해 5월 상순부터 벌목에 종사하던 인부(職工夫) 70여 명 가운데 일부였다.¹⁹ 쇼타로는 이들의 총대(總代) 역할을 맡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직부부장(職夫部長)이란 직책을 맡았다. 그가 향후 고베현령(神戸縣令) 우쓰미 다다가쓰(内海忠勝)에게 제출한 청원서 관련 증빙문건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울릉도 내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식량이 떨어져 궁핍한 상황에 놓였다. 식량을 구하기 위

17 「朝鮮人來松」, 『山陰新聞』, 1885년 1월 6일 2면, 3~4단.

18 다무라 쇼타로와 다무라 켄에몬은 부자지간이다. 성(姓)만 표기할 경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문 안에서는 다른 일본인과 달리 이름인 쇼타로와 켄에몬으로 표기한다.

19 内田徳次郎・田村正太郎「歎願書」,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225쪽).

해서 인부 10명과 함께 선박을 만들어 강원도 평해군에 다녀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바로 김화원, 즉 김우성이었다. 계약서 작성 시점은 1884년 12월 5일이었다. 한성에서 한창 갑신정변이 발발하여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와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도성에서 발생한 정치적 변동 소식을 속히 접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조선 측은 개척사 수행원 대리로 개척사무소(開拓事務所)를 맡고 있던 김화원, 일본 측은 쇼타로와 다나카 고로지(田中五郎治)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고용 임금은 350엔으로 정하였다.²⁰ 하지만 울릉도에서 타고 나간 배가 표류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쇼타로는 고베(神戸)로 향하고, 나머지 인부들은 귀향하였다. 문제는 시마네현에 잔류한 조선인 2명이었다. 원래대로라면 표류한 조선인을 나가사키현청(長崎縣廳)과 부산영사관을 경유하여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김우성은 고베에 재류하고 있는 개척사 종사관 백춘배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 보기에 “통상 표류인과도 다른 사정이 있으므로” 이들을 백춘배 쪽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지를 판단해서 알려달라고 외무성에 문의하였다. 외무성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조선인들을 효고현으로 호송하고, 청원했던 대로 고베에 체류하는 백춘배에게 인도하라고 회신하였다.²¹ 양재문의 경우 호송하는 순서를 붙여 나가사키(長崎)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된다.²²

하지만 이것으로 조선인의 시마네현 표류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김우성은 시마네군 신자이모쿠초(新材木町)에서 체재하는 동안 다무라 젠에몬(田村善衛門)에게 자금을 빌렸다. 이때 젠에몬에게 균용총 1정을 담보물로 맡겼다. 젠에몬은 쇼타로의 부친이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일단 총기를 담보로

20 「歎願書」附屬 第3號「定約證」,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235~236쪽); 「定約記」, 『索債案件』. 후자에 실린 계약서가 정본으로, ‘東南諸島開拓使事務所印’이 찍혀 있다.

21 1885년 1월 23일 발송 「局議」 및 「電報指令案」, 『救助雜件』.

22 「朝鮮人」, 『山陰新聞』, 1885년 1월 26일, 3면 1단; 1886년 2월 10일 島根縣 大書記官 妻木狷介 → 外務大臣 井上馨 「朝鮮人軍用銃ノ義ニ付上申」, 『救助雜件』.

잡기는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 일본 국내의 「총포단속규칙」에 저촉될 수밖에 없었다. 빌려준 자금도 돌려받아야 하였다. 따라서 켄에몬은 조선인이 맡긴 총기를 담보물로 유치하고 있다고 마쓰에경찰서(松江警察署)에 신고하였다. 청원서 제출 날짜는 1886년 1월 6일이었다. 이 내용을 전달 받은 시마네현청의 쓰마키 겐스케(妻木隼介) 서기관이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공문을 보내 이 안건의 처리 방법을 문의하였다.²³ 침부된 켄에몬 청원서에는 조선인 2명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표류하여 자신의 집까지 오게 된 경우, 현지에서 체재하는 동안 우편료, 전신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의 전체 합산 내역이 들어 있다. 김우성은 이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켄에몬에게 휴대하고 있던 서양 군용총 1정을 담보로 맡기고 18엔(圓) 36센(錢)을 빌렸다. 귀국하고 나서 신속히 송금할 터이니 그때까지만 이 총을 맡아달라고 약속했던 것 같다.²⁴ 하지만 현지를 떠난 후 김우성과의 연락은 끊어졌다. 조선에서도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결국 시마네현청은 “본방에는 아직 그 나라(-조선)에서 주차하는 영사가 없으므로 본 현에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김우성이 맡기고 간 총기의 처리 건을 외무성에 문의하였다.²⁵ 문건 내용을 검토한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다.

본건에서 담보로 한 군용총은 아직 양도 절차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다무라 아무개(田村某)의 소유로 하여 처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산 주재 영사를 경유하여 김 아무개를 조사하고 금액 변제를 하든가, 또는 해당 저당 물품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향은 가능하다.²⁶

23 「朝鮮人軍用銃ノ義ニ付上申」, 『救助雜件』.

24 1886년 1월 6일 田村善衛門 → 松江警察署長 「上申書」, 『救助雜件』.

25 「朝鮮人軍用銃ノ義ニ付上申」, 『救助雜件』.

26 「朝鮮人軍用銃ノ義ニ付上申」附箋 『救助雜件』.

담보로 맡긴 총을 김우성이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양도증을 써준 적도 없으므로, 켜에몬에게 김우성 소유 총기를 임의로 처분할 법적 권리는 없었다. 일단 원산 주재 일본영사를 경유하여 해당 조선인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금전 반환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양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외무대보(外務大輔)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는 원산영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대리하던 오쿠 기세이(奥義制)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김우성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덕원부(德源府)에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²⁷ 여기서 아오키가 켜에몬의 청원과 관련하여 추신으로 “울릉도 인부의 돈벌이를 운운한 건의 취지는 덕원부사(德源府使)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선인 2명이 일본으로 표착하여 현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후 갚지 않았던 경위는 알리되, 이들과 같이 표류한 일본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울릉도까지 갔던 일은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일본인 인부들이 비통상구(非通商口)였던 울릉도에 건너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조선정부에서 조약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무성 공문을 접수한 오쿠 원산영사 대리는 3월 28일 덕원부사 정현석(鄭顯碩)에게 강원도 고성 화원촌에 거주하는 김우성과 양재문이 시마네현으로 표류한 경위, 김우성이 켜에몬에게 18엔 36센을 잠시 빌렸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은 채 무소식이란 사실, 휴대한 소총 1정을 저당물로 맡긴 적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 소총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해도 좋을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였다.²⁸ 정현석은 통천군수(通川郡守)에게 연락하여 관내에 고성 출신으로 알려진 두 조선인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후 원산영사관으로 “본군 경내에 애초부터 화원촌이란 지명은 없으며, 또한 김우성, 양재문이란 이름의 자는 없으므로, 체포할

27 送第185號 1886년 2월 27일 外務大輔 青木周藏 → 在元山領事代理 外務書記生 奥義制 『救助雜件』.

28 第8號 1886년 3월 28일 領事代理 奥義制 → 德源府使 鄭顯碩 『救助雜件』.

수 없다”는 회신이 도착하였다.²⁹ 두 조선인의 출신지로 거론된 지역은 고성군 관내에 없고, 신원조회를 한 인물마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4월 19일 오쿠는 덕원부사로부터 신원조회 요청에 해당하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은 내용을 외무성에 전달하였다.³⁰ 이노우에 외무대신은 “해당 층은 다무라의 소유로 간주하고, 단속규칙에 입각하여 처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마네현령에게 회신하였다.³¹ 돈을 빌려간 조선인의 소재와 행방을 알 수 없는 만큼, 신고가 된 층은 「총포단속규칙」에 따라 처분하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켄에몬이 소지한 총기류의 처분 방향은 결론이 났다. 하지만 그의 아들 쇼타로에게도 동남제도개척사와 관련하여 정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울릉도에 별목 작업을 하러 갔다 온 쇼타로는 개척사에게 받아야 할 체불 임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Ⅲ. 일본인 인부의 채무 상황 추구와 협상 타결

1. 체불임금 반환을 위한 민원 제기와 조일 간 교섭의 공전

울릉도에서 강원도 평해로 도항하려다 표류하여 갑작스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쇼타로는 울릉도에서 작업하였던 인부들의 임금을 조선정부에서 정산해 주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우치다 도쿠지로(内田徳次郎)와 연명으로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보다 앞서 반리마루 사건과 관련하여 1885년 5월 21일 고베경찰서

29 第6號 丙戌 3月 4日(양 1886. 4. 7.) 德源府使 鄭顯奭 → 領事代理 奧義制 『救助雜件』.

30 第35號 1886년 4월 19일 元山領事館 書記生 奧義制 → 外務次官 青木周藏 『救助雜件』.

31 送第2470號 1886년 5월 4일 外務大臣 井上馨 → 島根縣令 籠手田安定 『救助雜件』.

(神戸警察署)에서 쇼타로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울릉도로 건너간 계기, 도항 후 별목작업 상황 등을 진술하였다.³² 쇼타로는 당시 28세로, 직업은 목수였다. 주소지는 앞서 나온 아버지젠에몬이 거주하던 시마네현 이즈모노쿠니 시마네군 마쓰에 신자이모쿠초였다. 1884년 3월 하순 동남제도개척사 수행원 백춘배와 가이 군지가 쇼타로를 인부로 고용하였다. 고용 급여는 월 1엔 50센이었다나 별도로 고용계약서를 소지하지 않았다. 김옥균과 외무경의 교섭을 통해 같은 해 4월 20일 외무성에서 해외도항 여권을 발급받고 27명의 인부를 인솔하여 울릉도로 건너갔다.³³ 이들은 울릉도에서 규목(槻木)을 벌채하고 해안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쇼타로는 직공부장(職工部長)으로 인부들을 감독하였다.³⁴ 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말은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베 스에키치(渡邊末吉)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조사 당시 울릉도로는 전체 6회에 걸쳐 도항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타고 간 선박으로 초호마루(長寶丸), 모료마루(摸稜丸), 이세마루(伊勢丸), 반리마루를 거론하였다. 선박명은 가이의 진술서에서 6차에 걸쳐 울릉도에 왕복한 선박명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울릉도에서 체재할 당시 식량이 부족하여 1884년 9월 25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강원도 평해군으로 도항하려다 표류하여 일본에 가게 된 일과 관련하여 개척사 수행원 대리인 김화원과 임금 지불 문제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³⁵ 김화원은 앞서 나온 김우성이다. 그와 계약을 체결한 일본인 인부 대표(職工夫總代)는 앞서 나온 쇼타로와 다나가 고로지였다. 울릉도에서 휴업한 기간 동안 인부에게 지불할 임금은 일본 도착 후 가이와 담판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1885년 4월 1일 백춘배가 직부 대표 쇼타로와 우치다

32 警部 中澤弘恭 作成「田村正太郎調書」, 『材木差押一件』.

33 「田村正太郎調書」, 『材木差押一件』.

34 쇼타로가 27명의 인부를 인솔하는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은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베의 진술 조서에서도 교차로 확인된다. 「渡邊末吉調書」, 『材木差押一件』.

35 開國 493年 甲申 10月 8日(양 1884, 11, 25.) 大朝鮮國 蔚陵島開拓使 隨員 白春培 代理 金花園「確證」, 『索債案件』.

의 3인에게 써준 확약서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다.³⁶ 울릉도에서 ‘양미(糧米)의 결핍’ 때문에 작년 9월 2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작업을 중단하는 동안의 급여는 이들이 일본에 돌아간 후 협의하여 건네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우성의 약정에 이어 백춘배가 추가로 지불보증을 확약해주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확약과 달리 임금 변제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면서 역적이 된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제도개척사는 공석이 되었다. 조선정부는 이 자리에 울릉도감찰사를 역임한 이규원을 임명하였다.³⁷ 직책 담당자가 정변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기존에 개척사가 추진하던 업무는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였다. 울릉도에 가서 작업하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도 조선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체불 임금의 지급을 기다리던 쇼타로는 탄원서를 1887년 1월 6일에 효고현청(兵庫縣廳)에 제출하였다. 이때 증빙자료로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도 첨부하였다. 청구 금액은 3,622엔 87센 7린(厘) 5모(毛)였다. 탄원서와 관련 서류는 효고현지사 우쓰미 다다카쓰가 접수하였다. 백춘배가 반리마루를 타고 울릉도에 다녀오면서 적재해 온 규목을 압수하여 공매 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니, 처분 후 남은 금액을 자신들에게도 속히 지급해달라는 요구였다.³⁸ 공매로 목재를 매각한다는 정보는 아마도 신문 보도와 고베 현지에서 도는 소문을 통해서 입수했을 것이다. 우쓰미는 이 내용을 이노우에 외무대신에게 전달하면서 쇼타로의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³⁹

36 大朝鮮 開國 494年 2月 16日(양 1885. 4. 1.) 東南諸島開拓使 從事官 白春培 「確證」, 『索債案件』.

37 송병기, 2010, 앞의 책, 176쪽.

38 「歎願書」,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225~229쪽).

39 1887년 1월 11일 兵庫縣知事 内海忠勝 → 外務大臣 井上馨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224쪽). 문서번호인 外甲은 기입된 숫자가 흐릿하여 판독이 어렵다.

이노우에는 동남제도개척사 종사관 백춘배와 관련된 문제로 증빙서류가 남아 있고, 이들의 요구는 울릉도 목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외아문과 교섭을 진행하라고 스키무라 후카시 임시대리공사에게 지시하였다. 반리마루에서 압류한 목재를 처분하고 남은 844엔 16센도 일단 송부한 후, 조선정부에 이 안건을 조회한 다음 협상 추이에 따라 견내도록 하였다.⁴⁰ 외무대신 훈령을 접수한 후, 1887년 4월부터 외아문과 공문을 주고받으며 교섭에 나선 자는 스키무라의 직무를 이어받은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였다. 다카히라는 외아문 독판 김윤식(金允植)에게 종사관 백춘배가 직권(職權)으로 우치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던 만큼 청구금액 3,622엔 87센 7린은 조속히 조선정부에서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⁴¹ 김윤식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일본의 상환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다카히라는 “관리에게 몇 차례의 교대가 있었더라도, 이미 변혁과 교대를 거친 관국(官局)과 관리의 약조(約條)는 실재 정부의 의무와 책임에 귀속한다는 점은 각국의 보통 법리”라면서 약조를 이행할 책임은 조선정부에 있다고 압박을 가하였다. 아울러 ‘울도(蔚島) 관계 안건’의 경우 조선정부에서 기한을 정해 일본공사관으로 조회하고, 이것을 일본인들에게 고시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당사자들이 기한 내에 충분히 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선정부에서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도모해달라고 요청하였다.⁴² 하지만 조선정부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역적 김옥균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

40 第1707號 1887년 3월 4일 발송 外務大臣 井上馨 → 臨時代理公使 杉村濬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243~248쪽).

41 公信第119號 「開拓使ニ關スル蔚島木材等ノ件」 別紙甲號 1887년 4월 21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郎 →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允植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256쪽); 『日案』 卷1, #866, 404쪽.

42 公信第119號 別紙戊號 1887년 5월 21일 臨時代理公使 高平小五郎 → 督辦交涉通商事務 金允植,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271~274쪽); 『日案』 卷1, #886, 412~413쪽.

조선에서 아무런 처리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우치다와 쇼타로는 6월 28일 청원서를 재차 효고현청에 제출하였다. 임금 체불과 처리 지체로 인하여 자신들이 아니라 함께 했던 인부 70여 명이 곤란에 처한 상황까지 진술하였다.⁴³ 효고현지사를 통해 다시 청원서 제출 소식을 접한 외무대신은 현재 조선 주재 공사가 빈번하게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니 조만간 소식이 있으리라고 회답하였다. 물론 교섭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12월 10일 우치다와 쇼타로는 추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자신들은 규목을 별책하기 위해서 백춘배에게 고용된 인부 70여 명을 인솔하여 울릉도에 건너갔으며, 도항 면허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반리마루를 통해서 공매 처분을 하고 남은 잔액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일가 여러 명의 기갈(飢渴)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⁴⁴ 고베항을 떠나지도 못한 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계속 늘어났다. 탄원서 제출은 이듬해 4월 6일에도 있었다. “궁지에 내몰려 어떻게 해도 입에 풀칠할 방도가 없다”면서 처분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신들의 궁박한 처지를 호소하였다.⁴⁵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진력해보라고 대리공사 곤도 마스키(近藤眞鋤)에게 지시하였다. 곤도는 이해 1월부터 진행된 협상 경과를 개관하면서 이 건에 대해 김윤식은 “김옥균과 관계가 있으므로 당 정부에서 금전을 구비하여 지불할 일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⁴⁶ 이러한 가운데 9월 18일에도 추가로 탄원서를

43 1887년 6월 28일 内田徳次郎·田村正太郎 → 神戸區長 渡邊弘 「朝鮮國蔚陵島 槻材伐採職夫料ノ義ニ付再願」,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278~279쪽).

44 1887년 12월 10일 内田徳次郎·田村正太郎 「追願」,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287~288쪽).

45 1888년 4월 6일 内田徳次郎·田村正太郎 「歎願書」,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295~296쪽).

46 機密135號 1888년 4월 30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302쪽).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릴없이 시간은 흘러 1889년으로 접어들었다. 오쿠마도 “이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지체된다면 심히 부적절하다”며 속히 본건의 종결을 도모해달라고 곤도에게 지시를 내렸다.⁴⁷ 이해 5월 23일에도 추가 탄원서(追歎願)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은 우쓰미 효고현지사가 외무대신에게 전달하였다.⁴⁸ 우치다와 쇼타로는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일본정부에 민원을 넣었다. 외무대신으로부터 처분 여하에 대한 채근을 받은 곤도 공사는 외아문과 수차례 교섭하는 동안 받은 인상과 형편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원래 현 정부는 전적으로 김옥균에 반대하는 당파(黨派)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자와 관계된 건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일거에 배척하고 있습니다. 종래 외무독판을 맡았던 자는 특히 이 건에 관계된 제의를 싫어하며, 기피하는 거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김옥균에 관계된 건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거나, 혹은 친히 김옥균을 규찰하지 않는다면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자를 포박한 다음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 가지 이야기와 만 가지 말이 이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앞서 한 말을 반복하고, 무언가 분명히 말하지 않거나, 혹은 분노한 모습은 보입니다. 혹은 사리를 온건하게 진술하고 백방으로 국면 종결을 꾀해도, 저들은 다시 분노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또한 굴복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애매하게 우리의 공격을 감내하고, 시일을 질질 끌며, 다른 사람과 교대할 수 있다는 저의가 보입니다.⁴⁹ (밑줄은 인용자)

47 1889년 3월 12일 발송 外務大臣 大隈重信 → 代理公使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36~337쪽).

48 外甲657號 1889년 5월 29일 兵庫縣知事 内海忠勝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38~341쪽).

49 機密第41號 1889년 7월 9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46~347쪽).

곤도는 외아문 독판과 해당 현안을 여러 차례 면담과 공문 왕복으로 논의하였다는 증빙 자료 8통을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김옥균이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말을 반복하거나, 시간을 끌다가 담당자를 교체하여 다시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인상을 외아문 인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와는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역적과 관련된 안건을 빨리 타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외아문 독판마다 김옥균과 관련된 “제의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거동”을 보였다. 외아문 독판 조병식(趙秉式)도 “김옥균이 관계한 사정이 있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알 바가 아니므로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⁵⁰ 곤도는 동남제도개혁사 김옥균이 활동하던 중에 발생한 금전 채무는 당연히 조선정부에서 변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독촉하였다.⁵¹ 1889년 4월 3일 곤도가 조병식(趙秉稷)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따졌다. 개혁사와 관련된 다나가 기자에문(田中喜左衛門), 우치다와 쇼타로, 가이와 관련된 금전 채무의 상환 요구 건을 한꺼번에 거론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것은 모두 귀국 개혁사가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채무를 졌는데, 아직 처리와 보상을 거치지 않은 채무액에 속합니다. 애초부터 김 아무개의 사적인 채무가 아님은 해당 안건에 부속한 증거서류에 의거하면 명백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김 아무개의 사적인 채무가 아닌 이상 누가 장차 상환할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개혁사가 지금 존재한다면 채무액은 개혁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개혁사가 금일 이

50 機密第41號 別紙甲號 戊子 4月 初7日(양 1888. 5. 17.) 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式 → 代理公使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49~350쪽); 『日案』 卷1, #1138, 528~529쪽.

51 機密第41號 別紙戊號 1889년 3월 7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稷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59쪽). 이 문서는 『日案』에 실려 있지 않다.

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 정부에서 배상 책임을 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척사의
 존폐는 전적으로 귀 정부의 권한 내로 귀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을 말하자면, 개척사란 자는 애초부터 귀 정부의 일부분으로, 개척사는 곧 귀
 정부입니다. 따라서 개척사로부터 발생한 손익(損益)은 모두 귀 정부의 손익입니
 다. 귀 정부가 어찌 다만 그 이익만을 얻고, 그 손해를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
 난 20년(1887년-인용자) 우리 국민 와타나베 스에키치의 안전도 동일하게 귀 개
 척사에 관계하여 귀 정부가 와타나베로 하여금 그 개척사를 위해 운반한 목재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값어치의 금전으로 운반비를 배상하고, 나머지를 귀 정부에
 서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만약 귀서(貴署)의 독판께서
 말씀하시듯이 개척사 안전은 김 아무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와타나베의 일개 안전은 개척사와 관계가 없습니까? 개척사란 자는
 김 아무개와 관계가 없습니까?⁵² (밑줄은 인용자)

요지는 개척사 김옥균 때문에 발생한 채무는 조선정부로 귀속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속히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
 베가 운반해 간 울릉도 목재를 구매하고,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후 잔금을 조선
 정부가 수령했던 과거 사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선정부
 책임으로 귀속한다는 점에서 와타나베 건과 이번 금액 청구 건은 성격이 같다고
 본 것이다. 다음에 보낸 처리 독촉 서한에서도 곤도는 개척사란 직책을 조선정
 부에서 만들고 관리를 임명했던 만큼 “일체의 사무는 애초부터 귀 정부에서 책
 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⁵³ 김옥균 핑계를 대는 문제에 대

52 機密第41號 別紙已號 1889년 4월 3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署理督辦交涉通
 商事務 趙秉稷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362~364쪽); 『日案』卷1,
 #1379, 636쪽.

53 機密第41號 別紙辛號 1889년 5월 5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署理督辦交涉通
 商事務 趙秉稷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370쪽); 『日案』卷1, #1407,
 653쪽.

해서는 “김 아무개를 포박하는 날을 기다리겠다는 등의 말은 일시로 발뺌하려는 말(遁辭)에 속하며, 전적으로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조일수호조규」 제10관의 “공평하고 사리에 맞음을 보여주도록 힘써야 한다(務昭公平允當)”는 문구까지 거론하면서 양국의 교섭은 사안의 대소(大小)와 곡직(曲直)에 구애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⁵⁴ 하지만 조병직은 근친의 장례(忌服)와 칭병 등을 이유로 돌리대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김옥균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조선 관리로서는 상대하기 꺼끄러웠던 것 같다. 곤도로부터 교섭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고받은 오쿠마는 ‘심히 유감’이라고 하였다. 외아문 독판과 조회를 주고받는方便만으로는 ‘헛수고’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면 타개를 위해서 일본공사가 직접 조선 국왕을 알현하는 방법까지 꾀해보도록 추가 지시를 내렸다.⁵⁵

2. 중재자 정병하의 등장과 채무 상환 교섭의 타결

이 무렵 외아문 독판은 조병직에서 민종묵(閔種默)으로 바뀌었다. 곤도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종묵에게 면담을 요구하였다. 국왕알현 요청 같은 “격렬한 수단은 왕왕 이해(利害)를 수반”하여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곤도는 일단 신임 외아문 독판과 만나서 논의를 좀 더 진행해보려는 심산이었다. 민종묵도 처음에는 전향적으로 교섭에 임해보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⁵⁶ 하지만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54 機密第41號 別紙辛號 1889년 5월 5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稷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67~368쪽); 『日案』 卷1, #1407, 653쪽.

55 1889년 7월 26일 발송 外務大臣 大隈重信 → 代理公使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75~377쪽).

56 機密第51號 1889년 8월 18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78~379쪽).

확연해졌다.

민중목은 곤도가 제기한 현안이 모두 김옥균과 관련된 문제로, 채권자인 일본인들은 김옥균이 소재한 지방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한 후 체포하여 대질 심문을 거치는 것이 ‘공안(公案)의 정례(定例)’라 하였다. 만약 김옥균이 조선인이라면 일본 관헌에서 이 자를 체포한 후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조선 관리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처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옥균이 일본 국내에 체류했다면 채무 소송을 해당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여 현지에서 사법처리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그를 일본 현지에서 체포하여 조선 측으로 넘겨줘야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⁵⁷ 이틀 후 곤도는 반박문을 보냈다. 본인이 채무 배상을 촉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척사라는 관원의 채무 때문이지, 김옥균 일개인의 ‘사적인 채무’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1884년 1월 10일 외아문 독판 민영목(閔泳穆)이 한성 주재 시마무라 히사시(嶋村久) 일본공사 서리에게 보낸 조복(照覆)까지 거론하였다. 개척사 김옥균은 조선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므로 울릉도 개척 건은 모두 이 자가 처리(辦理)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는 「조일통상장정」 제34관도 거론하였다. 이것은 조선 관리가 고용한 일본 선박의 경우 정부에서 별도의 허가증(准單)을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었다. 이 문서는 갑신정변 발발 이전 조선정부의 개척사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⁵⁸ 곤도는 김옥균이 조선정부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했던 일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와서 들은 적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였다.⁵⁹ 김옥균 개인의 채무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이른바 목을 숨기고 꼬리를 드러내는 일”로 본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난번 와타나베의 채무 상황 건은 조선정부에서 안건을 승인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

57 機密第72號 別紙甲號 己丑 9月 初2日(양 1889. 9. 26.) 閔種默 →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92~393쪽); 『日案』 卷2, #1495, 1쪽.

58 『日案』 卷1, #203, 107쪽.

59 機密第72號 別紙乙號 1889년 9월 28일 近藤眞鋤 → 閔種默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94~395쪽); 『日案』 卷2, #1502, 3~5쪽.

한 선례였다. 이번 세 가지 건도 개척사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관(官)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대군주(大君主)에게 상주하여 본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교섭을 재개한 이후로 민중묵과 곤도가 주고받은 공문 속에서 조선 측은 여전히 개척사 김옥균의 채무를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지 않았다. 협상은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곤도는 오쿠마가 앞서 지시한 대로 국왕 고종을 알현해보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외아문 독판과의 교섭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내무부(內務府) 독판 김영수(金永壽)에게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의 알현을 요청”하며 이 내용을 대신 주청해주시기 바란다는 서한까지 작성하였다.⁶⁰ 하지만 조선정부와의 교섭은 일단 외아문을 경유해야 하며, 일본공사가 곧바로 내무부에 군주 알현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조일 간의 교착된 협상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정병하(鄭秉夏)가 중재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재직하다가 상경해 있었다. 평소 정병하와 돈독하게 교류하고 있던 곤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와 상의하였다. 정병하는 자기가 먼저 고종에게 가서 본건을 주청해보겠다는 의향을 타진하였다. 수년 동안 “정부 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끼어서 바위처럼 완고해진” 난제였으나, 정병하가 주선에 나서 국왕에게 허락을 받고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였다.⁶¹ 그가 고종에게 특별하게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왕을 직접 만나 논란이 된 안건의 전말과 청산 건을 상주하였다.⁶² 정병하

60 機密第72號 別紙丙號 1889년 10월 10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內務府督辦 金永壽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400~402쪽).

61 機密第70號 1889년 10월 10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382~383쪽).

62 機密第72號 1889년 10월 27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385쪽). 명성황후 살해사건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정병하가 “왕후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윤치호의 1895년 12월 13일자 일기에서도 확인된다. 박정신·이민원 번역, 2015, 『국역

로부터 전말을 전해 들은 고종은 “우호의 교제를 잃지 않도록 도모하라”면서 속히 청산할 방도를 마련하라고 명을 내렸다. 외아문 독판까지 쫓내로 불러 이 지시를 속히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종은 10월 13일 정병하를 외아문 참의에 임명하라는 전교를 내려 직접 협상에 나서도록 하였다.⁶³ 채무 청산을 위한 교섭은 정병하와 곤도가 논의를 진행하여 조선정부가 일본인들에게 지불할 금액을 확정하였다.⁶⁴ 우치다와 쇼타로가 청구한 금액 3,622엔 87엔 7린 5모를 그대로 지불하는 데 양측은 이견이 없었다. 대신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금리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이들이 이자 등을 청구하려는 의사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구한 금액만 정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상 타결 후 민중묵은 일본인들이 청구한 금액을 곤도 공사에게 전달하면서 이와 관련된 증표와 채권 등을 회수하여 조선 측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더 이상 김옥균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의 추가 배상 요구가 있더라도 결코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였다.⁶⁵ 곤도는 외아문에서 보내온 정산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민중묵이 타진해 온 공문 내용은 외무대신에게 보고하겠다고 회신하였다.⁶⁶ 같은 날 오키마 외무대신에게 외아문이 보내온 금액을 제일국립은행 환어음(爲替券)으로 송부하니 효고현에 잘 전달하고, 청구인들이 금전을 수령할 때 개척사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맞교환하여 주한일본공사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⁶⁷ 덧붙여 개척사가 관련된 더 이상의 금전 배상은 없다는 조선정부의 언명에 대하여 이미 관직을 폐지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문

윤치호 영문 일기』 3, 국사편찬위원회, 101쪽.

63 『承政院日記』 高宗 26年 9月 19日(양 1889. 10. 13.).

64 機密第72號 1889년 10월 27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385쪽).

65 別紙丁號 己丑 10月 初3日(양 1889. 10. 26.) 閔種默 →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403~404쪽); 『日案』 卷2, #1533, 19쪽.

66 『日案』 卷2, #1538, 21쪽.

67 發第294號 1889년 10월 28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 卷29, 407쪽).

제를 더 이상 제기하는 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곤도는 조선 측의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곤도가 보낸 공문과 환어음을 접수한 외무성은 조선정부와의 협상 종결을 통지하면서 환어음 교환에서 발생한 수수료 2엔 43센을 제하고 잔액을 효고현으로 송부하였다. 조선정부가 요청한 대로 개척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소지한 증빙서류는 금액을 교부하면서 속히 회수하여 외무성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⁶⁸ 우쓰미 효고현지사는 우치다에게 해당 금액의 교부를 마치고, 관련 서류 1건을 받아내어 아오키 외무차관에게 보냈다.⁶⁹ 금전 교부와 증빙서류 수합을 완료한 후 아오키는 이 사실을 곤도에게 알렸다. 아울러 우치다와 쇼타로가 교부 금액을 수령한 영수증, 개척사가 발급했던 관련 증서를 목록과 함께 보냈다. 1889년 12월 24일 곤도는 외무성의 통지를 전달하면서 관련 증빙서류까지 외야문으로 송부하였다.⁷⁰ 11월 28일부로 조선정부가 송금한 금액은 잘 수령했다는 증서는 『갑비군치색채안건(甲斐軍治索債案件)』에 실물이 들어 있다.⁷¹ 이로써 체불 임금 청구와 관련된 기나긴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우치다와 쇼타로가 연명으로 금전 배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지 2년 11개월 1일 만의 일이었다. 물론 울릉도에 건너갔다가 중간에 표류하여 고향인 시마네현에 도착한 1884년 12월 7일부터 기산해보면 5년 만에 청구한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둘의 금전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가이 군지에게는 청산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었다.

68 發第51號 1889년 11월 7일 발송 外務次官 青木周藏 → 兵庫縣知事 内海忠勝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409~410쪽).

69 外乙2236號 1889년 12월 2일 兵庫縣知事 内海忠勝 → 外務次官 青木周藏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412~413쪽).

70 『日案』卷2, #1586, 44쪽. 이 문서는 『職夫雇賃請求』에 실려 있지 않다.

71 「証」, 『索債案件』.

IV. 울릉도 목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과 가이 군지의 활동

1. 가이 군지의 울릉도 목재 관련 업무 명세서 제출

1887년 1월 23일 가이는 한성영사관에서 사무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유키 아키히코(結城顯彦)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⁷² 그는 1883년 이래로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에게 고용된 신분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가, 외아문으로 두 가지 안건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하나는 개척사 관련 업무 수행 중 지불한 금액의 배상 요구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맡고 있던 신분의 진퇴 여부 확인이었다. 하지만 조선 측은 이것이 김옥균과 관련된 문제라며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는 조선정부가 알 바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여기에 ‘몹시 경악’한 가이는 그동안 자신이 맡아온 개척사 관련 업무의 전말을 상세히 소명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조선정부에 제출하였다. 개척사 업무 중 지출한 금액 11,279엔 54센 4린을 상환해주고,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진퇴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가 첨부하여 제출한 시말서와 증빙문서에는 그동안 가이가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에게 고용되어 울릉도와 일본 등지를 오가며 활동한 내역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⁷³ 이하에서는 시말서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 그가 청구한 금액의 처분 경위를 다루도록 한다. 별도의 각주 인용을 하지 않는 한 가이가 작성한 시말서에 기초하여 내용을 서술하였다.

원래 사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1883년 5월 조선에 건너온 가이는 김옥균의 의뢰를 받아 개척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⁷⁴ 김옥균이 발급한 임명장에는

72 1887년 1월 23일 甲斐軍治 → 領事館 事務代理 結城顯彦, 「要債金竝進退處分請求方御願」, 『索債案件』.

73 1887년 1월 23일 甲斐軍治 「始末書」, 『索債案件』.

74 김옥균 주선으로 도한한 가이가 남산 부근에 사진관을 개설하고 190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다는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조. 崔仁辰, 1999, 『韓國寫眞史 1631-1945』, 눈빛, 215쪽.

“울릉도 개척 등의 일로 대일본 나가사키현 사람 가이 군지를 고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가이의 수형 업무는 일본 선박과 인부의 고용이었다.⁷⁵ 그리고 “대조선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이 가이 군지를 고용한다”는 계약문서도 추가 발급하였다.⁷⁶ 가이는 종사관 탁정식과 함께 울릉도 목재 운반 등의 건으로 협동상회(協同商會)와 약정을 체결하고 울릉도에 건너갈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중 1883년 12월 “일본의 난민(亂民)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목재를 도벌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바칸(馬關)에서 수집한 후 가이는 탁정식을 대리하여 에히메현(愛媛縣) 이요쿠니(伊豫國) 하시하마(波止濱)까지 찾아가 울릉도 목재를 적재하여 귀향한 덴주마루를 찾아냈다. 그는 덴주마루가 불법으로 반출해 온 목재를 압수하여 반환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마바리 경찰서(今治警察署)에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울릉도는 동남제도 개척사가 관할하는 곳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아님을 목재 반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⁷⁷ 조선정부도 덴주마루가 미통상구(未通商口)인 울릉도에서 목재를 반출해 간 것은 「조일통상장정」 제33관 위반이라는 입장에서 위무성으로 공문을 보내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일본인들을 처분해달라고 요구하였다.⁷⁸ 울릉도는 조선정부가 파견하는 관원이 관할하는 도서(島嶼)이며, 조선과 일본이 가장 최근에 체결한 통상조약에서도 개항장으로 설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1884년 11월 7일 김옥균이 발급한 위임장 역시 백춘배의 승인을 받아 가이가 덴주마루와 관련된 목재를 수령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마바리(今治)에 집류해둔 목재는 통리아문(統理衙門)에서 일본정부에 조회한 적이 있음을 거론하였다.⁷⁹ 이 문서를 통해 김옥균은 불법으로 반출한 울릉도 목재

75 證憑及參考書之寫 甲第一號 大朝鮮 開國 492年 11月 開拓使 金玉均 → 甲斐軍治 『索債案件』.

76 證憑及參考書之寫 甲第二號 大朝鮮 開國 493年 正月 開拓使 金玉均 → 甲斐軍治 『索債案件』.

77 박한민, 2020, 앞의 글, 250쪽.

78 박한민, 2020, 위의 글, 248~252쪽.

에 대한 조선 측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대리인 가이에게 조속히 반환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가이는 일단 이마바리 경찰서를 통해 목재의 압류처분을 해둔 다음 고베로 향하였다. 울릉도로 도항하려고 초호마루와 인부들을 고용한 그는 바칸에서 탁정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긴급 전보를 받고 고베로 가보니 탁정식은 병에 걸려 입원 중 사망하였다. 가이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탁정식의 사망일은 1884년 2월 9일이었다.⁸⁰ 김옥균은 백춘배를 후임자로 임명하였다. 백춘배를 깊이 신뢰하면서 울릉도 목재의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맡겼던 것이다.⁸¹ 중사관 백춘배 명의로 나간 울릉도 목재 처분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이는 울릉도 목재 운반과 관련된 개척사 업무를 백춘배와 함께 계

79 甲第四號 開國 493年 9月 20日(양 1884, 11. 7.) 東南諸島開拓使 金玉均 『索債案件』, 이 문서는 인장이 찍히지 않은 필사본으로, 선행연구에서 소개했던 외교 사료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다(박한민, 2020, 앞의 글, 258쪽). 이 위임장을 1884년 11월 13일 변리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접수하여 외무성에 보냈다. ‘大朝鮮國 東海 蔚陵島’를 비롯하여 오기(誤記)로 보이는 ‘長壽丸’과 ‘通商衙門’이라는 표현도 동일하다. 이 시기 김옥균이 동남 연해의 포경 업무를 맡게 된 기사를 짧게 다룬 정교의 기록에도 울릉도는 “동해 안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부에 속한다(在東海中, 屬江原道三陟府)”고 하였으며, 울릉도 삼림을 김옥균이 일본인에게 몰래 판매(潛賣)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교 저, 변주승 역주, 2004, 『대한계년사』 1, 소명출판, 원문편 315쪽.

80 이광린은 탁정식이 고베에서 병사한 날짜를 1884년 3월 6일(음력 2월 9일)로, 박은숙은 3월 8일로 기술하였다(李光麟, 1986, 앞의 글, 31쪽; 박은숙, 2012, 앞의 글, 114쪽 각주 45번). 하지만 당시 발행된 일본 신문에서 탁정식의 사망 소식과 간단한 약력을 전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 건너와 아사노 가쿠지(朝野覺治)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는 고베에서 34세의 나이로 역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이를 통해 탁정식이 1850년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朝日新聞』, 1884년 2월 20일, 1면 3단; 박은숙, 2011, 앞의 책, 264~266쪽). 신문기사 날짜와 사망일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가이의 시말서가 양력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탁정식이 급성폐렴에 걸려 사망하였고, 동행하였던 이의고와 숙박했던 곳의 점주 요청으로 화장했다고 외아문 독판 민영목에게 통보한 시마무라 히사시의 1884년 4월 3일 공문도 사망일을 ‘2월 9일’로 기재하였다(『日案』 卷1, #224, 116~117쪽). 기존 연구의 탁정식 사망일자 서술에는 오류가 있으므로, 양력 1884년 2월 9일로 바로잡아둔다.

81 琴秉洞, 2001, 앞의 책, 148쪽.

속 수행하였다.

1884년 2월 16일 백춘배와 바간에 간 가이는 저번에 고용해 둔 초호마루를 이용하여 울릉도로 출항하려 하였다. 하지만 바간경찰서는 선박과 인부들의 울릉도 도항을 엄금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소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항허가를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이는 도쿄부(東京府)로 가 현 상황을 김옥균에게 보고한 후, 도쿄부지사와 면담하여 출항해도 좋다는 회답을 받았다. 첨부된 문건에 따르면, 요시카와 도쿄부지사가 김옥균의 초호마루 고용과 출항건을 외무경 대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 김옥균이 조선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고용하는 건은 조선국에서 일본인민 무역규칙 34관에 비추어 지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⁸² 여기서 말하는 ‘무역규칙’은 「조일통상장정」이다. 조선정부의 관원 김옥균이 고용한 선박이라면 화물 운반을 위해 미통상구인 울릉도까지 도항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해당 조약 제34관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⁸³ 이것을 휴대하고 야마구치현에 가서 도쿄부지사로부터 받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출항허가를 받았다.⁸⁴ 가이는 초호마루에 필요한 물품을 적재하고, 인부들까지 태운 다음 4월 22일 아카마세키구(赤馬關區) 후쿠우라항(福浦港)에서 닻을 올렸다. 초호마루는 4일 후 울릉도에 도착하였다. 이것이 제1차 울릉도 항해였다. 이날 종사관 백춘배는 위임장을 하나 발급했는데, 울릉도 목재와 관련된 건의 처리는 가이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였다. 아울러 일본 지방관청과 교섭하는 사무는 종사관

82 甲號附帶參考書第一號 朱書第1637號 1884년 2월 18일 東京府知事 芳川顯正 → 金玉均 『索債案件』; 朱書第380號 1884년 2월 16일 東京府知事 芳川顯正 → 外務卿代理 參議 伊藤博文 「朝鮮國人日本形船雇入ノ義伺」, 『索債案件』.

83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한일 조약 자료집(1876~1910)』, 동북아역사재단, 341쪽.

84 甲號附帶參考書第貳號 朱書第2853號 1884년 3월 7일 東京府知事 芳川顯正 → 金玉均 『索債案件』. 이 문서에 따르면 요시카와는 초호마루가 바간에서 출항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야마구치현에 전보로 연락을 취해두었음을 김옥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표 1〉 울릉도 양복 일본 선박의 기착 정보와 반출한 목재 수량

차수	선박명	출항일	울릉도 도착 / 출항	고베 귀항일	반출 목재량
1	長寶丸	1884년 4월 22일 (山口縣 馬關)	1884년 4월 26일 / 5월 10일	1884년 5월 하순 (추정)	槻材木 69本 (32,857才 63合) 板甲 90枚 (3,511才 38合) 작은 전복 11枚 (183才 5合) 桐丸木 6本
2	摸稜丸	1884년 4월 23일 (고용 4월 9일)	1884년 5월 7일 / 1884년 5월 21일	1884년 6월 10일 ⁸⁵	槻材木 54本 (60,385才 5合) 板甲 60枚 (4,427才 13合) 角物 3本
3	伊勢丸	1884년 5월 초순	1884년 6월 8일 / 6월 25일	1884년 7월 상순	槻材木 54本 (35,005才 5合) 板甲 34枚 (4,133才 69合)
4	萬里丸	1884년 7월 5일	1884년 7월 23일 / 7월 29일	1884년 9월 중	槻材木 73本 (58,087才 27合) 板甲 60枚 (5,733才)
5	摸稜丸	1884년 7월 6일	1884년 7월 25일 / 8월 10일	1884년 9월 중	槻大木 42本 (44,911才 2合) 板甲 16枚 (2,951才 67合) 桐丸木 5本 (515才 9合 6)
6	萬里丸	1884년 11월 6일 ⁸⁶ (兵庫縣 神戸)	산인(山陰) 지방과 조 선 동해안 표착 기상 약화로 후쿠우라 기항 4~5회(1885년 2월까지) ⁸⁷	-	-
		1885년 2월 24일 ⁸⁸	1885년 3월 / 4월 14일 ⁸⁹	1885년 5월 20일 ⁹⁰	槻材木 59本 (58,974才 5合) ⁹¹

85 「朝鮮人」,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6월 12일, 2면. 다른 신문도 초호마루와 모료마루가 규목을 신고 고베항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나, 날짜를 ‘과일

명으로 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⁹² 이후 전체 6차례에 걸쳐 일본 선박을 고

(過日)로만 표기하였다. 울릉도장 전석규에게 전령서를 교부받은 에히메현 하야시 쇼시(林尙史)와 치바현(千葉縣) 미노와 미노스케(美濃輪己之助)는 해당 목재가 요코하마 재류 미국인 미첼에게 인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률대리인 오카자키 다카아쓰(岡崎高厚)를 고용하여 목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실려 있다. 『朝日新聞』, 1884년 7월 13일, 3면 3단; 『郵便報知新聞』, 1884년 7월 17일, 2면 5단.

- 86 『日本外交文書』 卷18, #98 附屬書3 「朝鮮國東南諸島開拓使隨員白春培訴狀」, 179쪽. 울릉도 목재를 고베로 운반해 오는 건으로 백춘배와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베 스에키치가 계약을 체결한 날은 1884년 10월 9일이었다(李光麟, 1986, 앞의 글, 33쪽; 『日本外交文書』 卷19, #116 附屬書1 「請願書」, 342쪽). 이때 가이 군지, 고이즈미 도쿠베(小泉德兵衛), 고노 소치요(河野宗千代)가 입회인이었다. 계약서는 『日案』과 『索債案件』에 실려 있다. 백춘배의 ‘大朝鮮東南諸島開拓使代理委任印’와 가이 군지의 ‘朝鮮開拓使雇甲斐軍治之印’, 계약 당사자와 입회인들이 각각 날인한 계약서 원본은 『索債案件』에 실려 있다. 『日案』은 반리마루가 적재해 온 목재 분량을 ‘方’으로 기재했으나, ‘才’를 잘못 판독한 것으로 보인다. 『日本外交文書』 卷19, #118 附屬書1 甲號, 349쪽; 『日案』 卷1, #728, 344~345쪽; 『完約證』, 『索債案件』.
- 87 기상이 좋지 않아 반리마루는 울릉도로 가지 못한 채 결국 고베항으로 돌아갔던 것 같다. 이 배에 탑승하고 있던 백춘배는 갑신정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으며,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 박영효, 이규완 일행과 뜻하지 않게 고베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日案』 卷1, #621 附 「金玉均隨員白春培供辭」, 298쪽.
- 88 「渡邊末吉調書」, 『材木差押一件』.
- 89 1885년 5월 20일 神戸警察署 水上警察署詰 巡查 青山友三郎 「景況書」, 『材木差押一件』.
- 90 1885년 5월 20일 神戸警察署 水上警察署詰 巡查 青山友三郎 「景況書」, 『材木差押一件』; 『田村正太郎調書』, 『材木差押一件』. 백춘배는 “울릉도 일이 급하여 그 섬으로 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올해 4월 고베항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日案』 卷1, #621 附 「金玉均隨員白春培供辭」, 298쪽). 반리마루의 고베 입항 일은 음력으로 ‘4월 7일’이었고, 당시 조선인들의 시간감각은 음력에 기초하여 일자를 기억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춘배의 날짜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다.
- 91 와타나베의 대리인 고노 소치요는 고베 동세관(東稅關) 앞 공터에 둔 槻材 59本을 입찰할 예정이니 1886년 12월 20일 오전까지 입찰 참여 절차를 밟으라는 공지문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문에 게재하였다. 「一朝鮮鬱陵島槻材五拾九本」, 『朝日新聞』, 1886년 12월 17~19일, 4면 廣告.
- 92 甲第三號 開國 493年 4月 2日(양 1884, 4. 26.) 大朝鮮國 東南諸島開拓使 從事官 白春培 「委任狀」, 『索債案件』.

용하고 울릉도를 왕복하면서 벌채한 규목을 반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본 선박의 출항과 귀항, 적재해 온 울릉도 목재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⁹³

1884년 4월부터 1885년 5월까지 고용된 일본 선박이 울릉도로 여섯 차례에 걸쳐 왕래하면서 반출한 규목의 전체 수량을 합산해보면 351본(本), 판갑은 260매(枚)였다. 이 사이에 덴주마루가 울릉도에 기항하여 불법으로 섬에 적치해 있던 목재를 반출하여 에히메현까지 운반해 간 것이 규목 15본과 판갑 10매였다.⁹⁴ 이것까지 합산하면 규목 366본, 판갑 270매였다. 덴주마루가 반출해 간 목재 수량과 비교해보면, 6회에 걸친 일본 선박의 왕래에서 규목은 덴주마루의 23.4배, 판갑은 덴주마루의 26배였다. 덴주마루가 적재하고 있던 목재를 압류하고 있다가 공매 처분을 한 금액이 466엔 80센이었다.⁹⁵ 반리마루에 적재하고 있던 규목을 1886년 12월 공매 처분을 하여 입찰에 참여한 센자키 야고헤이(專崎彌五平)가 3,512엔에 낙찰을 받았다.⁹⁶ 후자의 공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6회에 걸쳐 울릉도에서 반출한 규목은 판갑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3만 엔 이상을 상회하였을 것이며, 시장가로 판매했을 경우 이보다 더 큰 액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⁹⁷

93 일본 선박의 울릉도 왕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索債案件』에 수록된 가이의 「始末書」와 「蔚陵島運搬材木細目表」의 선박별 기재 내역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반리마루의 세부적인 출항과 기착 날짜는 『材木差押一件』에 있는 「渡邊末吉調書」의 진술 내용에 따랐다.

94 박한민, 2020, 앞의 글, 247쪽.

95 박한민, 2020, 위의 글, 266쪽.

96 『日本外交文書』 卷19, #120, 351쪽; 「鬱陵島材木賣拂の結末」, 『朝野新聞』, 1887년 1월 11일, 3면 2단; 박성준, 2014, 앞의 글, 140쪽. 이 가운데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베와 고노 소치요에게 교부한 금액은 2,667엔 84센이다. 반리마루 목재의 처분 소식을 듣고 잔액 844엔 16센에 대하여 쇼타로와 우치다는 자신들에게 교부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朝野新聞』은 공매 후 처리 비용을 개략적 수치로만 소개하였다.

97 「제물포조약」 제3관은 임오군란 피해자에게 구휼금으로 5만 엔을 지급하도록 규정

2. 초호마루와 모료마루의 고베 입항과 목재소유권을 둘러싼 소송

앞서 나온 에히메현의 덴주마루 사례 외에도 울릉도를 왕복하면서 목재를 반출해 온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때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하였다. 울릉도 목재의 처분을 두고 김옥균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목재 판매는 큰 이권 사업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깊숙이 관련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목재를 처분할 우선권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1884년 6월에는 초호마루와 모료마루가 고베항에 도착한 후, 적재해 온 목재를 미국무역회사(American Trading Company)에서 처분하려 하였다. 그러자 도쿄구미(東京組) 하야시 쇼시와 오무라구미(大村組) 이소야마 쇼이치(磯山昌一), 아사히구미(旭組)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正憲)는 소유물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⁹⁸ 고베 주재 미국영사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7월 26일, 8월 26일, 8월 29일 3차에 걸쳐 공판을 개최하였다.⁹⁹ 미국무역회사는 김옥균에게 2만 엔을 빌려주면서 울릉도 목재를 저당으로 잡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하야시는 울릉도장(鬱陵島長) 전석규(全錫奎)에게 받은 전령서를 근거로 목재 소유권을 주장하였다.¹⁰⁰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오카자키 다카아쓰였다. 피고는

하였다. 4차 수신사 박영효의 도일 당시 김옥균은 이노우에 외무경의 주선으로 요코하마쇼킨은행(橫濱正金銀行)에서 17만 엔의 차관을 얻어냈다. 이 가운데 5만 엔은 구휼금을 갚는 데 곧바로 사용하였다. 울릉도 목재의 전체 판매액은 이것을 충당할 정도의 값어치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앞의 책, 75쪽; 『使和記略』 壬午 11月 10日(『국역 해행총제』 XI, 민족문화추진회, 1982, 388~389쪽); 유바다, 2010, 「1883년 김옥균 차관교섭의 의미와 한계」, 『한국근현대사연구』 54, 47~48쪽.

98 「鬱陵嶋木材取戻の訴訟」,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29일, 3면.

99 琴秉洞, 2001, 앞의 책, 147쪽. 금병동은 『朝野新聞』에 실린 기사 두 편을 근거로 소송 경과를 짧게 소개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변론, 재판 진행 경과는 『日本立憲政黨新聞』에서 ‘公判傍聽筆記’ 항목을 개설하여 1884년 7월 29일과 30일, 9월 3일부터 7일까지 상세히 보도하였다.

미국무역회사 이사 데모크(C. W. Demok)로, 법률대리인으로 호고뉴스 편집장을 맡고 있던 영국인 클레를 고용하였다.¹⁰¹ 6월 27일 원고 측은 “울릉도(蔚陵嶋)에서 일본형 선박 모로마루와 초호마루 두 척으로 탑재해 왔던 목재로 대략 1,184본(本)을 반환”해달라는 소(訴)를 제기하였다.¹⁰² 청구 요지에는 조선정부에서 전석규를 울릉도장으로 삼아 파견하였으며,¹⁰³ “해당 섬은 조선정부의 관할(所轄)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벌목은 엄히 금지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다만, 도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베어낸 목재는 전석규가 일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피고 측은 개척사 김옥균과 피고대리인 모스(J. K. Morse)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해당 목재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제소 각하와 원고의 재판비용 전액 부담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¹⁰⁴

100 「鬱陵嶋材木の訴訟」,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22일, 2면.

101 클레는 피고대리인으로 미국 영사재판소에 출두했으나, 영국인이라서 법정 선서와 서명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배심인 선정 등을 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을 적에 모자를 벗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재판관으로부터 사죄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사과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서 나갔다. 「鬱陵嶋木材取戻の訴訟」,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29일, 3면.

102 「鬱陵嶋木材取戻の訴訟」,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29일, 3면; 『福岡日日新聞』, 1884년 8월 5일, 2면. 두 기사에 여섯 가지에 걸친 소송 요지가 상세히 실려 있다.

103 일본 측 기록에서 울릉도장 전석규의 파견을 1883년으로 기재한 경우가 산견된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정부에서 경상도 함양 출신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약초를 캐면서 생활하고 있던 전석규를 도장에 임명하였다는 기록은 『江原監營關牒』 1882년 10월 20일(음력 9월 初9日) 기사에서 확인된다. 그가 임의로 울릉도 목재를 덴주마루에 탑승해 온 일본인들이 반출해 가도록 허락한 일을 개척사 김옥균이 적발하였다. 전석규는 1884년 2월 7일 울릉도장에서 파면되었고, 유배를 갔다. 김옥균이 전석규의 비위를 고발한 상소 내용은 『漢城旬報』를 비롯하여 일본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朝鮮議政府奏議」, 『郵便報知新聞』, 1884년 4월 28일, 3면 1단; 『福岡日日新聞』, 1884년 5월 9일, 2면; 송병기, 2010, 앞의 책, 178쪽; 신용하, 2020, 앞의 책, 75쪽; 박한민, 2020, 앞의 글, 249~250쪽.

104 「鬱陵嶋木材取戻の訴訟(前號の續)」,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30일, 3면; 『福岡日日新聞』, 1884년 8월 6일, 2면.

전석규가 주었다는 전령서는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물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영사 겸 판사 줄리어스 스탈은 증거물을 법정에서 제출하라고 명하였다. 오카자키는 해당 서류의 정보를 내무성(內務省)에서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부받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답하였다.¹⁰⁵ 증거물 확보와 제출 때문에 재판은 한 달가량 중단되었던 것 같다. 실제 이 문건은 내무소서기관(內務少書記官)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가 1883년 울릉도에 출장을 가 도항해 있던 일본인들을 퇴거시킨 전말을 보고한 복명서의 첨부문서 제1호였다.¹⁰⁶ 내무성에서 전령서 사본을 구해 원고 측이 재판정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⁷

모두 알고 거행할 것. 이 섬의 수목이 무성한데, 우리나라가 3년에 한 번 수토관(搜討官)을 들여보내 엄히 금지하였다. 나무를 기르는 일이 이미 수천 년이나 되었다. 천하의 물건은 각자 주인이 있고, 주인의 물건은 임의로 어지럽힐 수 없다. 이후로 다시 벌목하려 침탈하지 말라. 벌목한 나무는 속히 작업을 마친 후, 오는 8월 안으로 모두 신고 감이 마땅하다.

癸未 7月 島長 (印)

배경민(裴敬敏)을 금수도감관(禁樹都監官)으로 보내기로 정할 것(밀줄은 인용자)

위 내용은 울릉도장 전석규의 명령으로, 조선정부가 수토관을 3년에 한 번씩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본인들이 울릉도 목재를 벌채하려 함부로 침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정부가 울릉도에 부속한 삼림의 자국 소유권을 명확하게 일본인들에게 고지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음을 알 수 있다. 전령서는 8월 26일 재판 때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였

105 「鬱陵嶋木材取戻の訴訟」,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29일, 3면.

106 「朝鮮國蔚陵島出張檜垣內務少書記官復命ノ件」(JACAR Ref. A03023617600).

107 「鬱陵嶋木材取戻の訴訟(前號の續)」,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7월 30일, 3면; 『福岡日日新聞』, 1884년 8월 6일, 2면 3단.

고, 도야마(富山)란 영문학자까지 불리와 공증 작업을 거쳤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두고 정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고대리인은 내무성으로 해당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조선국 울릉도장 전석규가 주었던 전령서는 교부”하라는 내무경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문서 효력에는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⁰⁸ 하지만 판사는 전령서를 증거로 삼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29일 공판에서도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울릉도장 전석규와 히가키 내무소서기관이 담판 기록도 “충분한 증거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다. 담판 기록과 전석규의 전령서로는 원고가 울릉도 목재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피고대리인도 “목재는 조선 소유이지 원고 소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¹⁰⁹ 백춘배의 대리인이었던 장은규(張殷奎)까지 재판정으로 소환하여 전령서에 수록된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원고대리인은 전령서의 마지막 줄에서 “배경민은 인명(人名), 금수도감관은 관직명(官名)”으로, 울릉도감이 배경민을 통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벌목 금지, 기존에 벌목한 목재의 증여 사실을 원고 측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판사는 문제의 전령서에 전석규가 목재를 양여하겠다고 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령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재의 소유권이 원고 측에 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날 원고 측은 최종변론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벌채한 목재는 자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진술하였다.¹¹⁰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내무성에 보관되어 있던 전석규의 전령서를

108 「鬱陵島材木取戻の訴訟」,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8월 31일, 3면.

109 「鬱陵島材木取戻の訴訟(前號の續)」,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9월 3일, 3면.

110 「鬱陵嶋材木取戻の訴訟(前號の續)」,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9월 5~7일, 3면.

교부해달라고 청구하여 8월 6일에 돌려받은 경위, 문서 효력은 히가키 내무소 서기관의 파견과 함께 내무성 차원에서 보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전령서를 받았던 자가 현재 소유자로, 다른 사람의 반증이 없는 한 ‘정당한 소유자’임을 보여준다는 점을 말하였다. 네 번째 항목에서 전령서란 “명령을 전달하는 서면”으로, 이 명령에 울릉도가 “조선 판도에 귀속하기 때문에 장래의 벌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울릉도에 도항한 원고 일본인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울릉도민에게 양식을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호혜 차원에서 울릉도장이 기존에 벌목한 목재만은 ‘막대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항목에서도 울릉도장은 해당 “섬 지역에 전권이 있는 도장(島長)으로서 산물(産物)을 타인에게 부여할 정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증여받은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판사는 최종 변론까지 들은 후, 먼저 “울릉도는 조선 소속으로, 결코 원고와 피고 양쪽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런 다음 증거불충분으로 원고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며,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다.¹¹¹ 제출한 전령서만으로는 원고 측에게 목재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원고 측은 구두로만 판결을 내려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등본 발급을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추후에 판결문을 송달하겠다고 한 후 재판을 마쳤다.

3. 반리마루 적재 목재의 압류 처분과 가이 군지의 대응

1885년 5월 반리마루가 고베항에 도착하였다. 효고경찰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입항한 반리마루를 봉쇄하고 선주(船主)를 구인하는 조치부터 취하였다. 고베항에 있는 독일상사에서 반리마루에 적재된 목재를 압류해달라고 청원했기 때

111 「鬱陵嶋材木取戻の訴訟(前號の續)」, 『日本立憲政黨新聞』, 1884년 9월 7일, 3면.

문이었다.¹¹² 가이는 종사관 백춘배와 함께 소송에 나서 일단 해당 목재의 소유권이 조선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효고경찰서에서도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압을 해제하였다.¹¹³ 압류가 풀린 목재는 일단 세관 근처 해안가에 쌓아두었다. 7월 7일에는 와타나베가 조선국의 정당한 관리 위탁을 받았다는 판결도 나왔다. 백춘배는 귀국한 다음 목재 관련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하였는데, 와타나베는 운반비 등의 담보물로 목재를 압류하였다.¹¹⁴ 그 후 가이는 조선정부에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된 반리마루 운반 목재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였다. 그 사이 선장 와타나베로부터 인부들의 숙박비와 임금 등으로 채무에 대한 반환 요구가 빚발쳤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에 가이는 조선으로 들어가 정부 측과 접촉해보기로 하였다. 그는 개척사와 관련하여 출납하였던 회계 결산서를 세세하게 항목별로 작성하였고, 백춘배에게 보여주면서 일일이 확인을 받은 문서를 휴대하였다. 백춘배는 날짜를 ‘대조선 개국 494년 7월 16일(大朝鮮 開國 494年 7月 16日)’, 직책을 ‘동남제도개척사 종사관(東南諸島開拓使 從事官)’으로 기재한 다음 여기에 ‘청원에 따라 허가(準可)’이라고 적고 날인하였다.¹¹⁵ 8월 26일 고베를 출발한 가이는 10월 한성에 들어갔다. 그는 외아문에 출두하여 직접 청원할 생각이었다. 백춘배는 이 계획을 연기하고 자신에게 처리를 맡겨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1886년 6월이 되도록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체재비가 떨어져 더 이상 한성에 체류하기 어려워진 가이는 도쿄로 돌아갔다.

112 반리마루가 실어 간 울릉도 목재의 소유권과 처분을 둘러싸고 발생한 조선과 각국의 분쟁 양상은 이광린과 박성준이 『日案』과 『日本外交文書』에 수록된 문서를 중심으로 상세히 다루었다. 갑신정변 발발 전에 체결한 개척사 김옥균과 미국 상인 모스의 계약, 갑신정변 이후 영국 상인 미첼과 조선정부의 계약, 흡차대신 부사(副使) 필렌도르프와 독일상회의 약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본 현지에서 소송으로까지 비화하였다.

113 李光麟, 1986, 앞의 글, 33쪽.

114 『日本外交文書』卷19, #117, 346~347쪽.

115 乙第壹號證~乙第七號證(檢印濟計算表寫)『索債案件』.

외아문 주사 이원경(李源兢)이 도쿄에 체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이는 그에게 서한을 보냈다.¹¹⁶ 이원경은 비록 김옥균이 일본으로 도망한 범죄자 신분이라는 하나, “국가의 명으로 개척사가 되었으며, 공(公)을 받들어 행사하였으므로 들어간 재판 비용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답을 주었다.¹¹⁷ 배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기는 했지만, 이를 보증해준 이원경이 언제 귀국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불안해진 가이는 1887년 1월 2일 한성으로 건너가 백춘배와 재차 접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백춘배는 김옥균과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받은 후 1886년 9월 무렵부터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그를 만날 수 없었다.¹¹⁸ 1월 8일 가이는 직접 외아문에 찾아가 김옥균이 대여한 금액의 변제와 자신의 진퇴에 대한 처분을 서면으로 문의하였다.¹¹⁹ 1주일 후 외아문 독판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이 다년간 조선국을 위해 분란을 해결해왔는데 이를 알아주지 않아 원망스럽고, 자신이 소지한 인장(朝鮮開拓使甲斐軍治之印)이 흐릿해지기는 했지만, 조선의 관속(官屬)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리낄 것은 없다고 하였다.¹²⁰ 다음 날

116 이원경은 박기중(朴琪淙) 외 2인과 함께 조선 공사관 부지 물색과 해저전선 착공 연기 요청, 망명자 김옥균의 인도요구 등을 할 목적으로 1886년 9월 초부터 도쿄에 체류하였다. 조선정부에서 도쿄에 상주하는 공사를 파견하기 전까지 이원경은 대리공사 자격으로 쓰키치(築地)의 오다와라초(小田原町)에 설립한 조선공사관에서 공관 관련 사무와 일본 각 성과 육해군의 직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도쿄에서 1887년 3월 20일까지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朝鮮人來京』, 『東京日日新聞』, 1886년 9월 12일, 3면 3단; 「李源兢氏の一行來朝の理由」, 『東京日日新聞』, 1886년 9월 17일, 3면 3~4단; 「朝鮮公使館」, 『東京日日新聞』, 1887년 1월 16일, 2면 4단; 「李源兢氏」, 『東京日日新聞』, 1887년 3월 23일, 2면 4단; 한철호, 2010,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35~37쪽.

117 甲第六號 大朝鮮 開國 495年 9月 25日(양 1886. 10. 22.)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 李源兢 → 甲斐軍治 『索債案件』.

118 백춘배는 1887년 4월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사형당하였다. 노대환, 2013, 「白春培(1844~1887)의 探探使 활동과 對러시아 인식」, 『역사문화연구』 46, 146쪽.

119 이날 오후 3시 가이와 구리바야시 쓰구히코(栗林次彦)가 외아문에 찾아가 김옥균의 대금 상환 건을 상담하고 돌아갔다는 기사는 외아문 일지에도 나온다.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統署日記』 卷1, 丙戌 12月 15日(양 1887. 1. 8.), 466쪽.

120 『統署日記』 卷1, 丙戌 12月 22日(양 1887. 1. 15.), 467쪽. 이 서한은 『索債案件』

외아문에서는 정부에서 알지 못하는 바이니 양해를 바란다고 가이에게 회신하였다.¹²¹ 가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개척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온갖 괴로움을 맛보면서 진력해왔는데, 조선정부의 예상 밖 답변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였다. 그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개척사와 관련된 여러 증빙문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가이가 유키 영사대리에게 상환을 청구한 전체 금액은 11,279엔 54센 3린이었다. 여기에는 교환하여 충당해 넣은 금액, 관리 인원의 급료, 숙박비, 선박 고용 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9,940엔, 이자 349엔 54센 3린, 가이의 일당과 여비 990엔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해 6월 12일 그는 재차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청구 금액에 변경이 발생한 사유를 진술하고, 재조정된 금액의 상환을 조선 측에 요구하였다. 반리마루 인부의 임금과 숙박료 등도 원래 본인이 담당하였으나, 관련자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금액 6,780엔을 제외하였다. 대신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자와 체류 일당으로 559엔 23센 2린을 추가하였다.¹²² 가이가 조선정부에 청구한 최종 금액은 5,058엔 77센 5린이었다.

구체적인 비목별 청구 금액은 1889년 10월 27일 곤도 공사가 오쿠마 외무 대신에게 최종 타결된 지급 금액을 정리해 보고한 문서에 나온다.¹²³ 앞서 다루

에 실려 있지 않다.

121 『統署日記』卷1, 丙戌 12月 念3日(양 1887. 1. 16.), 467쪽; 甲號五號 丙戌 12月 27日(양 1887. 1. 20.) 朴準禹 → 甲斐軍治 『索債案件』. 『統署日記』에는 “此非政府所知, 諒之云云”이라고만 실려 있다. 반면 『索債案件』에는 외아문 주사 박준우(朴準禹)가 가이에게 보낸 서한 전문이 실려 있다. 가이가 어제 보내온 서함은 독판이 열람하였고, 정부에도 보고하였지만 정부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이를 헤아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昨天來函呈閱督辦大人, 而稟我政府, 則此非政府所知, 須將此由函送貴下之意承教, 茲庸仰佈照亮”). 이것은 1월 15일 가이의 서함에 회답한 것이다. 날짜가 ‘丙戌 12月 27日’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서함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아닐까 한다. 『統署日記』 丙戌 12月 27日에 가이와 관련된 기사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박준우가 군지에게 보낸 회신은 『統署日記』에 실린 날짜(丙戌 12月 念3日)대로 보아야 한다.

122 1887년 6월 12일 甲斐軍治 → 領事館 事務代理 久水三郎 「再願書」, 『索債案件』.

었듯이 외아문 참의 정병하가 협상 권한을 위임받고 곤도와 내밀하게 논의하여 가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에는 변동이 있었다. 정병하는 가이가 이자 금리로 제시한 연 1할 8분(1885년 9월~1887년 5월)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영사관에서 기소하였던 달부터 이해 10월까지 30개월분에 대하여 연 6분(分)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이가 기재한 체재비 1,380엔 31센 5모는 조선정부에서 그에게 별도로 체류를 지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다만 가이가 개척사를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였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300엔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이에게 지급할 금액은 3,678엔 46센 4린 5모였다.¹²⁴ 10월 26일 민중묵은 곤도에게 조회를 보내어 최종적으로 타결을 본 금액을 송부하면서 이것을 가이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 영수증과 관련 증빙자료를 가이에게 잘 받아서 조선 측으로 회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²⁵ 이해 12월 7일 아오키 외무차관이 곤도 대리공사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일본인들에 대한 채무 상황 건이 모두 잘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⁶ 개척사와 관련된 채무 문제를 모두 청산하고 나서 외아문에서 관련된 증빙을 수합하여 남겨둔 자료가 바로 『갑비군치색채안건』이었다.

123 機密第72號 1889년 10월 27일 代理公使 近藤眞鋤 → 外務大臣 大隈重信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387쪽).

124 『日案』卷2, #1532 18쪽.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금액에는 오류가 있으며, 해당 금액이 나온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李光麟, 1986, 앞의 책, 36쪽). 機密第72號(『史料叢書』卷29, 389쪽)에는 가이가 받을 금액 합계가 '3,678엔 46센 5린'으로 적혀 있어 약간 차이가 난다. 1889년 11월 8일 곤도가 민중묵에게 보낸 회신도 '3,678엔 46센 4린 5모'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외교 문서에 나오는 액수가 정확한 것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본문을 서술하였다.

125 機密第72號 別紙戊號 己丑 10月 初3日(양 1889. 10. 26.) 閔種默 →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405~406쪽); 『日案』卷2, #1532 18쪽.

126 機密第124號 1889년 12월 7일 기초 外務次官 青木周藏 → 代理公使 近藤眞鋤 『職夫雇賃請求』(『史料叢書』卷29, 414쪽).

V. 맺음말

1883년 4월 김옥균은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울릉도 목재를 벌목, 반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선박과 인부를 고용하였다. 인부들의 울릉도 도항에 필요한 여권 발급은 김옥균이 도쿄부지사와 접촉하여 처리하였다. 개척사의 수행원은 탁정식과 백춘배, 김우성과 양재문, 일본인 가이 군지였다. 이들은 울릉도와 바간, 고베, 도쿄 등지를 오가며 벌목작업을 할 인부와 선박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목재 반출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척사 수행원들이 일본 선박과 일본인 인부를 고용하여 울릉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왕래하면서 적재해 온 규목의 전체 수량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새로 발굴한 가이 군지 관련 자료로 검토하였다. 울릉도에 6차례 왕복하기 위해 고용한 일본 선박은 초호마루, 모로마루, 이세마루, 반리마루였다. 벌목 작업에 종사했던 일본인들은 갑신정변 발발로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한 가운데 인건비 상황을 일본정부를 통해 청구하였다. 조선정부는 역적 김옥균이 개척사로서 벌인 일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인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 측에 체불 임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난항을 거듭하던 양국의 교섭 국면을 타결하기 위해 정병하가 중재자로 등장하였다. 그는 고종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진행 상황을 아뢰었고, 외아문 참의가 되어 일본공사와 금전 상환 건을 최종 조율하고 타결하였다. 정병하는 일본인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수용하지 않았으며, 과도하다 싶은 이자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신에 가이의 경우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그 후 해당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일본공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외무성은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증빙문건을 회수하여 외아문에 전달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의 금전 채무와 관련된 문건을 모아서 편찬한 최종 결과물이 『갑비군지색채안건』이었다.

또한 울릉도 도항 인부들을 감독한 다무라 쇼타로와 관련하여 개척사 수행

원 두 명이 시마네현까지 표착하면서 발생한 채무 문제도 다루었다. 쇼타로의 부친 켄에몬에게 후대하고 있던 총기를 담보물로 맡기고 일본 현지에서 사용할 금전을 빌린 자는 김우성이었다. 그는 개척사 업무 수행 중 김화원이라는 별칭을 사용하였다. 그가 백춘배가 체류하고 있던 고베로 이송된 후 연락이 끊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총기 소지는 일본 현지에서 「총포단속규칙」 위반이었고, 김우성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켄에몬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내무성은 외무성에 총기의 처분 방향을 문의하였다. 외무성은 원산영사관을 경유하여 조선 지방관청에 해당 조선인의 신원조회를 하였다. 덕원 부사는 통천군수에게 이 자들을 찾아보도록 지시했으나, 고성군 관내에는 해당 인물이 없었다. 김우성의 소재 파악에 실패한 일본 측은 그가 맡긴 총기를 켄에몬 소유로 간주하고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다.

초호마루와 모로마루가 실은 울릉도 목재가 고베항에 도착한 이후 소유권을 두고 일본인 업자와 미국무역회사 간에 발생한 법정 공방은 당시 신문을 통해서 상세히 보도되었다. 재판에서는 울릉도장 전석규가 일본인에게 발급한 전령서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다. 문서에서 울릉도는 조선정부가 3년에 한 번씩 수토관을 파견하는 판도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일본인들의 침입과 몰산 침탈을 금지하였다. 일본인 업자들은 울릉도장으로부터 전령서를 받은 자신들에게 목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울릉도가 조선 소속임은 분명하나, 전령서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리마루도 고베에 입항하자 독일상사에서 목재를 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백춘배와 가이가 나서서 해당 목재는 조선 정부 소유임을 증명하며 차압을 풀었다. 하지만 목재를 운반해 온 비용과 인건비 등의 지불 문제로 반리마루 선장이 목재를 다시 압류하였다. 백춘배는 귀국하였다가 김옥균과 연루된 혐의로 붙잡혔고, 심문을 받은 후 사형을 당하였다. 결국 개척사와 관련된 비용 정산은 가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는 도쿄에 체류하던 외아문 주사와 접촉하기도 했고, 도한 후에는 외아문으로 직접 찾아가 면담을 시도하며 개척사 관련 금액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동남제도개척사 실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의 정산과 관련 증빙서류의 반환은 1889년 12월에 완료되었다. 조선정부는 더 이상 개척사와 관련된 비용 청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 개척사의 수행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울릉도 목재 반출 관련 업무는 갑신정변 이후 조일 양국의 장시간에 걸친 교섭을 통해 채무 상환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외아문에서 수령하고 나서야 사건은 종결되었다. 일본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 가치가 높았던 울릉도 목재는 조선 내부의 정치적 변동과 맞물리면서 동남제도개척사가 업무를 개시할 때의 취지와 달리 조선정부의 재원 마련에 활용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참고문헌

자료

- 『東京日日新聞』, 『福岡日日新聞』, 『山陰新聞』, 『時事新報』, 『郵便報知新聞』, 『日本立憲政黨新聞』, 『朝野新聞』, 『朝日新聞』.
- 『甲斐軍治索債案件』(奎2629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困難船及漂民救助雜件 朝鮮國ノ部』卷4(JACAR Ref. B12081771700).
-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統署日記』卷1(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高麗大學校出版部, 1972).
- 『舊韓國外交文書: 日案』卷1·2(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高麗大學校出版部, 1965·1967).
-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3(박정신·이민원 번역, 국사편찬위원회, 2015).
- 『吉田清成關係文書』卷3(京都大學文學部日本史研究室 編, 京都: 思文閣出版, 2000).
- 『대한계년사』1(정교 저, 변주승 역주, 소명출판, 2004).
- 『同文彙考』卷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山口縣平民內田德次郎外一名ヨリ朝鮮政府代人白春培ニ對スル職夫雇賃請求一件』(『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卷29, 金容九 編, 亞細亞文化社, 1995).
- 『承政院日記』(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神戸港ニ於テ日本形船万里丸朝鮮國蔚陵島ヨリ搭載ノ材木差押一件』(JACAR Ref. B10074439400).
- 『日本外交文書』卷14·18·19(日本 外務省 編, 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50~1955).
- 『朝鮮國蔚陵島ハ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卷1(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분류번호 3-8-2-0-4).
- 『井上外務卿金玉均對話筆記摘要』, 『韓國借款關係雜纂』卷1(JACAR Ref. B04010719200).

「朝鮮國蔚陵島出張檣垣内務少書記官復命ノ件」(JACAR Ref. A03023617600).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한일 조약 자료집(1876~1910)』, 동북아역사재단.

박은숙, 2011, 『김옥균, 역사의 혁명가 시대의 이단아』, 너머북스.

박정신·이민원 번역, 2015,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3, 국사편찬위원회.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신용하, 2020,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중』, 동북아역사재단.

崔仁辰, 1999, 『韓國寫眞史 1631-1945』, 눈빛.

한철호, 2010,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琴秉洞, 2001, 『增補新版 金玉均と日本: その滞日の軌跡』, 東京: 綠蔭書房.

논문

노대환, 2013, 「白春培(1844~1887)의 探探使 활동과 對러시아 인식」, 『역사문화연구』 46.

박성준, 2014,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벌목 계약 체결과 벌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東北亞歷史論叢』 43.

박은숙, 2012,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울릉도·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36.

박한민, 2020, 「1883년 덴주마루(天壽丸)의 울릉도 목재 불법반출과 조일 간 반환 교섭」, 『史叢』 99.

유바다, 2010, 「1883년 김옥균 차관교섭의 의미와 한계」, 『한국근현대사연구』 54.

李光麟, 1986, 「金玉均의 「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使」 任命에 대하여」,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울릉도 목재 반출과 채무 상환을 둘러싼 조일 교섭

박한민

1883년 4월 김옥균은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울릉도의 풍부한 목재를 반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 선박과 인부를 고용하였다. 백춘배와 가이 군지는 울릉도와 바간, 고베, 도쿄 등지를 오가면서 벌목작업을 할 인부와 선박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개척사를 대리하여 울릉도 목재의 반출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울릉도에 왕복한 고용 선박은 초호마루, 모료마루, 이세마루, 반리마루였다. 갑신정변 발발 이후, 벌목 작업에 종사한 일본인 인부들이 인건비 상환을 요구하면서 조선과 일본 정부는 협상에 나섰다. 장시간 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양국의 교섭 국면을 타결하기 위해 정병하가 나섰다. 그는 외아문 참의로서 일본공사와 협상하여 금전 상환 문제를 해결하였다. 개척사 수행원 가운데 김우성과 양재문은 시마네현에 표착하기도 하였다. 김우성은 휴대하고 있던 총기를 담보물로 맡기고 일본 현지에서 사용할 자금을 현지인에게 빌렸다. 연락이 끊어지고 돈을 갚지 않자, 외무성은 원산영사관을 경유하여 조선 지방관청으로 김우성의 신원조회를 하였으나, 소재 파악에는 실패하였다. 일본 측은 총기를 신고자 소유로 간주하고 「총포단속규칙」에 따라 처분하기로 하였

다. 울릉도 목재를 적재한 선박이 고베항에 도착한 이후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일본신문은 소송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울릉도장 전석규가 일본인에게 발급한 전령서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다. 일본인 업자들은 울릉도장의 발급한 문서를 소지한 자신들에게 목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울릉도가 조선 소속임은 분명하나, 제출 증거물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이 군지도 비용 정산을 조선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는 도쿄에 체류하던 외아문 주사 이원공과 만나기도 했고, 도한 후에는 외아문에 찾아가 개척사 관련 금액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1889년 12월, 동남제도개척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정산과 관련 증빙 서류의 반환은 완료되었다. 조선정부는 더 이상 개척사와 관련된 비용 청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주제어: 울릉도, 김옥균, 백준배, 정병하, 전석규, 가이 군지, 외아문, 고베항

ABSTRACT

The Negoti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over the Repayment of Debt and the Export of the Ulleung Island Wood by Kim Ok-kyun, Development Commissioner for the Southeastern Islands

Park Hanmin

In April 1883, Kim Ok-kyun(金玉均) was appointed as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for the Southeastern Islands(東南諸島開拓使). He went to Japan to hire ships and workers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and selling abundant wood from Ulleung Island. Baek Chun-bae(白春培) and Gai Gun-ji(甲斐軍治) were in charge of the actual affairs on behalf of Kim Ok-kyun. They signed contracts with workers and ships that would log while coming and going Ulleung Island, Kobe and Tokyo, and handled the transportation wood from Ulleung Island on behalf of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The round-trip employment vessels to Ulleung Island were Chohomaru, Moryomaru, Isemaru, and Banlimaru. After the outbreak of the Gapsin Coup in 1884, the Joseon and Japanese governments began

negotiations as Japanese workers engaged in logging demanded the repayment of labor costs. Jung Byung-ha stepped up to settle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d been struggling for a long time. As an official of the Foreign Office, Jung negotiated with the Japanese minister to resolve the issue of money repayments. Kim Woo-sung and Yang Jae-moon were among the entourage of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who arrived in Shimane Prefecture. Kim left his gun as collateral and borrowed money from locals for use in Japan. When the contact was lost and the money was not paid back,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conducted a background check on Kim Woo-sung through the Wonsan Consulate, but failed to locate him.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guns owned by the reporter and decided to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gun control rules. A lawsuit took place over ownership after a ship loaded with Ulleung Island wood arrived at Kobe Port. The Japanese newspaper reported the lawsuit in detail at the time. Japanese workers claimed that they had the right to own woods for those who had documents issued by the Ulleung Island official. The judge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 saying, "It is clear that Ulleung Island belongs to Joseon, but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ownership of the plaintiff by the evidence submitted only." Gai also asked the Joseon government to settle the cost. He also contacted Lee Won-gung(李源兢), the official of the Foreign Office in Tokyo, and after he moved to Joseon, he visited the Foreign Office to urge him to reimburse the amount related to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In December 1889, the settlement of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work of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for the Southeastern Islands and the return of related

documentary evidence were completed. The Joseon government officially informed Japan that it would no longer accept expens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commissioner.

Keywords: Ulleung Island, Kim Ok-kyun, Baek Chun-bae, Jung Byung-ha, Jeon Seok-gyu, Gai Gun-ji, Foreign Office, Kobe Port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의 동아시아사 깊이 읽기

– 『동아시아사 입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손성욱 | 선문대학교 역사·영상콘텐츠학부

- I. 동아시아사 ‘입문(入門)’의 근경
- II. 한중관계 속 책봉-조공 관계와 국제관계의 실제
- III. 동아시아 역사 공간의 확장과 연결
- IV. 중국 중심의 일방향적 문화전파론 탈피
- V. 동아시아의 근대적 전환
- VI.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성찰
- VII. ‘입문’과 ‘깊이 읽기’ 사이의 고리



I. 동아시아사 ‘입문(入門)’의 곤경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 교육이 시작된 지 10년째이다. 2000년대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 갈등이 깊어질 때,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영을 추구하고, 2007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동아시아사 교과목을 신설했고,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정식 교육이 시작되었다. 출발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동아시아’인가, 누구를 위한 ‘동아시아’인가, 동아시아사가 지역사로 정립 가능한가 등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현재 동아시아사 교과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건설적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사 교육 10년, 동아시아를 보는 시각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2017년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김치·한복 ‘원조 논쟁’으로 반중정서는 더욱 커졌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정체 속에서 반일정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주변국이 점점 보수화되고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중·반일정서의 심화는 외부 변수에 의한 것으로 동아시아 교육과 큰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방향은 맞는 것일까.

2020년 말 동북아역사재단이 출간한 『동아시아사 입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다. 1장 「총론: 동아시아사의 배경과 지향」을 쓴 안병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면서도, “중국의 경제·군사적 굴기(屈起) 및 북한의 핵무장”,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갈등 지속”,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교과서 서술),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갈등”으로 인해 반목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식의 의도적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사 교육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사 입문』은 그동안 동아시아사 교육이 비판받아온 여러 지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두텁게 만들고, 본격적인 동아시아사 이해를 위한 첩경을 제공하여 동아시아 평화 증진을 위한 “의식의 의도적 형성”에 일조하려 한다. 다만 본서는 ‘입문’이라는 제목처럼 쉬운 개설서가 아니다. 동아시아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의 진입장벽이 있다. 책머리에서 본서는 “일선 교사를 비롯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동아시아사에 대한 수준 높은 입문서를 개발해 교육 현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고,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원 연수 교재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가장 먼저 고려된 독자는 동아시아사를 담당하는 일선 교사이다. 책의 체재 역시 각 장을 주제별로 구성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방면으로 조정했으나, 동아시아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독자가 장마다 ‘주어’가 바뀌며 고대에서 현대까지 전개되는 긴 시간의 흐름을 연결하며 따라가기 쉽다. 그렇기에 각 장의 내용을 핵심 맥락에 따라 유기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평자는 책에 대한 평은 가능한 줄이고, 주요 맥락에 따라 각 장의 내용을 분류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서의 내용을 ‘한중관계 속 책봉-조공 관계와 국제관계의 실제’, ‘동아시아 역사 공간의 확장 and 연결’, ‘중국 중심의 일방향적 문화전파론 탈피’, ‘동아시아의 근대적 전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성찰’로 정리해 일반 독자가 이 책을 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경’을 넘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사에 ‘입문’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동아시아사 입문』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II. 한중관계 속 책봉-조공 관계와 국제관계의 실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 관계가 중요

한 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책봉과 조공이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책봉-조공 관계를 도식화시켜, 실제 힘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간의 제한 없이 이해하는 것이다. 한대, 당대, 명대 책봉-조공 관계의 함의와 실체가 다르며, 중원 국가와 한반도 국가, 중원 국가와 유목민족 국가 간의 관계가 상이하다. 중국이 분열된 시기와 통합된 시기 다른 양상의 국제질서가 전개되며, 시대에 따라 책봉-조공 관계는 의례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구속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한과 고조선의 관계를 통해 책봉-조공 관계의 '기원'을 보여주는 1장 「고조선의 성장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송호정)도 “조공-책봉 관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각 국가들의 역학관계가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조공-책봉 관계와 역학관계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47쪽)고 설명하며 형식보다 실제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조선의 성장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기원전 8~7세기 고조선 성립 이후 시작된 중원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신’ 왕래에 의한 외교 관계는 위만이 등장한 이후부터라고 설명한다. 한은 변경의 군사적 안위를 위해 위만조선에 한의 외신(外臣)이 될 것을 제안했다. 위만조선은 한과의 무역과 주변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실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의 외신이 되었다. 이는 위만조선이 한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한과 위만조선 간 책봉관계가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 무제의 시각에서 위만조선이 외신의 ‘의무’를 방기하자, 한 무제는 위만조선을 정벌해 군현을 설치했다. 한과 위만조선의 책봉관계는 상호의 필요로 성립하였고, 위만조선이 외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한 무제의 힘에 의한 정벌로 깨졌으며, 이러한 양국관계는 국익과 국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책봉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2~4장은 한 이후 중원의 분열에서 수·당 시대 통합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국가들이 어떻게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중원 국가와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본다. 2장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사의 전개」(여호규)는 중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고구려의 성장을 보여준다.

중원이 전한-후한-위·촉·오로 이어지던 분열의 시기에 고구려는 국가적 성장을 하며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갔다. 이후 서진-5호 16국-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며 중원의 분열이 지속하면서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었고, 고구려는 중원 국가와 중층적 국가 관계를 맺으며 독자세력권을 구축했다. 하지만 수·당 시대 중원이 통합되었음에도, 기존의 독자세력 의식으로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하다 멸망에 이르렀다. 3장 「신라의 통일전쟁과 동아시아」(전덕재)는 7세기 수·당 교체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해 통일을 이루고, 이후 고구려, 발해 유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통삼한의식(一統三韓意識)’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사대교린을 원칙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견지한 모습을 설명한다. 사대교린은 이후 고려, 조선에도 계승되었다. 4장 ‘발해와 동아시아’(윤재운)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매우 소략하게 다루는 발해의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본다.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동아시아의 육상 및 해상 교역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했다. 안사의 난 때, 발해는 기민한 외교를 통해 소그드 네트워크와 접촉해 성장했고, 당시 발해의 “역참제는 수상·육상·해상 교통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서해(압록강·휘발하 수계)·동해(두만강 수계)·북방 유목민과의 교류 출구(묵단강 수계)의 거점이자 실크로드의 간선 거점으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동맥이었다.”(147쪽)

9장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이익주)는 당 멸망 이후 중원의 분열로 형성된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대외관계를 맺었는지 고찰한다. 당이 멸망하고 오대십국의 분열 시기로 들어서면서 당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균열이 생기며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한반도 역시 신라·후백제·고려로 분열했다. 삼국은 오대 왕조와 책봉-조공 관계를 맺기 위해 경쟁을 벌였으며, 칭신(稱臣)은 하지 않았지만 십국과도 교류했다. 중원을 송이 통일하고, 북방에서 거란이 성장하면서, 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송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친송·반거란 정책을 취했다. 이후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송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거란의 묵인 하에 송과 교류를 지속했다.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거란, 송, 고려, 하 등이 참여

하는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고려는 거란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외왕내제(外王內帝)’의 황제국 체제를 갖추어 당시 다원적 천하관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13세기 초 몽골이 굴기하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일원적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은 본서에서 고려가 중심이 아니라, 10장에서 새로운 초원의 질서를 수립하고 유라시아의 전환을 가져온 몽골제국으로 설명한다. 몽골-고려 관계는 10장의 저자 설배환이 지적하듯, “한중관계의 일반적인 형태로 알려진 조공·책봉 관계와 근본적으로 달랐다.”(321쪽) 몽골은 고려 국왕의 통치권을 인정했지만, 고려 내정에 깊이 간여했다. 고려는 몽골제국의 제후국으로 제국 체제 안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몽골-고려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와 다른 몽골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중원에 자리한 국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일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원적 국제질서는 원·명·청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었으며, 고려와 조선이 사대교린 정책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중관계의 기본 틀인 책봉-조공 관계는 몽골제국 이전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지만, 몽골제국 이후 20세기 초까지 대부분 중원의 통합이 이어지면서 잦은 분열을 보인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18장 「조선시대 한중관계 이해의 문제점」(계승범)은 이 점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한다. 일본 식민지 시기 조선시대 사대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의 ‘정체성’과 ‘타율성’이 강조되었고, 해방 이후 식민사관의 극복을 위한 조선의 자주적 실리 외교를 부각하며, 책봉-조공 관계의 의례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군신관계의 구속력보다 국력과 국익에 따른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서의 몽골제국 이전 한중관계 역시 힘의 역학관계에 중점을 두어 서술했는데, 조선시대도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계승범은 “조선 시대 한중관계의 본질도 과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530쪽)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원의 중원 통합 이후 동북아에 일원적 국제질서가 강력하게 자리 잡았으며, 한반도는 이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명·청에 대한 조선의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었으며, 그만큼 자주성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531쪽) 책

봉-조공 관계의 의례적 성격이 강조되며, 상국의 조선에 대한 실질적 간섭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명·청 시대 책봉-조공 관계를 “군신관계에 기초해 실제로 작동한 국제질서”(537쪽)라고 규정한다.

계승범의 주장이 타당한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다루고 있는 13장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오항녕)은 “교과서를 부연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추하는 방향으로 서술”(381쪽)해 연결지어 살펴보기 어렵다. 오항녕은 ‘임진왜란’에 있어 조선의 당쟁론 프레임, ‘당쟁론’ 속 사라진 ‘침략’, 조명 관계에서 보이는 만성화된 명의 의심, ‘임진왜란’의 명칭 문제 등을 설명하며, ‘상식’이 다를 수 있는 면을 드러내면서 낯설게 만들어 독자의 역사적 사고를 환기한다. 본서 전체에서 보기 드문 서술 방식으로, 동아시아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다만 역사적 사고에 방점을 두는 방식은 두텁게 정보를 제공해 판단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Ⅲ. 동아시아 역사 공간의 확장과 연결

앞서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중원의 분열과 통합에 의한 다원적 국제질서와 일원적 국제질서의 양상에 따른 책봉-조공 관계의 다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책봉과 조공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전부는 아니다. 중원왕조와 북방민족 간의 관계를 보면 책봉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책봉과 조공의 틀로 실제 역사상에 부합하는 다원적인 동아시아를 설명한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원왕조와의 길항관계 속에서 발전한 북방민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방민족은 중원왕조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세력을 확장하고 이동하여, 동아시아의 공간을 확대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동아시아 내 인적 및 물적 이동과 교류를 추동하였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북방민족으로 한대 흉노가 가장 먼저 언급되며,

흉노는 중원의 통일왕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오아시스 국가와 복인도 지역까지 영역을 넓혀 동아시아의 공간을 한층 확대한 것은 돌궐이었다. 6장 「6~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정재훈)는 분열된 중원의 국제정세 속에서 6세기 돌궐제국의 성장과 중원을 통일한 수·당의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돌궐제국의 쇠퇴, 8세기 중반 당의 쇠퇴 속에서 토번, 위구르의 성장을 다룬다. 당이 북방 민족에 정치적·군사적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은 경제적·문화적 우위 속에서 지원과 압박을 통해 상호 이익의 합치를 이뤄 ‘기미지배체제(羈縻支配體制)’를 구축하고, 당 주도의 국제질서를 이뤄냈다. 하지만 8세기 중반 이후 당의 쇠퇴 속에서 토번, 위구르 등이 세력을 크게 확장하며 당 주도의 국제질서가 와해되었으나, 이 시기 동서 교통로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특히 “위구르의 확장 정책은 일시적으로 쇠퇴하였던 초원로를 통한 동서 교류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194쪽) 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했던 강력한 세력들이 약화하면서 다극체제가 심화하였고, 그 양상은 앞서 설명한 제9장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려」에서 고려를 중심으로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10~12세기 동아시아 다극체제를 종결한 것은 13~14세기 중국을 포함해 유라시아의 2/3를 정복한 몽골제국이었다. 10장 「몽골제국: 새로운 초원의 질서와 유라시아 전환」에서 설배환은 몽골제국의 시대를 “지구사에 한 중대한 분수령”(281쪽)이라고 강조한다. 몽골제국의 성장은 “중앙아시아에서 9세기 이래 진행된 투르크-몽골의 정치적 지배력을 완결하는 과정”(326쪽)이었으며, 이 시기 유럽에서 중국까지 몽골제국에 의해 연결되며 경제적으로 “세계체제의 재구성”이 이뤄졌다. 고려 역시 기존의 책봉-조공 관계와는 다른 몽골제국의 체제안으로 편입되었다. 동아시아가 크게 확장하며 거대한 제국 네트워크와 연관되었다. 12장 「몽골의 일본 침략: 동아시아 속의 일본」(남기학)은 몽골제국의 확장을 일본의 시각에서 본다. 본장은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 걸친 쿠빌라이 칸의 일본 침략과 일본 침략 전후에 있었던 몽골의 일본 초유(招諭)를 살펴보고, 일본의 외교적 대응과 실현되지 않았지만 막부의 “이국정벌(異國征伐)” 계획을 설명한다. 임전체제하에서 막부는 고케닌(御家人)에 대한 슈고(守護)의 군사지

휘권과 국내 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막부정치 of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대외 침략으로 인한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 일본 내 신국(神國)사상과 “무위(武衛)” 관념이 고양되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보면, 몽골제국을 중심으로 동서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몽골제국의 정치적 질서에 편입되지 않아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2장의 마지막 절인 ‘4. 몽골의 침략 이후 일본과 동아시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몽골의 제2차 침략 이후 몽골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 “교전이 없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공공연히 상선이 왕래하고 문물의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368쪽) 있었으며,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 동안 중국 승려의 일본 도래와 일본 승려의 중국으로 유학이 성행하면서 문화교류가 활발했다.

지금까지 설명이 6~14세기 북방민족을 중심으로 한 내륙으로의 동아시아 확장을 보여준다면, 8장 「고대동아시아 해역 세계의 교류」(정순일)는 해역으로의 공간 확장을 보여준다. 정순일은 고등학교 동아이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과정 서술에서 한자, 유교, 한역불교, 율령 등 중국적 요소의 동아시아 전파를 일방향 확산으로 기술하거나, 중국적 요소의 영향력 범위가 동아시아 세계처럼 여겨지는 서술이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서술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 물건, 문화, 정보의 이동과 그 이동의 연쇄가 만들어주는 문화권의 실체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서술 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그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동아시아 해역 세계의 역사를 제시하며, 그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활발한 국제이동이 두드러진 “긴 9세기”(770년대~930년, 일본의 호키 연간에서 엔초 연간)에 주목한다. “긴 9세기” “이동의 주체”인 신라인, 발해인, 당인(唐人)과 “이동을 파악하는 주체”로 일본열도의 기록자들을 통해 당시 해역에서 이루어진 인적 및 물적 이동과 문화교류의 양상을 재구성해 보여준다.

해역에 대한 논의는 11~15세기를 건너뛰어 16세기로 넘어간다. 전지구적 국제무역시스템의 형성 과정을 은 유통을 중심으로 다룬 14장 「은 유통과 동아시아」(조영현)는 세계적으로 은본위가 확산한 요인을 중국발 은 수요 급증과 일

본과 아메리카의 은 공급 확대를 설명하며, 두 현상이 연관되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현상이 16세기에 연결되자 급진적인 상호 작용을 일으켜 세계사의 획을 긋는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명이 해금정책을 펼치면서도 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57년 포르투갈의 마카오 점거를 묵인하고, 1567년 월항(月港)을 대외적으로 개항했다. 비록 교역에서 일본을 배제했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적 매개자” 역할을 하며, 명과 일본의 무역은 위축되지 않았고, 일본 은이 명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서양 상인들을 통해 동아시아 교역망은 세계 경제와 직접 연결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중국 중심의 조공무역이 유지되었지만, “16세기 이후 동아시아 내부의 교역망이 다변화되면서 내부적인 경쟁관계가 전개되었고, 점차 조공무역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역의 형태가 등장하였다.”(429쪽) 조영현은 정순일처럼 해역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교역망이 세계교역망에 연결되고 다변화되면서, “초기 경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해상교역망을 통해 제시한다.

은 유통의 문제는 15세기 후반 이래 지속된 분열의 시대에서 17세기 통합의 시대로 이르는 과정을 다루며 일본 사회의 변화를 설명한 16장 「16~17세기 오다·도요토미 정권과 에도막부 성립의 의의」(박수철)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은 충의 일본 전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다 노부나가와 오다 정권은 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충은 16세기 중반 우연한 기회에 포르투갈인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고, 포르투갈과 일본의 접촉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며 충기 제작 기술까지 일본에 전래되었다. 양자의 접촉이 지속 가능했던 것은 16세기 초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연은분리법(鉛銀分離法)을 들여와 은을 대량 생산했고, 유럽인은 일본 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의 충기 전래는 동아시아 내 존재하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다 정권은 일본 내 주요 생산지인 사카이(堺)와 구니토모(國友)를 장악하고 있었다. 화약의 원료인 초석은 대부분 수입하여 조달했는데, 오다 정권은 주요 충기 생산지이자 국제무역항이었던 사카이를 통해 원활하게 초석을 확보하였다. 박수철은 이와 같

은 설명을 통해 일본에서 충기 전래가 갖는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해 동아시아의 교역망이 어떻게 일본에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준다.

IV. 중국 중심의 일방향적 문화전파론 탈피

동아시아 교과서는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율령, 유교, 한역불교, 한자의 형성·전파·수용 과정을 서술하는데, 이들 중국적 요소는 중국에서 그 이웃 국가로 전래된 것이기에 일방향적 문화전파론으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 그렇기에 『동아시아사 입문』은 이들 요소의 전파 과정을 다루기보다 중국 내 발전이나 이를 받아들인 국가의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춰 다룬다. 5장 「수·당대 율령체제의 형성」(박근철)은 형벌법에 해당하는 율(律)과 비형벌법에 해당하는 영(令)을 통해 권력의 보편성과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수·당대 율령제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율령 편찬 과정과 당대 율령의 구조와 특색, 운영 실태를 설명한다. 11장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리 구조와 그 차이」(이근명)는 훈고학과 차별되는 유학의 혁신을 이끈 지배층인 송원대 사대부와 불교와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유학인 송학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송학의 주요 조류였던 주자학과 양명학의 주요 논리와 사상가, 양자 간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5장과 11장이 율령과 유학의 전파 양상과 한국, 일본 등의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국 내에서의 형성과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면, 또 다른 요소인 한자에 대해 7장 「동아시아 속의 한자」(이근우)는 “한자·한문을 동아시아 사회 속에서 문화 전달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강조하면서, 중원에서 이웃 지역으로 한자의 전파는 소략하게 다루고, 이웃 국가의 한자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향찰과 이두, 일본의 가나, 베트남의 쯔남에 관해 설명한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폭넓게 이해해 “훈민정음이 한어(漢語)를 익히고 한자의 음운을 알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한다. 근대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기반으로 신문물을 번역하면서, 근대적 전환에서 ‘한·중·일의 언어

적 공통성’(217쪽)이 다시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사 입문』의 율령, 유교, 한자에 관한 서술은 중국에서 ‘주변’으로의 일방향적 전파로 읽히지 않는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일면적으로 제시한다. 율령과 유교의 경우 한국, 일본, 베트남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관한 서술 없이 중국에서의 형성과 성격만 기술해 동아시아적 의미가 무엇인지 간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면적 구성은 문화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17장 「조선통신사」(정성일)은 조선이 1413년에서 처음 일본에 파견해 1811년까지 보낸 조선통신사의 개념, 통신사 외교의 성립·발전·쇠퇴,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를 통시적으로 간명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결론부에서 통신사 외교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며, “통신사 외교가 언제까지 지속됐는가”와 “통신사는 동 시기에 국경을 넘은 다른 사절과 어떻게 다른가”(522~523쪽)에 대한 답을 강조하며 글을 끝맺는다. 여기서 다른 사절은 조선 사대교린 외교의 주요 축인 ‘연행사’이다. 연행사는 통신사와 함께 조선을 중심으로 사신을 통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주제임에도 본서에는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

V. 동아시아의 근대적 전환

동아시아의 근대적 전환은 서세동점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일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있던 청이 쇠퇴하면서, 서구의 질서가 전근대 동아시아의 질서를 대체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근대적 전환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만, 『동아시아사 입문』은 중국의 근대적 전환을 직접 다루지 않고, 일본, 한국, 베트남의 과정을 각각 설명하며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을 보여준다. 19장 「동아시아 정세와 메이지 유신」(박삼헌)은 일본이 외세의 개입 없이 막번 체제를 일소하고 메이지유신으로 나아갈 수 있던 기반을 페리의 내항과 미일화친조약에서 찾는다. 페리가 일본에 내항하던 1853년,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독

보적인 지위를 잡기 시작하지만, 크림전쟁, 태평천국, 제2차 영국-미얀마 전쟁 등으로 일본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며, 자국 선박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일본까지 진출하게 되고, 일본과 ‘평화적’ 교섭으로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편무적 최혜국 대우 조항’을 포함하는 불평등조약이었지만, 1차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청이 맺은 징벌적 “패전조약”과 비교해 불평등성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영국·러시아·프랑스 등과 미일화친조약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상대적으로 외부 압박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장 「갑오개혁 시기 근대 국가 구상과 국가체제」(왕현중)는 청일전쟁 중 시행된 갑오개혁의 과정과 근대 국가 구상과 지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갑신정변-갑오개혁-대한제국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갑오개혁 역시 “민국의 보장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무엇보다 전제군주제를 개혁하고 입헌국가로서 거듭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595쪽)으로 파악한다. 다만 마지막 절인 7절의 제목이 “갑오개혁의 제도적 계승과 ‘제국국가’로의 변모: 동아시아 근대사와 현대적 의미”인데, 갑오개혁의 동아시아 근·현대사적 의미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베트남의 근대적 전환을 다루는 21장 「베트남의 식민지화와 독립운동」(윤대영)은 일본의 개국 초기를 다룬 19장과 청일전쟁기 조선의 개혁을 다룬 20장과 달리 19세기 중반 베트남의 식민화 과정부터 시작해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까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185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베트남 무력 침략과 식민화 과정에서 베트남을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실시한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지역별로 살펴보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신서(新書)”로부터 유입된 개혁운동 혹은 혁명운동 사상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의 독립운동, 1925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제2세대 독립운동가들, 특히 호찌민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성립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일본, 한국, 베트남의 근대적 전환을 다루는 19~21장은 각국이 서세동점

하에서 겪은 각각의 경험을 보여준다면, 22장 「근대 동아시아의 여성, 따로 또 같이」(김정인)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른 공간에서 함께 겪은 경험을 보여준다. 서양 선교사가 여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근대 여성교육과 전통적 여성상을 비판하면서 기존의 유교적 가치와 근대 시민적 가치가 혼용되어 등장한 일본의 “양처현모(良妻賢母)”, 한국의 “현모양처(賢母良妻)”, 중국의 “현처양모(賢妻良母)”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1910년대 “신여성”의 등장과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의 궤적을 설명하며,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 부상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허약한 여성의 지위 속에서 일본 여성은 폐창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으며, 중국의 여권 운동은 여성의 법적 권리를 획득하지만, 반봉건 반식민의 상황에서 구국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국 역시 식민지 상황에서 여성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압축적으로 한·중·일 근대 여성운동의 역정을 각각 제시하고, 상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제시한다. 다만 독립운동으로 수렴되었다는 한국과 구국의 자장에 갇혀 있었다는 중국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식민과 반식민의 상황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과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체제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VI.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성찰

23장 「일본의 침략전쟁과 일본군‘위안부’」(서현주)는 제국주의 침략의 맥락에서 접근한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자, 현실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각국의 인식은 판이하며, 한·중·일 3국이 처한 정치·군사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과거 ‘위안부’의 실상도 다르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침략전쟁의 주동자(일본), 일본의 식민지(한국), 반식민지(중국) 상황이었으며, 서로 다른 역사상 속에서, 일국사적 이해는 상이한 역사 인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서현주는 “한·

중·일 3국의 ‘위안소’와 ‘위안부’의 역사적 실태를 비교하며 살펴보는 것은 각국이 처한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와 현재의 상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일본군 ‘위안부’제의 과거 실태와 현재에 미친 영향 등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구상해볼 수 있게 할 것이다”(656쪽)라고 제시한 후,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확대를 시기별 및 지역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삼국 내에서 일어난 일본군 ‘위안부’ 동원 방식의 특성을 정리한다. 조선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대규모 동원은 군이나 경찰이 ‘위안소’ 경영자를 모집했고, ‘위안소’ 경영자가 ‘위안부’와 함께 외국으로 가 현지에서 활동지를 할당받았다. 여성의 의사와 달리 식민지 경찰과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인 ‘위안부’는 폭력, 사기 등의 방법으로 현지에서 동원되었고, 일본이 여성 포로를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인 ‘위안부’는 상당수가 공창 제도하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곽에 팔려 전쟁터로 보내진 여성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곤궁과 애국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군과 국가에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 본장은 내용이 소략한 것이 다소 아쉽지만,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보인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위안부’까지 다루면서 침략당한 국가의 피해자를 넘어 전쟁의 피해자를 드러낸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까지 동아시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해자로서 성찰적 자기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가 크다. 24장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박진우)은 그 원인을 메이지 유신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경험하며 형성된 근린 아시아의 우월감에서 찾는다. 일본의 우월감은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배라는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패전했음에도 그것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맥아더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천황의 전쟁책임을 묻었고, 천황은 ‘종전조서’에서 전쟁을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패전’이나 ‘항복’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쟁 책임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박진우는 현재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후 일본은 고도성장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근린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이

유지되었다. 1990년대 역사수정주의가 등장하고,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의 ‘국민적 긍지’ 회복에 유해한 난징대학살이나 일본 ‘위안부’ 문제를 국내의 반일 세력의 날조라고 주장하며, 주변 국가와의 마찰을 조장하고, 타자와 공존을 모색하는 시민운동과 역사인식을 두고 충돌한다.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박진우의 논의를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마지막 장인 25장 「동아시아의 전후처리 현황과 한국의 선택 지점」(신주백)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역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 심화했다고 지적하고, 전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일안보보장조약 체결 당시 한국전쟁 중이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수직적 반공 군사동맹을 구축했으며, 침략 책임과 식민지 책임을 해결되지 않은 채 냉전체제가 공고해졌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현재 냉전은 해체되었지만, “남방형 삼각구도(한미일)” 대 “북방형 삼각구도(북중러)”의 냉전시대 구도가 여전히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역사갈등’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 정치를 우익과 일부 보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기대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에 신주백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25장의 마지막이자 이 책의 마지막을 결론짓는다.

한국의 집권 정치세력은 12·28 일본군‘위안부’ 합의처럼 자기 집권하에서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역사 대화와 청소년 교류 등 이제까지의 기본적 경험을 재가동하며 역사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차원의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견고하게 남아 있는 남방형과 북방형 삼각 질서 간의 대결적 질서 구도를 해체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이 여전히 ‘전후 보상’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대일 과거사 청산 작업’을 우리 내부에서라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와 친일에 관한 진상 규명 활동 역시 그 일환일 수 있다.(43쪽)

한국에서 반중감정이 고조되고, 일본과 과거사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이지만,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냉전 이래 견고하게 유지되어온 남방형과 북방형 삼각 질서의 대립 구도를 해체해 다자구도로 나아가야 하며, 그를 위해 무용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총론에서 안병우가 제시한 “의식의 의도적 형성”과 맞닿아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영을 동아시아사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한다.

VII. ‘입문’과 ‘깊이 읽기’ 사이의 고리

평자는 주제별로 구성된 『동아시아사 입문』의 내용을 ‘한중관계 속 책봉-조공 관계와 국제관계의 실제’, ‘동아시아 역사 공간의 확장과 연결’, ‘중국 중심의 일방향적 문화전파론 탈피’, ‘동아시아의 근대적 전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성찰’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이라는 방식으로 서평을 전개한 것은 ‘읽기’의 곤혹스러움 때문이었다. 각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되어, 완결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각 주제에 대해 얕은 수준에서 깊이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하지만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해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이 책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동아시아의 역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예를 들어, 15장 「명청 시대의 사회 변화」(이준갑)는 명초 이갑제를 통한 향촌 사회의 지배 강화, 이갑제 와해와 향촌 질서 재편에 따른 신사층의 부상, 원말명초/명말청초의 인구이동과 경지 면적 확대 및 인구 증가, 집약농업과 다양한 품종 개발에 따른 농업 생산력 증가, 수공업·상업의 발전과 대상인집단, 중소도시의 집중적 발전, 상품경제 발달에 따른 사치 풍조 유행 등 명청 시대의 사회 변화를 압축적이고 유기적으로 설명한다. 적은 분량의 서술이지만 독자로서 하여금 당시 사회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평자는 본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며 이 장이 들어갈 카테고리를 찾지 못했다. 동시대를 다룬 16장 「16~17세기 오다·도요토미 정권과 에도막부 성립의 의의」도 근세 동아

시아의 사회변동을 제시해주지만, 에도시기의 상업과 도시의 발달이나 서민 문화의 등장 등을 다루지 않아 15장과 병렬적으로 비교해 이해하기 어렵다. 16장은 분열의 시대는 ‘개방’으로, 통합의 시대는 ‘쇄국’으로 설명하며 외부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지만, 15장은 중국 내부의 맥락만 언급하고 있어 다른 장과 연결해 읽기도 어렵다. 본서의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명청 시대의 사회변화를 한 주제로 다루었다면, 적어도 조선 시대의 사회상, 에도 시대의 사회상을 같이 제시해주어야 동시대의 동아시아 역사상을 포착할 수 있다. 혹은 외부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독자가 그 장이 본서에서 갖는 맥락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각 장의 ‘깊이 읽기’를 연결해가며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동아시아사 ‘입문’이란 무엇인가 고민했다. 이 책은 ‘일선 교사를 비롯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문’의 난이도와 거리가 있다.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읽어야 책에 접근할 수 있다. 기획 의도가 애초에 “동아시아사에 대한 수준 높은 입문서를 개발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었기에, 동아시아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가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 모두를 독자로 설정하는 본서의 지향은 허언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 평자는 『동아시아사 입문』이 동아시아사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데 최소한의 문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쉽고 접근하기 쉽다고 해서 좋은 입문서가 아니다. 약간의 지식으로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에 서서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사 입문』은 나름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펴낸 동북아역사재단은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총서를 펴내는 등 동아시아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중과 『동아시아사 입문』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공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인가는 온전히 독자의 몫이다.

‘위안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일본 편, 히라이 미쓰코, 생각비행, 2020; 한국 편, 방지원, 생각비행, 2021)

박정애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위안부’ 교육이 더욱 절실한 지금
- II. 어느새 30년, 우리는 ‘해결’에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 III.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IV. 역사에서 배우고, 함께 역사를 만든다



I. '위안부' 교육이 더욱 절실한 지금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는 출판사 생각비행에서 2020년과 2021년에 연달아 낸 두 권의 책이다. 일본 오사카부 공립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히라이 미쓰코(平井美津子)의 책을 먼저 발간하고, 다음 해에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방지원의 책을 출간했다. 같은 제목으로 하여 일본 편과 한국 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2017년에 일본에서 발간된 히라이 미쓰코의 원서 제목이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慰安婦問題を子どもにどう教えるか)』¹이다. 시리즈의 기획의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짐작컨대 히라이 미쓰코의 책을 번역·출간하고, 출판사가 같은 제목의 시리즈를 기획하여 한국 편을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 단계에서 저자가 참여했을 수도 있다.

여성사 및 '위안부' 연구를 계속해온 필자에게 이 책들의 발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국내대학 사학과 출신으로 근대한국여성사 전공자로서 '위안부'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 연구는 연구자를 책상 앞에만 있게 두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연구주제 자체가 냉전이 무너지고 식민주의가 반성되는 한편 민주주의가 진전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이후 학술 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엇보다 젠더 관점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역사를 새로 쓴다는 여성사 방법론이 '위안부' 연구에 큰 지렛대가 되었다. 곧 탈냉전, 탈식민, 젠더 관점 위에서 비로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위안부' 역사 이해가 가능해진다.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이해의 방향에 따라 '위안부' 문제 해법은 언제나 백래시를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연구자는 현실의 역사현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가주의적이고 반여성적으로 작성된 옛 자료들을

1 출판사는 고분켄(高文研)이다.

비판적으로 독해해 공론화해야 했다. 자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론장에서 ‘위안부’ 역사나 현안 문제를 제대로 토론할 수 없다.² 연구자들은 피해생존자 구술을 듣고 ‘위안부’ 관련 자료를 생산하기도 했으며, 생존자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또한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시민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백래시 세력의 움직임에 관찰하면서 그때그때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렇게 연구자로서, 활동가로서 20년 넘게 달려왔는데, 가끔은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 ‘위안부’ 공부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비난이나 갈등 속에서 등을 돌리는 선배 또는 동료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문 없는 답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가장 견디기 힘들 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노력들이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담론화될 때이다. 각자의 이해를 앞세운 정치사회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도구화하거나, 국제정치학의 역학관계 속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전문가’들이 ‘위안부’ 타협을 제시할 때면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위안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과 역사적 이해가 공유되지 못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너무 많은 주장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2 비판적인 자료 분석을 전제한 자료 해석 공유는 현재에도 충분치 않다. “위안부를 강제동원하라는 공문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일본 우파의 주장에 강제동원 입증 문서를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 일부의 인식이 대표적이다. ‘계약서’나 돈 지급 흔적 자료가 ‘위안부’ 피해 부정의 자료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서나 돈벌이는 전혀 없었다고 대응하는 공박 구도 또한 ‘위안부’ 자료에 대한 사회적 물이해를 보여준다. 오늘날의 공론장에서도 ‘위안부’ 문제 논쟁을 위한 논점이 ‘근본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II. 어느새 30년, 우리는 ‘해결’에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역사로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건’으로 인식한 지 30년이 넘어간다. 2020년은 최초의 시민단체가 결성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개최 20주년이었다. 올해는 서른 해제의 수요시위를 열고 김학순 공개증언 30주년을 지냈으며, 곧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을 예정이다. 2022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30주년이 기다리고 있다.

의미 있는 기념일들을 열거했지만, ‘기념’만큼 성찰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30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그사이 우리 곁에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던 피해생존자가 대부분 작고하고 ‘위안부’ 이야기는 ‘소녀상’의 익숙한 얼굴 하나로만 수렴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일본 우파를 중심으로 세력화된 역사 부정론자들의 공세는 한국과 미국 등지로 확산되면서 파고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위안부는 매춘부여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여성혐오이다.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은 불황과 ‘신냉전’, 그리고 ‘탈진실’의 시대를 맞아 대중들이 영혼을 잠식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나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말하기’가 강의를 시작했던 20년 전에 비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피해생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로 표현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곁들에 배인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던 시기에는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보였다. 김학순을 비롯해 많은 피해여성들이 반복했던 말,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 일에 대해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요”의 속뜻을 우리는 얼마나 각자의 이야기로서 이해해온 것일까. ‘위안부’ 문제의 해결 과정은 피해여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 속의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터이다. 제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질문

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계급주의, 가부장제 등 교차하는 권력들에 의해 자유의지를 빼앗기거나 타협을 강요당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을 찾아가던 시기에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하거나 더 들어야 하거나 더 고민하기 위한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답’을 안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나 ‘소녀상’,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대중 콘텐츠로 ‘위안부’ 문제를 접한 이들은 수고 없이 얻게 된 그 익숙함 속에서 ‘질문’이 아니라 ‘답’을 말한다. 역사부정론자에게 동조하거나 그 반대논리를 강화하면서 저항하거나. ‘답’은 그 두 가지 범주의 하나에서 찾아진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러한 ‘답’이 피해 여성들을 바람,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요”라는 현재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 및 무력갈등하의 여성폭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이 120개 넘게 건립³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환경 속에 놓인⁴ 한편, 친밀하다고 여겨지는 관계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⁵ 덧붙여 말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성범죄는 연령이나 성별, 인종, 사회적 규제 시스템 등 더욱 취약한 환경의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른들의 세상을 답습한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⁶ 성차별이나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나 사건은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⁷ 이러한 성차별

3 김양순 기자, 2019. 8. 15., 「[소녀상 지도] 당신 옆에 있습니다. … 전국 124곳의 나비를 클릭!」, 『KBS 뉴스』.

4 정다원 기자, 2021. 6. 17., 「국제인권단체, ‘한국의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 첫 보고서 내」, 『KBS 뉴스』.

5 임재우 기자, 2021. 8. 31., 「의붓아버지 · 애인 · 손자 · 지인 … 여성들의 연이은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한겨레』.

6 강국진 기자, 2021. 4. 18., 「디지털 성폭력 가해 · 피해 경험 … 초등생이 중고생보다 더 많다」, 『서울신문』; 이가람 기자, 2021. 8. 17., 「중1이면 다 아는 ‘지인농육’ … n번방 없어도 성범죄 판친다」, 『중앙일보』.

7 올해 3월 아사히TV는 젊은 여성이 “젠더 평등이 시대를 지연시킨다”고 발언하는

사회와 힘의 역학관계에 따른 각국의, 그리고 국제적 정치 환경은 ‘위안부’ 피해 부정론자들을 무력무력 키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는 ‘램지어 사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또 한 번의 세계사적 전환 계기가 될 것 같다. 『국제 범경제학 리뷰』 저널 측은 끝내-총체적으로 학문적 진실성을 결여한-램지어의 논문을 철회하지 않았고, 램지어의 교수직 소속인 하버드대 또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한미일 ‘위안부’ 피해부정 네트워크는 더욱 결속력을 다졌고 벌써 제2의 램지어가 출현하고 있다.⁸ 이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더욱 견고해졌다.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 성폭력 범죄이며,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부정될 수 없는 문제⁹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위안부’ 피해부정론은 비판적 고찰을 속성으로 하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하는 내셔널리즘, 힘의 우위에 따른 약육강식 세계에 편승하려는 의지,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역사적 배움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정치세력이 권력에 닿을수록 전쟁 발발 위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램지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글로벌 차원의 학자들은 ‘위안부’의 기억과 경험이 세계사적 차원의 역사가 되어 성별이나 인종, 민족, 계급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역사적 방파제가

광고를 내보냈으며(三輪喜人, 2021. 3. 25., 「若い女性が「ジェンダー平等って時代遅れ」, 『東京新聞』), 8월에는 전동차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박세진 기자, 2021. 8. 7., 「도쿄 전동차 흉기난동 범인 “행복해 보이는 여성 노렸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일본 측 조직위원회의 성차별 발언이나 역사 인식이 문제가 되었고(장가희 기자, 2021. 7. 23., 「여성비하·홀로코스트 농담에 줄 낙마… WP “일본 엘리트 민낯”’, 『SBS Biz』), 성차별 의식을 드러냈던 한국 중계진 또한 비판을 받았다(양승준 기자, 2021. 8. 9., 「조롱·성차별 ‘나라만신’… 탈 많았던 올림픽 중계 사고 원인은, 『한국일보』).

- 8 고일환 기자, 2021. 5. 3., 「위안부는 선금급 계약에 팔린 여성’… 美 대학교재 출간 논란, 『연합뉴스』.
- 9 김윤나영 기자, 2021. 3. 1., 「노벨상 수상자들 “램지어 논문, 나치 학살 부정론 연상’, 『경향신문』.

되기를 바란다.¹⁰ 반면 서구 사회는 오리엔탈리즘의 견지에서 ‘위안부’ 문제 배경에는 한국 고유의 가부장제가 초래한 책임 또한 크거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 갈등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고자 하기도 한다.¹¹ 보편적인 인권문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논하는 듯하면서도, 글로벌 사회 또한 저마다의 정치적 이익에 구애되어 있는 것이다.¹²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참조하되, 한미일 역사부정론자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서구 시선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서구 열강 및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점령과 식민지 지배를 강행하면서 벌였던 구조적 폭력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일본의 ‘위안부’ 범죄 시스템으로 인해 시기마다, 지역마다, 정치적 상황마다 양상을 달리하며 벌어졌던 피해실태 또한 그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¹³ 그래야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고, 비로소 피해자의 바람인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
- 10 Alexis Dudden, 2021, “The Abuse of History: A Brief Response to J. Mark Ramseyer’s ‘Contracting for Sex’”,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 Andrew Gordon and Carter Eckert, 2021, “Statement”,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 David McNeill and Tessa Morris Suzuki, 2021, 3, 4., “Bad History on the Comfort Women”, *Japan Forward*.
- 11 이찬행, 2021, 「미국 언론매체의 ‘위안부’ 담론」, 『전쟁과 여성인권: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심산. 물론 역사부정론에 내재된 일본 우파의 내셔널리즘에 맞서기 위해 반일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세계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연루되어 있는 가부장제나 민간업자의 인신매매 문제도 ‘위안부’ 역사 이해에 주요한 요소이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부장적인 근대국가의 통치 속성의 맥락이 아니라 아시아 고유의 비문명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서구사회의 오리엔탈리즘 시선이다.
- 12 민유기·오승은, 2021, 「공론화 30년, 여전히 숙제」, 『전쟁과 여성인권: 세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 심산, 30쪽.
- 13 박정애, 2021, 「교차하는 권력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 『여성과 역사』 34, 27~29쪽.

Ⅲ.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현재 한국 교육과정에 따르면 역사 공부의 목적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민주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있다.¹⁴ 이는 세계 각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권력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합하는 공간이었다. 이 책의 한국 편 저자인 방지원은 “학교 역사교육은 공동체가 추구할 공공기억을 만들어내는 장소”이며, 이 때문에 다양한 권력 집단이 “자신의 집단 기억에 공식성을 부여하기 위해 갈등”했다고 지적했다.¹⁵

‘위안부’ 역사서술이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기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에 기초하여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발견’한 이후였다. 일본에서는 고노담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94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교과서에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으며,¹⁶ 한국에서도 1995년과 1996년부터 각각 적용되는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서술되기 시작¹⁷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경향은 서로 엇갈렸다. 교과서의 ‘위안부’ 역사 서술을 삭제하라는 일본 우파들의 공세 속에서 일본에서는 관련 서술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일본군‘위안부’를 명기하고 그 연령과 규모에 대한 일정한 기술을 하라는 지침을 제시하는 등으로 서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⁸

14 최병택, 2019, 「현행 역사 교육과정과 검정제도의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75, 71쪽.

15 방지원, 2020, 「기억의 정치와 역사부정, 역사교육은 어떻게 대처할까?」, 『역사와 세계』 58, 25쪽.

16 남상구, 2008,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 321~322쪽.

17 문순창, 2021, 「일본군 ‘위안부’ 수업 실천의 성찰적 진화」, 『역사와 교육』 20, 90쪽.

18 서현주, 2017, 「한·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비교」, 『한일관계사연

“2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가르쳐온 일본 교사의 실천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히라이 미쓰코의 책은 ‘위안부’ 교육을 점점 더 ‘불온’하게 보는 일본 사회 속에서 왜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는지 실천으로 기록한 것이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어떻게든 ‘위안부’ 문제를 가르쳐야 하는 소명을 고민하는 한국의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는 방지원은 ‘위안부’ 문제를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제들과 관련 정보를 정리했다. 책은 예비 교사들을 위한 교재의 성격이며, 부제도 “구술 증언과 각종 사료를 통해 배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다. 따라서 두 권의 시리즈를 통해 공통의 쟁점을 중심으로 각각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다른 한국과 일본의 교육 내용이나 관점 차이, 교육현장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는 없다. 한국 편 책을 평론한 고등학교 교사는 책이 현장교사들에게 유용한 관점과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편과 성격이 다르고 제목과도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⁹ 이 책들이 시리즈로서 기획의도를 만족시키려면 각각 가르쳐야 할 ‘위안부’ 교육 관련 주제나 내용을 서술한 책(일본 편)과 현장의 고민과 변수들 속에서 ‘위안부’ 교육경험을 담은 책(한국 편)이 계속 발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양한 경로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20년 넘게 중학교에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히라이 미쓰코의 시선은 또렷하고 목소리도 분명하다.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는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본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는 전쟁의 본질과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저자에게 “역사에서 말하는 전쟁은 멀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전쟁의 본질을 가르치고 싶다고 절박하게 말한다. 아이들이 역사를

구』 58, 460쪽.

19 송수연, 2021, 「서평: 부담스러운 과거사를 어떻게 가르칠까-방지원,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한국 편』(생각비행, 2021)」, 『청람사학』 33, 304쪽.

배울 기회는 거의 학교뿐이므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친다고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꺾여서는 안 된다.²⁰ 저자는 온갖 공격 속에서도 ‘졸지 않고’ 가르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 또한 민주사회와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건넨다.

저자에게 ‘위안부’ 문제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쟁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다(11쪽). ‘위안부’ 문제는 전쟁의 실상을 배울 때 중요한 시점을 제공한다(163~164쪽). 무엇보다 저자의 교육실천에 가장 강력한 동기는 ‘위안부’ 피해자로부터 나온다. TV를 통해 접한 김학순의 말, “이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해요. 젊은이들에게 사실을 가르쳐야만 해요”는 저자 안에서 항상 반추하는 말이 되었다(24쪽). 또한 저자를 위협하는 우파의 공격에 마음속 의문이 생겼을 때 저자는 한국의 나눔의 집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만나고 “안 질 거예요”라고 다짐한다(99~107쪽). 피해자로부터 들은 다양한 말들 속에서, 또는 피해자와 나눈 몸짓과 침묵 속에서 저자가 길러내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메시지이다. 나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피해자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낭패감’이 나를 이 문제에 매달리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결들이 쌓이면서 다시 읽는 피해자의 구술 내용에서 새로운 맥락과 의미가 발견되고 나의 ‘위안부’ 역사 쓰기는 또다시 갱신되고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접한 ‘위안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소화하여 ‘위안부’ 역사 쓰기에 참여하는 방식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역사화하겠다는 의지다.

저자는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려는 우파들의 공세에 저항하면서 두 줄 정도의 간략한 서술이라도 교과서에 기재되는 일은 의미가 크다고 한다. 교사가 교과서에 기술된 부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30~31쪽). ‘위안부’ 문제를 처음 가르칠 때, 저자는 ‘전쟁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만 앞서, 이

20 이 부분은 책의 ‘시작하며’와 ‘끝내며’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저자의 메시지는 책 전반에 걸쳐 배어 있다.

문제를 일본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민중이 겪은 피해 중 하나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을 언급했다고 한다(37쪽). 저자는 ‘전쟁과 성폭력, 식민지’라는 세 가지 열쇠말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거 실상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열쇠말에 관련된 일본 내의 현안들에 예민하게 감각을 열어놓는다. 식민지에 비견할 만한 정치적 환경을 안고 있는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 상황,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성폭력 사건은 ‘위안부’ 범죄의 현재 버전이다. 저자는 이 사건을 교실 안으로 끌어와 ‘위안부’ 문제를 왜 배워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학생들과 이야기한다(3장 ‘오키나와’를 만난 아이들). ‘2015 한일합의’ 뉴스도, 정치인의 역사부정 발언도, 르완다 내전을 다룬 영화 <호텔 르완다>(2004년)도 ‘위안부’ 문제 토론을 위해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사가 선동하듯이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정면에서 문제를 지나치게 파고드는 것이다(51쪽, 126쪽). 그 원칙은 저자의 교실에서 내내 지켜졌겠지만, 내가 이 책을 읽고 한결같은 저자의 신념과 태도에 감탄했듯이 저자의 학생들도 ‘선생님’이 가진 분명한 생각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와 학생의 불신과 갈등으로 드러나기보다 서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교사가 약속하는 미래를 갖고 싶은 학생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자의 교실을 거쳐 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나아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많이 만들어 한일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한국 편』에서 저자 방지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이슈 대부분을 다룬다.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뉜 내용은, ‘위안부’ 문제의 문제화 과정과 일본 우파의 백래시(1장 살아 있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실태(2장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피해자와 연대세력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3장 ‘침묵의 고통을 넘어 연대하다’), 기억과 실천(4장 ‘함께 만드는 기억, 함께 여는 평화의 미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안부’ 주제를 다룬 일반적인 교양서 또는 개설서의 구성과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

를 위해 저자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자료집과 구술증언집, 연구서, 교양서 등을 섭렵했다.

저자는 과거 권력집단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수집단에 게 저지른 조직적인 폭력과 이로 인해 초래된 사실들을 ‘부담스러운 과거사’로 호명하면서, 성찰적 역사교육을 모색한 바 있다.²¹ 역사교사는 ‘부담스러운 과거사’를 다루어야만 하는 정명을 지니고 있고, 공공연하게 주장되는 부정의한 역사에 궁지에 몰리기도 하는데, 이 책은 그러한 교사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²² 이 책의 미덕은 부제가 내세우고 있는 ‘구술 증언과 각종 사료’에 대한 정보보다도 한국사 또는 한일관계사에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나 문제 해결의 국제적 연대활동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하여 정리한 것이다. 교사들이 궁금해할 만한 ‘위안부’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접할 수 있다.

책의 미덕은 한편 한계가 되기도 했다. 언론 담론이 주목하는 정치·외교적 쟁점을 넘어 학술연구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제기와 고민까지 닿지 못하니, 저자 나름의 관점과 쟁점 설정이 분명치 않다. 성매매 여성과 ‘위안부’ 여성 동원, 일본인 여성과 식민지 여성에 대한 서술(22쪽)이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비판적 논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²³ “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위안소로 끌려간 사례”는 일본 우파뿐 아니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고, ‘위안부’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도 잘못 인식된 사실이라고 지적²⁴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21 방지원, 2017, 「공감과 연대의 역사교육과 ‘과거사’ 문제-성찰적 역사교육을 위한 시론-」, 『역사교육연구』 28, 121쪽.

22 송수연, 2021, 앞의 글, 297~298쪽.

23 송연옥·김귀옥 외, 2017,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도서출판 선인; 박정애, 2019,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 연구』 19(2). 이 외에 일본인‘위안부’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4 하나후사 도시오·하나후사 에미코 지음, 고향옥 옮김, 2021, 『관부재판』, 44~50쪽.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²⁵ 다만 이견이 견고하게 있고, 쟁쟁의 소지가 되며, 연구가 충분치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다. ‘위안부’ 문제의 두 가지 쟁점이라고 언급한 ‘위안부’의 ‘강제동원’ 여부와 성매매 여성(‘매춘부’)과의 차이 문제(32쪽)는 역사부 정론자들이 주도하는 프레임이 설정한 쟁점이지,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이해하기 위한 쟁점은 아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식민주의와 착종된 근대한국의 가부장제, 그리고 여성의 주체적 삶을 가능케 하는 교육제도와 취업 구조와 더불어 살펴볼 때 비로소 그 특성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위안부’ 문제 연구자로서 궁금했던 점은 저자가 참고문헌이나 각종 자료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히고 자료 생산의 맥락을 드러내어 우리 앞에 제시된 지식 정보들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의 서술이나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어떤 글을 참고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1차 문서 자료집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는데도 본문의 문서자료의 출처는 교양서이다. 적지 않게 포함된 이미지 자료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술 자료의 상당수가 출처가 없고, 인용된 구술 내용은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간추린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는 저자가 개입하여 재생산한 피해자 이야기가 된다. 이 때문에 저자가 어떠한 자료를 선정하여 어떤 관점으로 재정리하고 그 정리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구술 자료로서의 의미 훼손을 최소화하게 된다. ‘증언

25 나는 당대부터 이어져온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은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한 총동원체제의 성격과 식민권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공격존재로 호명된 여성들, 그리고 동시기에 맞물린 광범위한 ‘위안부’ 모집 방식과 아우르면서 식민지성의 하나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안부’와 다르다고 지적되어온 여자근로정신대 또한 개념적으로 정신대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정애, 2020, 「총동원체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연구: 정신대의 역사적 개념 변천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15(2).

은 냉철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것'²⁶이 아니라 반복과 변경, 과장과 침묵 그 자체로 피해 증거가 되는 것이다.

IV. 역사에서 배우고, 함께 역사를 만든다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일본 편과 한국 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독자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한국 편은 방지원은 한일 관계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위안부’ 역사가 만들어져온 궤적들과 거세지고 있는 백래시, 그리고 한일 정부의 책임과 세계 시민의 실천 문제를 다룬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뒤엉켜” 있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살아 있는 역사”의 몸체를 최대한 내보이면서, 이 뒤엉킨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묻는다. 답의 실마리는 책 안에 있지만 질문은 독자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을 건네는 것 같다. 그 질문을 찾기 위해 일본 편을 읽으면, 히라이 미쓰코는 나의 질문은 전쟁과 식민지, 성폭력이며 학생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국가’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한다. 히라이 미쓰코의 방식에 감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렇다면 사회민주화와 평화, 인권 존중이라는 목표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쓰고 가르쳐야 할까 라는 질문에 맞닥트린다. 그리고 그 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한국 편을 열어 보게 된다.

폭력의 시대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위안부’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 이야기는 현재의 문제의식에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며 갱신을 거듭한다.²⁷ 특정한

26 방지원, 2020, 앞의 글, 38쪽. 책에는 “증언이 증거가 되기 위한 학문적 과정이 있다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었다(217쪽).

27 박정애, 2021, 앞의 글, 31쪽.

시기, 특정한 공간, 특정한 권력집단에 의해 벌어진 범죄가 초국적 기억 속에서 수많은 연루자를 만들어내며 역사적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이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역사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 ‘역사화’에 나름의 실천을 담당한다.²⁸ 교사의 실천은 학생들의 응답으로 비로소 의미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진실과 거짓의 주장들이 뒤엉켜 있고, 여전히 폭력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그 질문과 답은 역사에서 배우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또렷해질 것이다.

28 문순창, 2021, 앞의 글, 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중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조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73호(2021. 9)

초판 1쇄 인쇄 2021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9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